

#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



경 찰 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제1장 일반원칙 ..... 1**

제1절 교통안전표지 설치목적 및 기능 ..... 3

제2절 법적 근거 ..... 4

제3절 교통안전표지의 분류 ..... 5

**제2장 교통안전표지 설치기준 ..... 7**

제1절 적용범위 및 기준 ..... 9

제2절 종류 및 정의 ..... 9

제3절 반사와 조명 ..... 10

    1. 반사 ..... 10

    2. 조명 ..... 16

제4절 교통안전표지의 설치기준 ..... 18

    1. 선정기준 ..... 18

    2. 설치장소 ..... 19

    3. 설치위치 ..... 20

    4. 설치방식 ..... 24

    5. 설치높이 및 측방 여유폭 ..... 25

    6. 설치방향 및 각도 ..... 30



7. 설치간격 .....	33
8. 표지병설 .....	37
9. 동일 표지의 우선순위 .....	40
10. 특정차량의 통행금지 .....	40
11. 진행방향의 통제 .....	41
12. 단일표지의 차량 통제 .....	41
13. 통제구역 범위의 보조표지 .....	41
14. 표지남용.....	42

**제3장 주의표지 ..... 43**

제1절 개요 .....	45
제2절 주의표지 구분 .....	46
제3절 교차로 예고표지 .....	47
1. +자형 교차로(101) .....	49
2. T자형 교차로(102), Y자형 교차로(103), ㅚ자형 교차로(104), -자형 교차로(105) .....	50
3. 회전형 교차로(109) .....	52
제4절 도로형상 예고표지 .....	53

1. 우로굽은도로(111) 및 좌로굽은도로(112) .....	54
2. 우좌로이중굽은도로(113) 및 좌우로이중굽은도로(114) .....	59
3. 오르막경사(116) 및 내리막경사(117) .....	61
<b>제5 절 교통류변화 예고표지</b> .....	<b>63</b>
1. 우선도로(106) .....	64
2. 우합류도로(107) 또는 좌합류도로(108) .....	66
3. 2방향통행(115) .....	67
4. 도로폭이좁아짐(118) .....	68
5. 우측차로없어짐(119) 및 좌측차로없어짐(120) .....	69
6. 우측방통행(121) .....	70
7. 양측방통행(122) .....	71
8. 중앙분리대시작(123) 및 중앙분리대끝남(124) .....	72
9. 도로공사중(135) .....	73
<b>제6 절 시설 예고표지</b> .....	<b>75</b>
1. 철길건널목(110) .....	76
2. 신호기(125) .....	78
3. 터널(138) .....	79
4. 횡단보도(132) .....	80



5. 어린이보호(133) .....	82
6. 자전거(134) .....	84
<b>제7절 노면상황 예고표지</b> .....	<b>85</b>
1. 미끄러운도로(126) .....	86
2. 노면고르지못함(128) .....	87
3. 과속방지턱(129) .....	88
<b>제8절 연도위험 예고표지</b> .....	<b>89</b>
1. 강변도로(127) .....	90
2. 낙석도로(130) .....	91
<b>제9절 기상상황 예고표지</b> .....	<b>92</b>
1. 횡풍(137) .....	93
<b>제10절 기타주의 예고표지</b> .....	<b>94</b>
1. 비행기(136) .....	95
2. 야생동물보호(139) .....	95
3. 위험(140) .....	97
<b>제4장 규제표지</b> .....	<b>99</b>
제1절 개 요 .....	101

<b>제2 절 통행금지</b> .....	103
1. 통행금지(201) .....	106
2. 차중제한 통행금지 .....	107
<b>제3 절 통행제한</b> .....	112
1. 차중량제한(220) .....	114
2. 차높이제한(221) .....	115
3. 차폭제한(222) .....	116
4. 차간거리확보(223) .....	117
5. 최고속도제한(224) .....	119
6. 최저속도제한(225) .....	121
7. 서행(226) .....	123
8. 일시정지(227) .....	125
9. 양보(228) .....	126
<b>제4 절 금지사항</b> .....	128
1. 진입금지(211) 및 직진금지(212) .....	129
2. 우회전금지(213) 및 좌회전금지(214) .....	130
3. 유턴금지(216) .....	131
4. 앞지르기금지(217) .....	132



5. 정차 · 주차금지(218) .....	134
6. 주차금지(219) .....	135
7. 보행자보행금지(230) .....	137

**제5장 지시표지 ..... 139**

제1절 개요 .....	141
제2절 도로 지정 .....	141
1. 자동차전용도로(301) .....	142
2. 자전거전용도로(302) .....	143
3.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303) .....	145
4.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317) .....	147
5. 버스전용차로(330) .....	148
6. 다인승차량전용차로(331) .....	151
7. 자전거 전용차로(318) .....	153
제3절 통행방법 지시 .....	154
1. 회전교차로(304) .....	155
2. 직진(305) .....	157
3. 우회전(306) 및 좌회전(307) .....	158

4. 직진 및 우회전(308), 직진 및 좌회전(309) .....	159
5. 좌·우회전(310) .....	160
6. 유턴(311).....	161
7. 비보호좌회전(329) .....	162
8. 양측방통행(312) .....	163
9. 우측면통행(313) 및 좌측면통행(314) .....	164
10. 진행방향별통행구분(315) 및 우회로(316) .....	166
11. 통행우선(332) .....	167
<b>제4절 일방통행 지시</b> .....	168
1. 일방통행(326, 327, 328).....	169
<b>제5절 보행자 지시</b> .....	171
1. 보행자전용도로(321).....	171
2. 횡단보도(322) .....	172
3. 노인보호 및 어린이보호(323, 324) .....	177
4. 자전거횡단도(325) .....	179
5. 자전거병진(333) .....	181
<b>제6절 기타 지시</b> .....	182
1. 주차장(319) .....	183



2. 자전거주차장(320) ..... 184

**제6장 보조표지 ..... 185**

제1절 개요 ..... 187

제2절 거리, 구역, 구간 ..... 189

1. 거리(401, 402, 425) ..... 189

2. 구역(403), 구간(417, 418, 419) ..... 191

제3절 일자, 시간 ..... 192

1. 일자(404) ..... 193

2. 시간(405, 406) ..... 194

제4절 본표지 설명 ..... 195

1. 전방우선도로(408) ..... 196

2. 안전속도(409) 및 통행주의(415) ..... 197

3. 교통규제(412) ..... 198

4. 표지설명(416) ..... 199

5. 중량(423) ..... 200

6. 노폭(424) ..... 200

7. 우방향, 좌방향 및 전방(420, 421, 422) ..... 202

제5절 해 제 ..... 203

제6절 기 타 ..... 205

    1. 기상상태(410) ..... 205

    2. 노면상태(411) ..... 206

    3. 견인지역(428) ..... 206

**제7장 교통안전표지 설계 및 시공 ..... 209**

제1절 교통안전표지 설계 ..... 211

    1. 모양 ..... 212

    2. 색 ..... 213

    3. 크기 ..... 214

    4. 문자 및 기호 ..... 216

    5. 문자정보 ..... 217

제2절 표지판 설계 ..... 218

    1. 모양 ..... 218

    2. 크기 및 두께 ..... 219

    3. 재질 ..... 221

    4. 테두리 ..... 223



제3절 표지판 지주의 형식 및 재료 .....	224
1. 표지판 지주의 형식 .....	224
2. 표지판 지주의 재료 .....	230

## 표 차례

〈표 2-1〉 재귀반사시트의 유형별 특징 .....	12
〈표 2-2〉 차종별 관측각과 관측거리 .....	12
〈표 2-3〉 「유형 III」(캡슐렌즈형 고휘도) 반사지의 재귀반사계수	13
〈표 2-4〉 「유형 IV」(프리즘형 고휘도) 반사지의 재귀반사계수 ...	13
〈표 2-5〉 「유형 VII」(프리즘형 초고휘도) 반사지의 재귀반사계수	13
〈표 2-6〉 「유형 VIII」(프리즘형 초고휘도) 반사지의 재귀반사계수	14
〈표 2-7〉 「유형 IX」(광각 초고휘도) 반사지의 재귀반사계수 .....	14
〈표 2-8〉 재귀반사시트의 색도기준 .....	14
〈표 2-9〉 재귀반사시트의 휘도율 .....	15
〈표 2-10〉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높이 .....	27
〈표 2-11〉 정주식 표지의 설치방향 및 각도 .....	32
〈표 2-12〉 표지종류별 설치간격 .....	35
〈표 3-1〉 설계속도별 볼 수 있는 거리 .....	48
〈표 3-2〉 설계속도별 곡선반경 한계치 .....	55
〈표 3-3〉 설계속도별 굽은도로표지 설치 .....	58
〈표 3-4〉 설계속도별 경사도 한계치 .....	61
〈표 4-1〉 통행금지의 종류와 규제내용 .....	104



〈표 4-2〉 2개 차종 통행금지(206)의 사용방법 .....	105
〈표 5-1〉 전용차로 통행차량 .....	149
〈표 5-2〉 통제방법.....	156
〈표 5-3〉 횡단보도(322) 표지의 설치 예시도 .....	175
〈표 7-1〉 한국산업규격(KS A 0062, KS M 6020) 색 기준 (허용치 $\Delta E=1$ 이내) .....	213
〈표 7-2〉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별 색채 .....	214
〈표 7-3〉 교통안전표지 크기의 확대 및 축소 .....	215
〈표 7-4〉 표지판 두께의 기준 .....	221
〈표 7-5〉 표지판 재질 .....	222
〈표 7-6〉 표지판 연결부품 .....	222
〈표 7-7〉 지주재질.....	232
〈표 7-8〉 연결부품의 재질 .....	232

## 그림차례

[그림 2-1] 입사각과 관측각의 관계	15
[그림 2-2] 표지에 대한 운전자 행동	21
[그림 2-3] +자형 교차로(101) 표지	23
[그림 2-4] 시인각도	23
[그림 2-5] 설치높이 및 측방 여유폭	30
[그림 2-6] 표지의 설치시작점(교차로)	34
[그림 2-7] 표지의 설치간격 예시도	37
[그림 2-8] 잔여거리에 따른 설치간격	37
[그림 2-9] 정주식 표지병설 예시도	38
[그림 3-1] +자형 교차로(101) 기본형	49
[그림 3-2] +자형 교차로(101) 변형	49
[그림 3-3] T자형(102) 및 Y자형(103) 기본형 교차로	51
[그림 3-4] 변형-1	51
[그림 3-5] 변형-2	51
[그림 3-6] 변형-3	51
[그림 3-7] 변형-4	52
[그림 3-8] 변형-5	52



[그림 3-9] 회전형 교차로(109) 표지 설치 예시도	52
[그림 3-10] 우로굽은(111), 좌로굽은(112) 도로 설치 예시도	56
[그림 3-11] 도로교각	56
[그림 3-12] 굽은도로(111) 표지의 설치지점	58
[그림 3-13] 이중굽은도로(114) 표지 설치 예시도	60
[그림 3-14] 오르막경사(116) 및 내리막경사(117)	62
[그림 3-15] 우선도로(106) 표지 설치 예시도	65
[그림 3-16] 우합류도로(107) 및 좌합류도로(108) 표지 설치 예시도	66
[그림 3-17] 2방향통행(115) 표지 설치 예시도	68
[그림 3-18] 도로폭이좁아짐(118) 표지 설치 예시도	69
[그림 3-19] 우측차로없어짐(119) 및 좌측차로없어짐(120) 표지 설치 예시도	69
[그림 3-20] 우측방통행(121) 표지 설치 예시도	70
[그림 3-21] 양측방통행(122) 표지 설치 예시도	71
[그림 3-22] 중앙분리대시작(123) 및 중앙분리대끝남(124) 표지 설치 예시도	72
[그림 3-23] 도로공사중(135) 표지 설치 예시도	74

[그림 3-24] 철길건널목(110) 표지 설치 예시도	77
[그림 3-25] 신호기(125) 표지 설치 예시도	79
[그림 3-26] 터널(138) 표지 설치 예시도	80
[그림 3-27] 횡단보도(132) 표지 설치 예시도	81
[그림 3-28] 어린이보호(133) 표지 설치 예시도	83
[그림 3-29] 자전거(134) 표지 설치 예시도	84
[그림 3-30] 미끄러운도로(126) 표지 설치 예시도	86
[그림 3-31] 노면고르지못함(128) 표지 설치 예시도	87
[그림 3-32] 과속방지턱(129) 표지 설치 예시도	88
[그림 3-33] 강변도로(127) 표지 설치 예시도	90
[그림 3-34] 낙석도로(130) 표지 설치 예시도	92
[그림 3-35] 횡풍(137) 표지 설치 예시도	93
[그림 3-36] 비행기(136) 표지 설치 예시도	95
[그림 3-37] 야생동물보호(139) 표지 설치 예시도	96
[그림 3-38] 위험(140) 표지 설치 예시도	97
[그림 4-1] 통행금지 또는 제한 알림판	103
[그림 4-2] 통행금지(201) 표지 설치 예	107
[그림 4-3] 자동차 통행금지(202) 표지 설치 예시도	109



[그림 4-4]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205)	
표지 설치 예시도 .....	110
[그림 4-5] 승용자동차, 2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206) 표지 예시도 .....	110
[그림 4-6] 트랙터 및 경운기 통행금지(207), 손수레 통행금지	
(207) 표지 설치 예시도 .....	111
[그림 4-7] 자전거 통행금지(210) 표지 설치 예시도 .....	111
[그림 4-8] 위험물 적재차량 통행금지(231) 표지 설치 예시도	112
[그림 4-9] 차중량제한(220) 표지 설치 예 .....	115
[그림 4-10] 차높이제한(221) 표지 설치 예 .....	116
[그림 4-11] 차폭제한(222) 표지 설치 예시도 .....	117
[그림 4-12] 차간거리확보(223) 표지 설치 예시도 .....	119
[그림 4-13] 최고속도제한(224) 표지 설치 예시도 .....	121
[그림 4-14] 최저속도제한(225) 표지 설치 예시도 .....	122
[그림 4-15] 서행(226) 표지 설치 예시도 .....	124
[그림 4-16] 일시정지(227) 표지 설치 예시도 .....	125
[그림 4-17] 양보(228) 표지 설치 예시도 .....	127
[그림 4-18] 진입금지(211) 및 직진금지(212), 우회전금지(213)	

및 좌회전금지(214)표지 설치 예시도·····	130
[그림 4-19] 유턴금지(216) 표지 설치 예시도·····	132
[그림 4-20] 앞지르기금지(217) 표지 설치 예시도·····	133
[그림 4-21] 정차·주차금지(218) 표지 설치 예시도·····	135
[그림 4-22] 주차금지(219) 표지 설치 예시도·····	137
[그림 4-23] 보행자보행금지(230) 표지 설치 예시도·····	138
[그림 5-1] 자동차전용도로(301) 및 자전거전용도로(302) 표지 설치 예시도·····	145
[그림 5-2]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을 구분할 필요없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303) 표지 설치 예시도·····	146
[그림 5-3]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317) 표지 설치 예시도	147
[그림 5-4] 버스전용차로(330) 표지 설치 예시도·····	150
[그림 5-5] 다인승전용차로(331) 표지 설치 예시도·····	152
[그림 5-6] 자전거 전용차로(318) 표지 설치 예시도·····	153
[그림 5-7] 회전교차로(304) 표지 설치 예시도·····	155
[그림 5-8] 직진(305) 표지 설치 예시도·····	157
[그림 5-9] 우회전(306) 및 좌회전(307) 표지 설치 예시도·····	159
[그림 5-10] 직진 및 우회전(308), 직진 및 좌회전(309) 표지	



설치 예시도 .....	160
[그림 5-11] 좌우회전(310) 표지 설치 예시도 .....	161
[그림 5-12] 유턴(311) 표지 설치 예시도 .....	162
[그림 5-13] 비보호좌회전(329) 표지 설치 예시도.....	163
[그림 5-14] 양측방통행(312) 표지 설치 예시도.....	164
[그림 5-15] 우측면통행(313) 및 좌측면통행(314) 표지 설치 예시도 .....	165
[그림 5-16] 진행방향별통행구분(315), 우회로(316) 표지 설치 예시도 .....	167
[그림 5-17] 통행우선(332) 표지 설치 예시도.....	168
[그림 5-18] 일방통행(326, 327, 328) 표지 설치 예시도 .....	170
[그림 5-19] 보행자전용도로(321) 표지 설치 예시도 .....	172
[그림 5-20] 횡단보도(322) 표지 설치 예시도.....	174
[그림 5-21] 노인보호(323) 표지 설치 예시도.....	178
[그림 5-22] 어린이보호(324) 표지 설치 예시도 .....	178
[그림 5-23] 자전거횡단도(325) 표지 설치 예시도(1) .....	180
[그림 5-24] 자전거횡단도(325) 표지 설치 예시도(2) .....	180
[그림 5-25]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병진 예시도 .....	181

[그림 5-26]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자전거병진 표지 예시도	182
[그림 5-27] 주차장(319) 표지 설치 예시도	183
[그림 5-28] 자전거주차장(320) 표지 설치 예시도	184
[그림 6-1] 거리(401) 표지 설치 예시도	190
[그림 6-2] 거리(402) 표지 설치 예시도	190
[그림 6-3] 구역(403) 표지 설치 예시도	191
[그림 6-4] 구간시작, 구간내, 구간끝(417, 418, 419) 표지 설치 예시도	192
[그림 6-5] 일자(404) 표지 설치 예시도	193
[그림 6-6] 시간(405) 표지 설치 예시도	194
[그림 6-7] 시간(405) 표지 설치 예시도	195
[그림 6-8] 전방우선도로(408) 표지 설치 예시도	196
[그림 6-9] 안전속도(409) 표지 설치 예시도	197
[그림 6-10] 통행주의(415) 표지 설치 예시도	198
[그림 6-11] 교통규제(412) 표지 설치 예시도	199
[그림 6-12] 표지설명(416) 표지 설치 예시도	199
[그림 6-13] 중량(423) 표지 설치 예시도	201
[그림 6-14] 노폭(424) 표지 설치 예시도	201



[그림 6-15] 우방향, 좌방향, 전방(420, 421, 422) 표지 설치 예시도 .....	202
[그림 6-16] 해제(427) 표지 설치 예시도 .....	204
[그림 6-17] 해제(427) 표지 설치 예시도 .....	204
[그림 6-18] 기상상태(410) 표지 설치 예시도 .....	205
[그림 6-19] 노면상태(411) 표지 설치 예시도.....	206
[그림 6-20] 견인지역(428) 표지 설치 예시도 .....	207
[그림 7-1] 단주형 .....	225
[그림 7-2] 복주형.....	226
[그림 7-3] 역L형 .....	228
[그림 7-4] 테이퍼폴형.....	228
[그림 7-5] F형 .....	228
[그림 7-6] T형 .....	228
[그림 7-7] 문형식.....	229
[그림 7-8] 부착식 .....	230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제1장 >>> 일반원칙

제1절 교통안전표지 설치목적 및 기능

제2절 법적 근거

제3절 교통안전표지의 분류



# 일반원칙



## 제 1 절 | 교통안전표지 설치목적 및 기능

- 목적: 도로이용자에게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와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 기능: 교통안전표지는 단독으로 설치되거나, 노면표시 및 신호기와 유기적 또는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로서 교통안전표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로이용자에게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

**해설** 본 매뉴얼에서 교통안전표지라 함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안전표지 중 노면표시를 제외한 표지를 말한다. 교통안전표지는 각종 교통안전시설물과 유기적 결합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규제, 지시 및 주의 의무 그리고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소통을 위한 각종 도로상황과 노면상태, 통행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도로환경에 따른 도로이용자의 특성과 문화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의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 표준화된 양식으로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한다. 본 매뉴얼에서는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능한 많은 예시도를 삽입하였으나, 예시도에 있는 일부 표지의 경우 실제 표지 모양과 약간 상이할 수도 있으므로 현장에 적용시에는 교통안전표지 일람표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 제 2 절 |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 제4조(교통안전 시설의 종류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2. 규제표지 3. 지시표지 4. 보조표지 5. 노면표시

②제1항의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법,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는 별표6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하면,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에 의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4조에 안전표지의 종류와 만드는 방식, 설치해야 할 곳,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안전표지를 설계 및 제작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규격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제1항에 안전표지의 종류와 표지목적이 정의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 안전표지의 표지종류와 만드는 방식, 표지의미,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를 별표6에 규정하고 있다.



## 제 3 절 | 교통안전표지의 분류

### 기 준

- 교통안전표지는 본표지와 보조표지로 구분하고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본 표 지: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3종류
  - 보조표지: 보조표지 1종류
- 본표지는 단독으로 주의, 규제, 지시의 의미를 전달한다.
- 보조표지는 본표지와 함께 설치해야 하며, 본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보완 또는 첨부기능을 한다.

**해설** 교통안전표지는 본표지와 보조표지로 구성된다. 본표지는 단독으로 설치되거나 보조표지와 함께 사용되어 주의, 규제, 지시의 의미를 전달하며, 보조표지는 단독으로는 설치될 수 없다. 즉, 보조표지는 반드시 본표지와 함께 사용해야 하며 그 기능으로는 본표지를 부연하여 설명하거나 본표지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충 또는 관련 내용을 첨가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교통안전표지는 반드시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적합한 표지를 선택하여 설치해야 한다.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환경과 공학적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도 표지의 규격과 설치기준은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교통안전표지의 규격과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공학적 판단과 연구결과에 의해 타당한 사항은 권장사항으로 제시하였다. 교통안전표지는 정해진 기준에 의해 설계 및 제작되고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된 표지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정해진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특별히 정해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공학적 판단에 의해 설계 및 제작되도록 해야 하며, 설치시에는 관할 기관의 인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제2장 >>> 교통안전표지 설치기준

제1절 적용범위 및 기준

제2절 종류 및 정의

제3절 반사와 조명

제4절 교통안전표지의 설치기준



제 2 장

# 교통안전표지 설치기준



## 제 1 절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 준

- 교통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과 양식에 따라 설계 및 제작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 관련기준과 양식이 없는 사항은 전문가의 공학적 판단과 관할 기관의 제작 및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교통안전표지의 목적과 기능이 상실되거나 소멸되었을 때는 즉시 제거 또는 교체해야 한다.

## 제 2 절 | 종류 및 정의

교통안전표지는 주의, 규제 및 지시의 본표지와 보조표지가 있으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와 예비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이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로서 도로상태 예고, 노면 또는 연도상황 예고, 기상상황 예고, 기타주의 예고로 구분한다.
-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이나 금지 등의 규제를 하



는 경우에 이를 도로이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로서 통행금지, 통행제한, 금지사항으로 구분한다.

-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도로이용자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는 표지로서 도로지정, 통행방법 지시, 기타지시로 구분한다.
- 보조표지: 주의, 규제 및 지시표지 등의 본표지 의미를 명확하게 하거나 보충 또는 추가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로서 거리, 구역, 구간, 일자, 시간, 본표지 설명, 해제, 기타 사항으로 구분한다.

### 제 3 절 | 반사와 조명

#### 1. 반사

##### 기 준

- 교통안전표지판은 반드시 정해진 반사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야간에도 주간과 동일한 시인성이 유지되도록 고휘도 반사재 등을 사용해야 한다.
- 교통안전표지판의 반사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변색, 균열 또는 변형이 생겨서는 안된다.
- 각 반사지 유형별 재귀반사계수(coefficient of retro-reflection), 주간의 색좌표 및 휘도율은 「KS A 3507:2005, ASTM D 4956-01a」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표 2-3>~<표 2-9>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단, 관측각 0.1°는 구매자가 요구시 적용한다.)



## 권 장

-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과 설계속도가 높은 도로 등에는 반사강도가 높은 반사지를 사용한다.
- 반사재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교통안전표지의 종류 및 중요도
  - 도로의 종류 및 등급
  - 도로의 설계속도 및 제한속도
  - 도로환경(노면상태, 주변환경)
- 반사지는 설치지점의 주변환경, 내구성, 시인성, 판독성, 경제성, 반사성능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하되 일반적으로 고속주행이 가능한 도로에서는 반사지의 밝기가 큰 것을 사용한다.

### 예 설

교통안전표지판의 시인성은 표지판의 반사성능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도로이용자에게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은 초고휘도 반사지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속도가 높거나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서는 반사성능이 우수한 반사지를 사용함으로써 표지판의 시인성을 제고하여 도로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반사성능을 높이는 방법으로 초고휘도 반사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반사지는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 시트)에 따라 구분하며, 교통안전표지에서는 「유형 Ⅲ, Ⅳ, Ⅶ, Ⅷ, Ⅸ」를 사용한다.

여기서 유형Ⅲ은 고휘도 캡슐렌즈형(High-Intensity Capsule Lens), 유형Ⅳ는 고휘도 프리즘형(High-Intensity Microprismatic), 유형Ⅶ, Ⅷ은 초고휘도 프리즘형(Super-High-Intensity Microprismatic), 유형Ⅸ은 광각 초고휘도 프리즘형(Very-High-Intensity Microprismatic)을 말하며 각



시트의 특징은 <표 2-1>과 같다. 차종별 관측각과 관측거리의 관계는 <표 2-2>와 같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현장에 적절한 성능을 갖는 반사지를 선택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2-1〉 재귀반사시트의 유형별 특징

유형	구조	등급	특징
Ⅲ	캡슐렌즈형	고휘도	고급의 반사성능 (High-Intensity)
Ⅳ	프리즘형	고휘도	
Ⅶ		초고휘도	특히 원거리에서 성능이 우수함
Ⅷ			
Ⅸ		광각 초고휘도	특히 근거리에서 성능이 우수함

〈표 2-2〉 차종별 관측각과 관측거리

차종 \ 관측각	0.1°	0.2°	0.5°	1.0°
승용차	450 m	230 m	100 m	50 m
대형트럭	1090 m	545 m	220 m	110 m
레저차(RV)	520 m	265 m	110 m	55 m

반사성능은 표지판의 전면에서 차량전조등 불빛을 조사할 경우 운전자의 위치로부터 입사각 「-4°~+30°」의 범위 내에서 재귀반사가 되어 표지요소를 충분한 거리에서 보고 관독할 수 있어야 한다. 반사성능의 감소로 인한 표지판 교체시기는 설치지역의 교통환경과 표지의 훼손정도를 고려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표 2-3〉 「유형 III」(캡슐렌즈형 고휘도) 반사지의 재귀반사계수

(단위:  $\text{cd}/(\text{lx} \cdot \text{m}^2)$ )

관측각	입사각	흰색	노랑	빨강	주황	녹색	청색	갈색
0.1°	-4°	300	200	54	120	54	24	14
0.1°	30°	180	120	32	72	32	14	10
0.2°	-4°	250	170	45	100	45	20	12
0.2°	30°	150	100	25	60	25	11	8.5
0.5°	-4°	95	62	15	30	15	7.5	5
0.5°	30°	65	45	10	25	10	5	3.5

〈표 2-4〉 「유형 IV」(프리즘형 고휘도) 반사지의 재귀반사계수

(단위:  $\text{cd}/(\text{lx} \cdot \text{m}^2)$ )

관측각	입사각	흰색	노랑	빨강	주황	녹색	청색	갈색
0.1°	-4°	400	270	56	160	56	32	12
0.1°	30°	120	75	13	48	13	7	3
0.2°	-4°	250	170	35	100	35	20	7
0.2°	30°	80	54	9	34	9	5	2
0.5°	-4°	135	100	17	64	17	10	4
0.5°	30°	55	37	6.5	22	6.5	3.5	1.4

〈표 2-5〉 「유형 VII」(프리즘형 초고휘도) 반사지의 재귀반사계수

(단위:  $\text{cd}/(\text{lx} \cdot \text{m}^2)$ )

관측각	입사각	흰색	노랑	빨강	주황	녹색	청색
0.1°	-4°	1000	750	200	375	100	45
0.1°	30°	570	430	115	215	57	26
0.2°	-4°	750	560	150	280	75	34
0.2°	30°	430	320	86	160	43	20
0.5°	-4°	240	180	48	90	24	11
0.5°	30°	135	100	27	50	14	6



〈표 2-6〉 「유형 VIII」(프리즘형 초고휘도) 반사지의 재귀반사계수

(단위: cd/(lx · m<sup>2</sup>))

관측각	입사각	흰색	노랑	빨강	주황	녹색	청색	갈색
0.1°	-4°	1000	750	150	375	100	60	30
0.1°	30°	460	345	69	175	46	28	14
0.2°	-4°	700	525	105	265	70	42	21
0.2°	30°	325	245	49	120	33	20	10
0.5°	-4°	250	190	38	94	25	15	7.5
0.5°	30°	115	86	17	43	12	7	3.5

〈표 2-7〉 「유형 IX」(광각 초고휘도) 반사지의 재귀반사계수

(단위: cd/(lx · m<sup>2</sup>))

관측각	입사각	흰색	노랑	빨강	주황	녹색	청색
0.1°	-4°	660	500	130	250	66	30
0.1°	30°	370	280	74	140	37	17
0.2°	-4°	380	285	76	145	38	17
0.2°	30°	215	162	43	82	22	10
0.5°	-4°	240	180	48	90	24	11
0.5°	30°	135	100	27	50	14	6
1.0°	-4°	80	60	16	30	8	3.6
1.0°	30°	45	34	9	17	4.5	2

〈표 2-8〉 재귀반사시트의 색도기준

(주간)

구분	CIE 색좌표							
	1		2		3		4	
	x	y	x	y	x	y	x	y
흰색	0.303	0.300	0.368	0.366	0.340	0.393	0.274	0.329
노랑	0.498	0.412	0.557	0.442	0.479	0.520	0.438	0.472
빨강	0.648	0.351	0.735	0.265	0.629	0.281	0.565	0.346
주황	0.558	0.352	0.636	0.364	0.570	0.429	0.506	0.404
녹색	0.026	0.399	0.166	0.364	0.286	0.446	0.207	0.771
청색	0.140	0.035	0.244	0.210	0.190	0.255	0.065	0.216
갈색	0.430	0.340	0.610	0.390	0.550	0.450	0.430	0.390

(주) CIE 표준광 D<sub>65</sub> 를 45°로 입사하여 0°에서 관측한 후 XYZ 표시계에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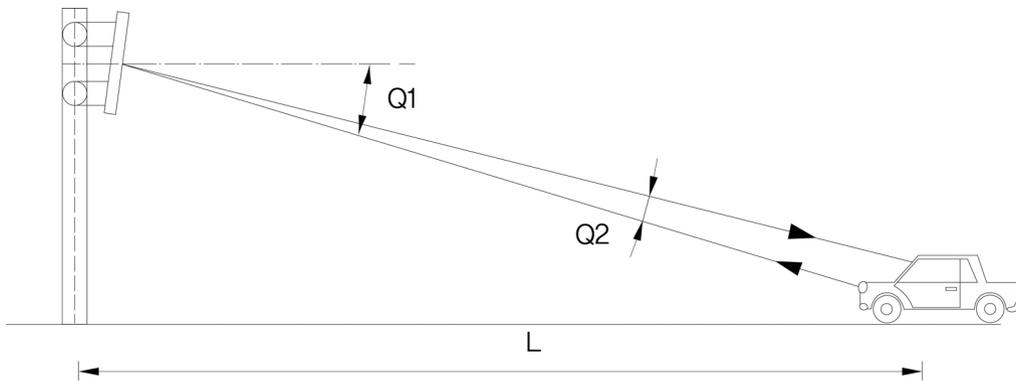


〈표 2-9〉 재귀반사시트의 휘도율

(Y %)

색상	유형 III		유형 IV, VII, VIII, IX	
	최소	최대	최소	최대
흰색	27	-	40	-
노랑	15	45	24	45
빨강	2.5	12	3	15
주황	14	30	12	30
녹색	3	9	3	12
청색	1	10	1	10
갈색	4	9	1	6

(주) CIE 표준광  $D_{65}$  를  $45^\circ$ 로 입사하여  $0^\circ$ 에서 관측한 후 완전 확산 반사면의 값을 100 Y % 로 기준하여 구한다.



[그림 2-1] 입사각과 관측각의 관계

일반적으로 표지판과 운전자의 거리(L)가 약 200m~230m 정도일 때에 자가용 승용차의 운전자와 전조등이 이루는 관측각은  $Q_2 = 0.2^\circ$ 이며, 트럭과 버스일 때 관측 각은  $Q_2 = 0.5^\circ$ 가 된다.



## 2. 조명

### 기 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야간에 표지에 대한 시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광원 또는 조명을 이용한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조명에는 외부조명과 내부조명이 있으며 내부조명은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로 구분한다.
- 조명을 이용한 교통안전표지의 모양과 색 등은 재귀반사식 표지와 같이 주간과 야간이 동일해야 한다. 단, 발광형 교통안전표지는 야간의 시인성의 향상을 위하여, 바탕색은 무광흑색으로 하고, 주의 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황색으로, 규제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백색으로 한다.
-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의 설치장소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일반기준 카.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를 따르며, 그 설치기준 및 시험방법은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을 따른다.
- 또한 적절한 휘도(조도)를 가져야 하고, 소등에 따른 기능상실에 대비해야 하며, 내구성이 있고,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 권 장

- 안개 잦은 곳, 야간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 도로의 구조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 표지판에 이슬이 자주 맺히는 지역 등에는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설**

○ 내부조명식의 설치기준

- 광원 및 시인거리: 전원은 일반전원(110/220V)이나 태양전지를 사용하고, 광원은 LED 등을 사용하며, 이를 광섬유 또는, 투과성 재귀반사체를 통하여 표현한다. 점등시 전방 약 150m에서 시인될 수 있는 휘도를 가져야 하며, 점등시 표지판의 휘도는 균일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 내부조명식의 적용범위

구분	조명식		발광형	
적용범위	주의, 규제, 지시, 보조		주의, 규제(속도제한)	
설치사례				
	주간	야간	주간	야간

- 내부조명식의 하단에 투광기 등을 설치하여 횡단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할 경우, 투광기의 조도기준 등은 도로조명시설 기준을 따른다.
-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은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의 시험기준을 따른다.
- 외부조명식: 외부조명식은 광원을 상부 또는 측방의 전면에서 투사하여 표지판을 조명하는 방법이다.
- 외부조명식의 설치기준
  - 외부조명식은 일반전원(110/220V)을 사용하고, 점등시 전방 약 150m에서 시인될 수 있어야 한다.
  - 외부조명식의 조도기준은 표면조도가 500lx 이상이어야 하며, 균일하게 분포되고, 주간과 유사한 광원(주광, Daylight)을 사용해야 한다.



- 또한 광원 또는 표지판에서 반사되는 빛이 운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 제 4 절 | 교통안전표지의 설치기준

### 1. 선정기준

#### 기 준

- 교통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과 본 매뉴얼의 설치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 표지판 자체에서 빛을 발하는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의 경우에는 안개가 잦은 지역, 야간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지점, 도로의 구조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지점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광형 안전표지의 바탕색은 무광흑색으로, 주의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황색으로, 규제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백색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해설** 교통안전표지는 교통환경과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표지, 장소에 대한 정보를 간단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지, 우선순위가 높은 표지, 잘 보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지, 판단과 행동을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표지인지를 공학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기존에 설치된 표



지와 중복되지 않게 하며, 설치시에는 설치간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교통안전표지는 도로망 전체에 대해서 일관되고 통일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설치하고 도로이용자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설치장소

### 기 준

- 교통안전표지의 설치장소는 표지의 종류, 설치위치, 설치간격 등을 고려하여 공학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야 한다.

**해설** 교통안전표지의 설치장소는 표지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장소와 시인성이 확보되는 곳, 다른 표지의 설치여부와 설치간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로구조, 교통상황과 연도상황 등을 고려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특히, 계절적 변화에 의해 표지의 시인성이 저하되는 곳은 주변환경을 개선하거나 계절적 변화의 영향이 없는 곳을 선정해야 한다.

### 권 장

- 교통안전표지의 설치장소를 선정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도로이용자의 시인성 방해 유무
  - 기 설치된 교통안전표지 및 신호기의 시인성 방해 유무
  - 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
  - 도로이용의 장애 유무



- 도로의 건축한계 및 측방 여유폭
- 설치 후 유지 및 보수

**해설**

교통안전표지의 설치장소는 시인거리, 관독거리, 운전자의 예비행동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한다. 교통안전표지의 시인성을 방해하는 원인으로서는 크게 도로의 부속시설과 도로 점유물이 있다. 도로의 부속시설로는 입체횡단시설, 조명시설, 가로수, 광고물 및 가변정보판 등이 있으며, 도로점유물로는 전주, 소화전, 공중전화, 간판, 우체통, 지하철 출입구, 가판대, 공사표지판 등이 있다. 특히, 활엽수와 같은 가로수가 있는 장소는 녹음기 동안 가로수에 의한 시인성 장애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인성 측면 이외에도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별 설치장소, 설치 간격, 운전자의 행동특성, 설치후 유지보수의 용이성 및 즉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설치위치의 결정은 「3. 설치위치」를 참조한다.

### 3. 설치위치

**기 준**

- 교통안전표지 설치위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선정한다.
- 설치위치는 공학적 계산에 의해 적합하고 타당한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 항상 동일한 시인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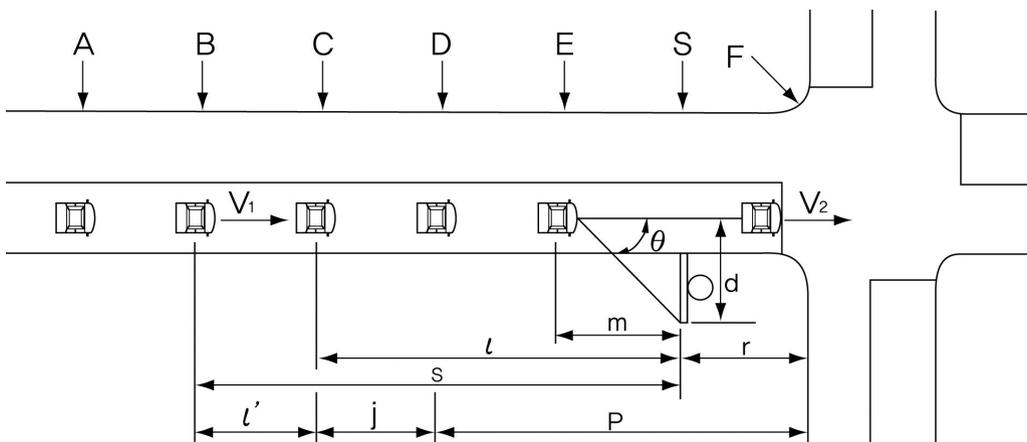
**권 장**

- 설치장소에 따라 설치위치를 달리 선정할 수 있다.



- 주의 예고거리는 30~200m 범위내, 규제와 지시는 규제 및 지시가 시작 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단, 설치위치가 명시된 경우는 그에 따른다.
- 설치위치는 도로조건과 도로종류, 교통상황, 주행속도, 운전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 설치위치는 표지판의 반사지, 조명시설 및 조명방법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해설** 표지판 S(설치지점)를 A(발견지점)에서 발견하고, B에서 C로 주행하면서 표지내용(판독구간)을 알게 되며, D(반응지점)에서 판단한 행동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소실지점)를 지나면 표지가 보이지 않게 된다.  $\overline{BS}$ 를 시인거리(s),  $\overline{CS}$ 를 판단반응거리(l),  $\overline{ES}$ 를 소실거리(m)라 할 때, 이들 거리사이의 대소관계는  $\overline{BS} \geq \overline{CS} \geq \overline{ES}$  이어야만 한다.



A: 표지 시인점,                      B: 표지 판독시점,                      C: 표지 판독완료점,  
 D: 운전자 행동 시작점,            E: 표지 소실점,                      S: 표지 설치지점

[그림 2-2] 표지에 대한 운전자 행동

일반적으로 표지내용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반응하기까지는 각 단계별로

따른 소요시간이 필요하며,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한 최소선행거리(r)를 산정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교차로 정지선에서 정지할 수 있는 정지거리는

$$p = l + r - j \geq (n-1) \times V_1 \times t_1 + \left( \frac{V_1^2 - V_2^2}{2a} \right) \dots\dots\dots (1)$$

운전자의 관측시각에 의한 판단반응거리는

$$l \geq m = \frac{d}{\tan \theta} \dots\dots\dots (2)$$

여기서,  $(n-1) \times V_1 \times t_1$  : 차로변경거리

$\left( \frac{V_1^2 - V_2^2}{2a} \right)$  : 차로변경 또는 정지거리

- p : 행동거리(m)                      l : 판단반응거리(m)                      r : 선행거리(m)
- j : 행동판단거리(m)                      n : 차로수    m : 소실거리(m)
- t1 : 차로변경 소요시간 (10초)
- V1: 접근속도(km/h)                      V2 : 최종속도(교차로 또는 위험장소: km/h)
- a : 감속도(0.75 ~ 1.5m/ sec<sup>2</sup>)
- d : 운전자(지상 1.2m)에서 표지까지 좌우(또는 상하)관측거리
- θ : 소실점과 표지가 이루는 각도  
(보통 좌우편각 θ=15°, 양각(仰角) θ=7°)

따라서 위의 식들을 교차로부터 설치장소에 대해서 정리하면

$$\text{선행거리}(r) \geq (n-1) \times V_1 \times t_1 + \left( \frac{V_1^2 - V_2^2}{2a} \right) + (t' \times V_1) - l \dots\dots\dots (3)$$

t' : 판단반응시간 (2.0 ~ 2.5초)

$$\text{측방거리}(d) \leq l \times \tan \theta \dots\dots\dots (4)$$

이다. 식(3)과 (4)를 만족시키도록 표지의 설치장소와 위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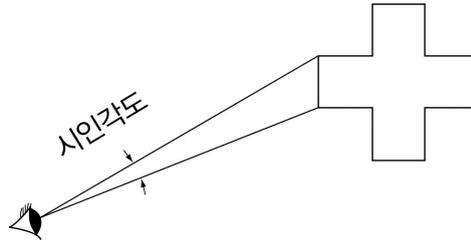


## 예시

+자형 교차로에 +자형 교차로(101) 주의표지를 설치하고자 한다. 선행거리(r)는 얼마로 하면 좋은가? 단, 2차로 도로에서 접근속도가 55km/h, +자형 기호 크기는 8cm이다.



[그림 2-3] +자형 교차로(101) 표지



[그림 2-4] 시인각도

시인각도( $\theta$ )는 보통사람의 경우  $2.9 \times 10^{-4}$ rad(또는 1")이다. 그러나 교통안전표지의 설치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약시자를 위해 보통사람 시인각도의 2배를 고려한다.

따라서 판단반응거리  $l$  은

$$\therefore l \geq \frac{8}{5.8 \times 10^{-4}} = 13,793(\text{cm}) \approx 138(\text{m})$$

식 (3)에  $V_1 = 55\text{km/h}$ ,  $V_2 = 0\text{km/h}$ 이며,  $t'$  를 2.5초 가정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속도( $a$ )에  $0.75\text{m/sec}^2$ 를 대입하면

$$\therefore r \geq \frac{55^2}{2 \times 0.75 \times 3.6^2} + \frac{2.5 \times 55}{3.6} - 138 (\text{m}) \approx 56 (\text{m})$$

선행거리(r)는 최소 56m를 넘어야 한다. 또한 매뉴얼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제시(30~120m)한 거리를 고려할 경우, +자형 교차로 주의표지의 선행거리를 60~120m 범위 내로 설치하는 것이 공학적으로 적합하다.



## 4. 설치방식

### 기 준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방법에는 정주식, 내민식, 문형식 및 부착식이 있다.

- 정주식: 지주에 표지판 1개 혹은 2개를 부착하여 도로의 측단, 도로의 중앙, 보도 또는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하는 방법
- 내민식(Overhang): 도로의 측단, 보도 또는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된 지주를 차도 부분까지 높게 달아내어 표지판을 달아낸 끝부분에 설치하는 방법
- 문형식(Over-head): 차도를 가로지르는 문형 시설물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차도 상부에 설치하는 방법
- 부착식: 타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여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부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운전 특성, 인간특성을 고려하여 시인성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 권 장

주의표지, 규제표지 및 지시표지는 정주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도 3차로 이상의 넓은 도로는 내민식으로 설치한다. 다만, 설치장소 부근에 조명등, 횡단보도(육교) 등이 있는 곳에서는 부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가능한 이것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신호기 지주에는 신호가 지시하는 내용의 중요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표지의 병설부착을 피할 것을 권장한다.

**해설** 표지별 설치방법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의표지는 도로의 구조 기타상황(다차로 도로, 가로수에 의한 장애)을 감안하여 정주식으로서의 시인성이 불량하여 설치효과가 적을 때



와 현재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위험이 많은 장소에 특히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때 내민식, 문형식 또는 부착식으로 할 수 있다.

- 규제표지는 도로여건에 따라 내민식, 정주식 등으로 부착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차높이제한(221), 차폭제한(222) 표지는 제한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착 설치한다.
- 지시표지는 도로의 구조 기타상황에 따라 내민식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신호교차로에서 신호가 지시하는 내용과 중복되는 표지를 신호기 지주에 부착하여 초행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좌회전금지, 직진 및 우회전 등)

## 5. 설치높이 및 측방 여유폭

### 기 준

- 설치높이: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높이는 지주형태 및 표지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다.
  - 정주식: 표지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100~210cm로 한다.
    - 주의표지, 규제표지: 100~210cm
    - 지시표지, 보조표지: 100cm 이상
  - 문형식과 내민식은 500cm 이상으로 한다.
  - 보도에 설치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측방여유: 교통안전표지의 측방여유는 지주형태 및 도로종별로 다음과 같다.
  - 정주식
    - 보·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 보·차도경계 연석에서 보도쪽으로 25cm 이상([그림 2-5] 참조)
    - 중앙분리대, 교통섬: 분리대 끝으로부터 25cm 이상 내측([그림 2-5] 참조)



-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는 50cm, 일반도로는 25cm 시설한계선 바깥쪽에 설치해야 한다. ([그림 2-5] 참조)
- 내민식 및 문형식
  - 정주식의 측방 여유폭 기준에 준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 \* 시설한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참조

**해설**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높이와 측방 여유폭은 지주형태 및 표지종류에 따라 다르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과 매뉴얼에 설치규격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 설치규격은 도로이용자의 시인 및 관독거리, 통행방해 및 훼손 가능성, 유지·보수비용, 가로수나 방호책 등 도로변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의한 시인장애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내민식과 문형식은 건축한계기준인 450cm에 시공오차, 자재의 굴절, 노면 덧씌우기 등에 대한 여유 폭(50cm)을 고려하여 450~500cm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정주식의 경우, 설치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아도 문제가 되므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는 100~210cm로 신축성있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일반적인 성인 키보다 높은 190cm를 표지의 기준 높이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다만 보도 등에 설치할 때, 보도의 폭이 보행자 교통량과 비교하여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장소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폭이 150cm 이상의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최소 200cm 이상으로 아주 좁은 도로 등에서는 통행인의 장애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도의 시설한계인 250cm로도 할 수 있다. 교통안전표지의 측방 여유폭은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높이와 측방 여유폭은 운전자의 시인성, 표지의 훼손 가능성, 보행자의 통행방해,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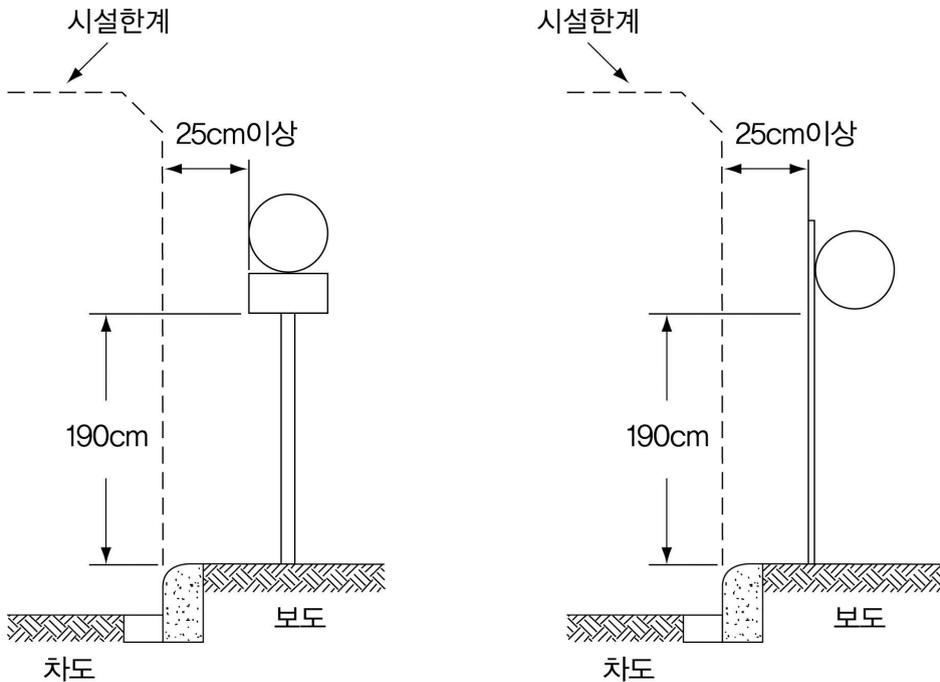
설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높이, 측방 여유폭은 다음 <표 2-10> 및 [그림 2-5]와 같다.

<표 2-10>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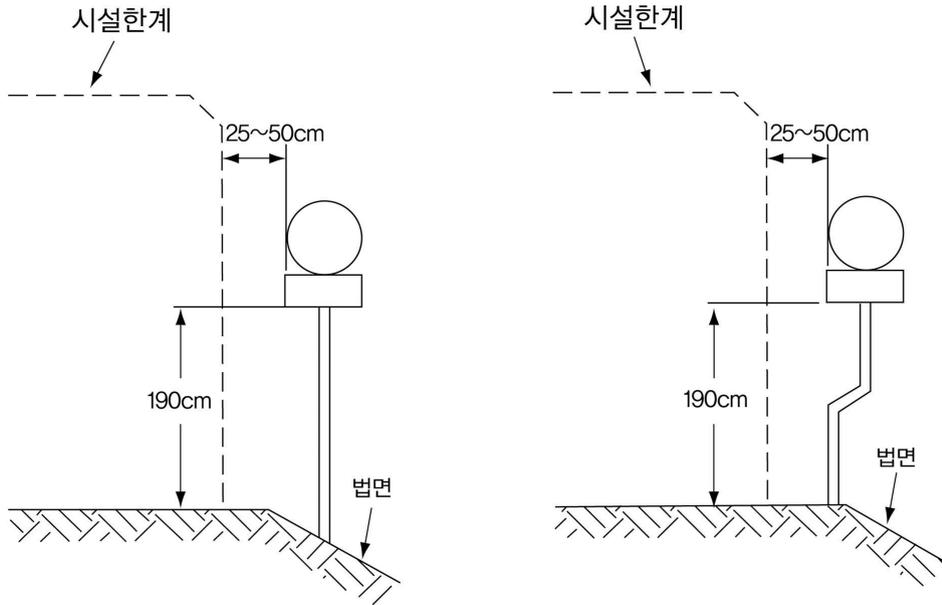
표지종류	설치높이 (cm)	비고
주의표지	100 ~ 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지판 하단까지 높이</li> <li>○ 문형식 및 내민식으로 할 경우에 450~500cm</li> </ul>
규제표지	100 ~ 210	
지시표지	100 이상	
보조표지	100 이상	

### 권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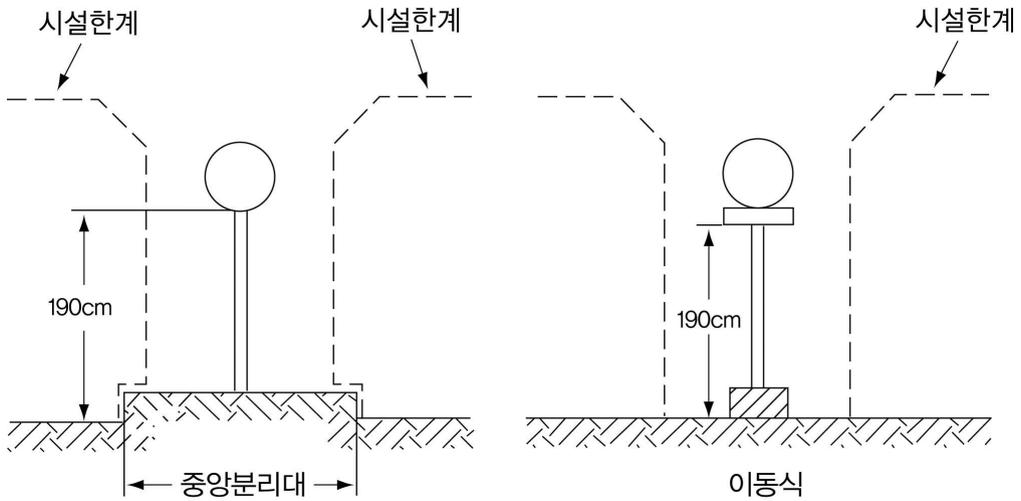
- 도로의 기하구조, 교통여건, 적설 등 기상조건과 가로수, 전주 등 도로조건을 고려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 설치높이 및 측방여유폭을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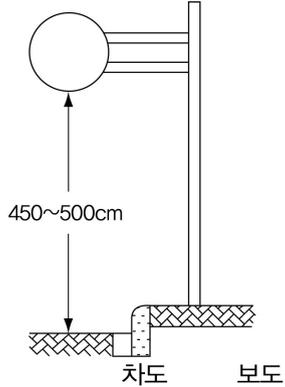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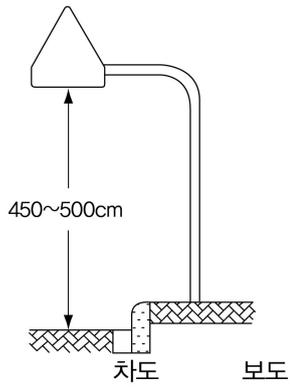
<정주식 - 보차도 구분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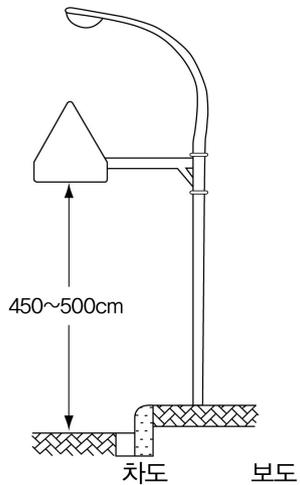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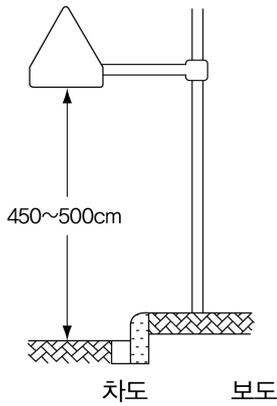
〈정주식 - 보차도 구분이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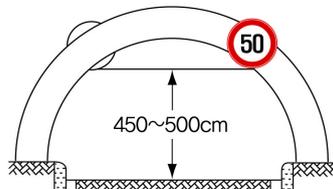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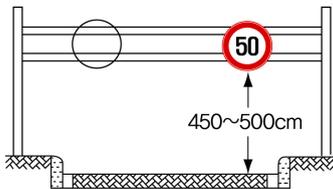
〈정주식 - 중앙분리대 또는 이동식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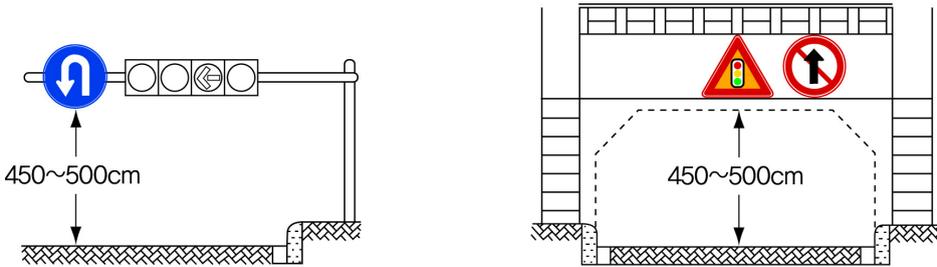
〈내민식 1〉



〈내민식 2〉



〈문형식〉



〈부착식〉

[그림 2-5] 설치높이 및 측방 여유폭

## 6. 설치방향 및 각도

### 기 준

- 표지의 설치방향 및 각도는 도로이용자의 진행방향과 지주형태 및 표지의 종류별로 상이하며, 본 매뉴얼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본표지와 보조표지의 설치방향 및 각도는 동일하여야 한다.

**해설**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방향 및 각도는 도로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거나 직각 또는 사각으로 설치한다. 설치각도는 교통안전표지와 차량진행방향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도이며, 반드시 교통안전표지를 보아야 할 대상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향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설치장소에 따라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절히 설치각도를 조정할 수 있다. 곡선부 등에 설치할 때에는 해당 교통안전표지를 인지해야 할 차량의 위치에 따라 적절히 조정해야 하며, 도로 중심선의 방향을 기준으로 차량의 진행방향에 대한 시인각도를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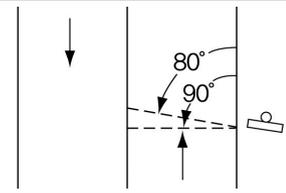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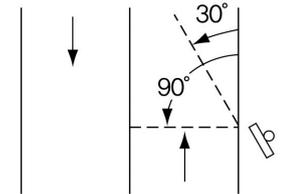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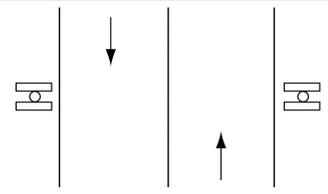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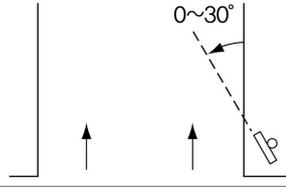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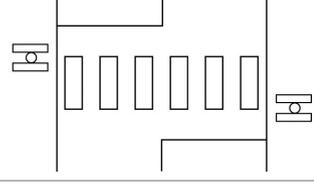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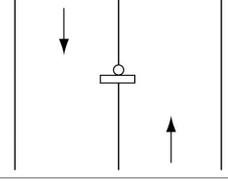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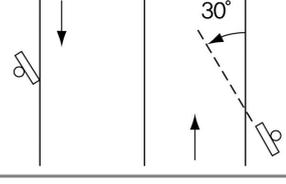


## 권 장

○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방향 및 각도는 차량 진행방향의 연장선, 지주형태 및 표지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정주식
  - 주의표지: 진행방향과 대면 80°~90°
  - 규제표지, 지시표지
    - 일반표지: 진행방향과 대면 30°~90°
    - 도로중앙이나 중앙분리대 설치(이동용 표지 포함): 진행방향과 대면 90°
    - 보행자보행금지(230): 보행자의 진행방향과 대면
    - 일방통행(326, 327): 진행방향과 대면 0°~30°  
(328): 진행방향과 대면 90°
    - 횡단보도(322), 어린이보호(324), 자전거횡단도(325): 진행방향에서 양면으로 대면 80°~90°
    - 정차·주차금지(218), 주차금지(219): 진행방향과 대면 0°~30°
- 내민식, 문형식: 진행방향과 대면 90°(직각)
- 부착식
  - 도로의 측면에 설치할 경우: 정주식 설치규격을 따른다.
  - 횡단육교, 터널 등에 설치할 경우: 내민식과 문형식 설치규격을 따른다.

〈표 2-11〉 정주식 표지의 설치방향 및 각도

표지의 종류		설치각도	예시도
규 제 표 지 및 지 시 표 지	주의표지	차량 진행방향의 연장선과 직각	
	일반표지	차량 진행방향의 연장선과 직각 또는 사각	
	보행자 보행금지(230)	보행자의 진행방향과 대면	
	일방통행 (326, 327, 328)	차량 진행방향의 연장선과 평행 또는 사각 단, (328)는 직각	
	횡단보도(322) 어린이보호(324) 자전거횡단도(325)	차량 진행방향의 연장선과 직각 또는 사각	
	도로 중앙이나 중앙 분리대에 설치하는 표지 (이동용 표지 포함)	차량 진행방향의 연장선과 직각	
	주·정차 금지(218) 주차 금지(219)	차량 진행방향의 연장선과 사각	



### 해설

<표 2-11>에서 도로중앙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는 주로 규제표지 중 통행금지와 관계되는 표지(201~210)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표지(303) 등이다. 부착식의 경우, 부착각도는 정주식의 설치규격에 준하며 횡단육교가 도로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와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교통안전표지는 상단과 하단을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적설지역에서는 교통안전표지에 적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단이 3°~5° 정도 앞으로 기울어지게 설치한다. 설치경사는 도로의 경사진 정도를 고려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는 차량의 전조등이 표지판에 난반사가 되어 표지식별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 후에는 반드시 난반사 여부와 시인성 등을 조사해야 한다.

## 7. 설치간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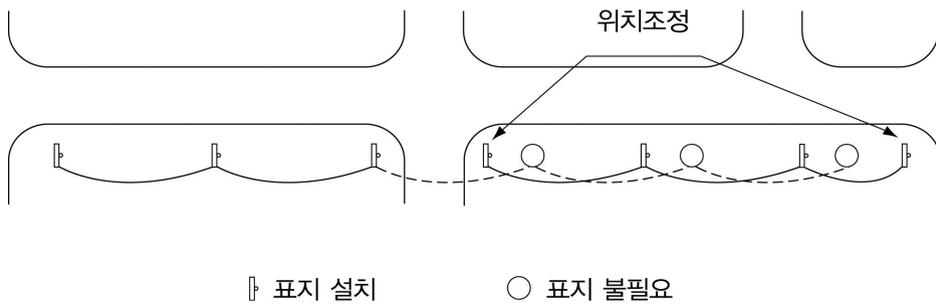
### 기 준

- 주의, 규제 및 지시가 표시하는 도로의 구역,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서 시인거리 및 교통상황을 적응하는데 필요한 예비동작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중복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규제와 지시표지는 규제 또는 지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규제 또는 지시가 있는 도로에서 구간 내에 교차로가 있을 때는 교차하는 도로 폭, 교통량 등에 따라 교차로 부근에 규제 및 지시표지를 중복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교통안전표지는 주의, 규제 및 지시가 필요한 도로의 구역,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서 도로이용자의 시인성과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교통안전표지는 도로이용자의 시인성과 교통상황에 따른 예비동작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중복하여 설치해야 한다. 그 경우에도 표지의 종류와 기준에 설치된 표지의 위치와 장소를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교통안전표지를 중복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지의 설치간격이 매우 중요하며, <표 2-12>의 설치간격 기준에 따른다.

규제 및 지시가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에서 구간 내에 교차로가 있을 때에는 교차하는 도로의 폭,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교차로 부근의 시작지점에 규제 및 지시표지를 다음 [그림 2-6]의 예와 같이 중복하여 설치한다.



[그림 2-6] 표지의 설치시작점(교차로)



〈표 2-12〉 표지종류별 설치간격

(단위: m)

구 분	교통안전표지 종류		도로별 설치간격		
			시도	지방도	자동차전용도
고속으로 주행중인 차량에 대한 표지	우회전금지	213	200	400	800
	좌회전금지	214	200	400	800
	유턴금지	216			
	앞지르기금지	217	200	300	500
	차간거리 제한	223	500	1,000	1,000
	최고속도 제한	224	200	400	800
	서행	226	100	100	
	일방통행	326			
	일방통행	327			
일방통행	328				
저속 주행중인 차량에 대한 표지	최저속도 제한	225	200	400	800
정지하려는 차량에 대한 표지	정차·주차금지	218	110~200	400	
	주차금지	219	100~200	400	
	주차장	319	100	100	
보행자에 대한 표지	보행자보행금지	230			

## 권 장

- 표지와 노면표시를 병설할 경우, 표지의 설치간격을 1.5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표지의 설치간격은 잔여거리에 따라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설치간격의 0.5배 이상인 경우: 표지의 설치구간 시작점에 붙여 설치한다.
  - 설치간격의 0.5배 미만인 경우: 표지의 설치구간 종점에 붙여 설치한다.
- 도로구조 및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표지의 설치간격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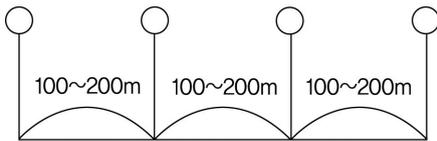
**해설**

교통안전표지는 도로이용자에게 표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일정한 설치간격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교통안전표지는 주행속도, 곡선반경, 시거 등의 도로조건 및 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결정해야 한다. 설치간격은 표지만 설치하는 경우와 노면표시와 표지를 병용하는 경우, 설치에 따른 잔여거리 등을 고려하여 공학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 [그림 2-7]은 교통안전표지만 설치하는 경우 및 노면표시와 병용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며, 노면표시와 병용할 경우는 교통안전표지의 설치간격을 1.5배 연장하여 설치하는 예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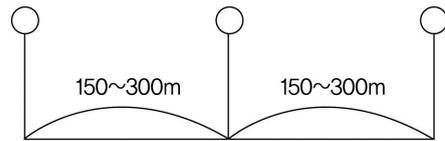
도로 축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간격은 잔여거리에 따라 연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즉, 설치간격을 고려하여 교통안전표지의 설치거리를 계산하였을 때에 잔여거리가 설치간격의 0.5배 이상인 경우에는 교통안전표지의 설치구간의 시작점에 붙여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잔여거리가 설치간격의 0.5배 미만인 경우에는 종점에 붙여 설치한다. 잔여거리에 따른 설치간격 예는 다음 [그림 2-8]과 같다.

○ 연속설치(주차금지 예)

- 표지만 설치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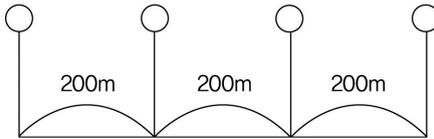
- 노면표시 병용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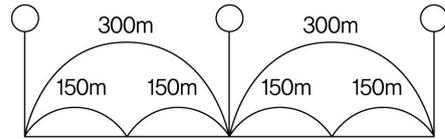


○ 지점설치(회전교차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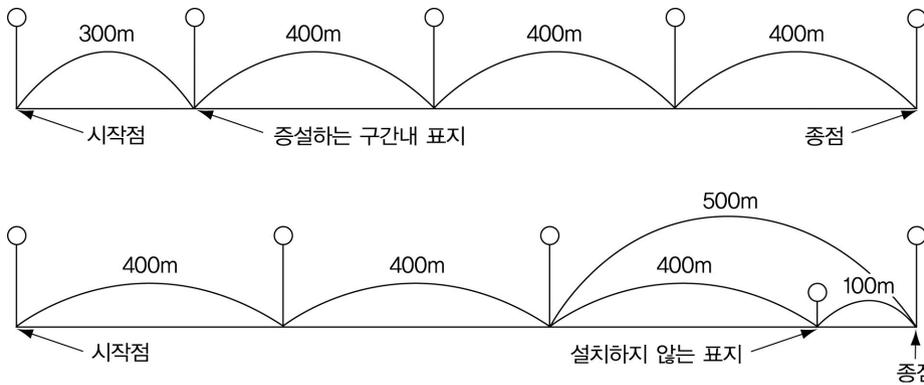
- 표지만 설치한 경우



- 노면표시 병용할 경우



[그림 2-7] 표지의 설치간격 예시도



[그림 2-8] 잔여거리에 따른 설치간격

## 8. 표지병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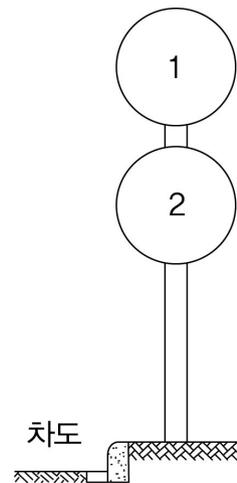
### 기 준

- 주의표지, 규제표지 및 지시표지는 상호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병설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종류의 표지라도 필요 이상으로 병설해서는 안된다.
- 주의표지를 2개 이상 병설해야 할 경우라도 가장 주의가 필요한 표지만 설치한다.



- 지주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병설한다.
  - 정주식: 동일면에서 종방향인 경우, 중요한 표지를 상부로부터 설치해야 한다.
  - 내민식 및 문형식: 동일면에서 횡방향인 경우, 중요한 표지를 중앙선 측으로 설치해야 한다.
  - 부착식: 중요한 표지를 도로의 중앙선 측으로 설치해야 한다.
- 병설시 표지판의 높이는 매뉴얼에서 규정한 지주형태별 설치높이 기준에 따른다.

**예** **설** 병설이란 동일한 지주에 2개 이상의 본표지를 설치하여 도로이용자에게 도로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표지병설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도로이용자가 정확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본표지를 과도하게 병설한 경우에는 도로이용자의 판단을 혼란하게 하거나 지연시키며, 오히려 적절치 못한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도한 표지사용으로 인한 판단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이상으로 표지를 병설해서는 안된다. 특히, 주의표지는 병설을 피하며, 2개 이상 병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2개 이하로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병설할 경우에는 적합한 표지를 선택하기 위해 교통환경 등을 고려한 공학적 판단에 의해야 한다. 표지의 병설은 지주형태에 따라 달리 설치해야 한다. [그림 2-9]는



[그림 2-9] 정주식 표지병설 예시도



정주식에 2개의 규제표지를 병설하는 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표지의 병설에 따른 표지높이는 정주식의 경우, 가장 낮은 표지의 하단에서 지표면까지 190cm 이상이어야 하며, 내민식과 문형식의 경우에는 500cm 이상으로 한다.

## 권 장

-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통통제를 해야 할 경우, 규제표지보다 지시표지를 우선하여 설치한다. 단, 공학적 판단에 의해 규제표지가 우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동일지주에 2개의 본표지를 병설할 수 있다. 단, 공학적 판단에 의해 3개 까지 병설할 수 있다.

## 예 설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교통통제를 해야 할 경우, 지시표지는 규제표지보다 우선하여 설치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전용도로 입구의 통제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 ① 자동차전용도로(301) 지시표지
- ② 좌회전금지(214)와 승용차 제외 보조표지
- ③ 좌회전금지(214)와 통행이 금지되는 차량의 보조표지

도로이용자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로이용자가 교통안전표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판단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가능한 2개 이내로 표지병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단, 교통상황 등을 고려한 공학적 판단에 따른 경우에는 3개까지 병설할 수 있다. 교통안전표지를 병설할 경우에는 기존 교통안전표지에 근접하여 새로운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하거나 도로공사 등



임시적으로 교통규제가 필요한 장소에서 병설이 더 효과적으로 판단 되는 경우에 한해서 설치한다.

## 9. 동일 표지의 우선순위

### 권 장

같은 종류의 교통통제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때는 규제표지보다 지시표지를 우선으로 하고, 보조표지를 적게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예를 들면 진행방향에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입구의 통제방법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적용한다.

- 자동차 전용도로(301) 표지
- 좌회전 금지(214)와 승용차 제외한 보조표지
- 좌회전 금지(214)와 통행이 금지되는 차량 즉 화물차, 버스, 이륜차의 보조표지 단, 이 통제가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첫번째 표지와 두번째 표지를 병용하여야 한다.

## 10. 특정차량의 통행금지

### 권 장

특정한 방향으로 어떤 차량의 진행을 금지시키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규제표지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예를 들면 버스의 좌회전을 금지시킬 때에는 좌회전 금지(214) 표지와 버스의 보조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이 표지



대신 직진 및 우회전(308) 표지와 버스의 보조표지를 사용한다면 버스만 직진 또는 우회전하라는 지시로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 11. 진행방향의 통제

### 권 장

진행방향에 대한 통제는 충돌이 가능한 진행방향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의미로 표지를 사용하고, 그 다음이 좌회전, 우회전 순서로 우선순위를 둔다. 예를 들면 일방통행 도로의 출구를 향한 직진방향의 교통에는 교차로 양측에 진입금지(211), 직진금지(212) 표지로 통제하고, 좌회전할 가능성이 있는 교통에 대하여서는 우측에 좌회전금지(214) 표지와 교차로 건너 좌측에 일방통행(326) 표지를 사용한다.

## 12. 단일표지의 차량 통제

### 권 장

단일표지로 직진, 좌·우회전 교통 모두에 대하여 똑같은 종류의 통제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 자동차 통행금지(202)) 직진방향에서 보아 교차로 건너측(7m 정도)에 표지판을 설치한다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 한함).

## 13. 통제구역 범위의 보조표지

### 권 장

통제구역의 범위를 나타내는 보조표지는 본표지를 진행방향과 직각 또는 사



각(30°~90°)으로 설치하였을 때에는 통제구역의 시점에 거리(402) 표지와 종점에 해제(427)표지(본표지를 사선 안에 넣어서)를 사용하며, 본표지를 진행방향과 평행 또는 30° 미만 사각으로 설치하였을 때에는 시점에 구간시작(417) 표지, 구간 중간에 구간내(418) 표지, 종점에 구간끝(419) 표지를 사용한다. 본표지가 진행방향과 30° 이상의 각을 이루는 곳에서는 거리(402)와 해제(427) 표지를 사용하던가 구간시작(417), 구간내(418), 구간끝(419) 표지를 사용하여도 좋다.

## 14. 표지남용

### 권 장

- 표지는 최소 개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단, 설치개수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 본표지를 선택할 경우, 보조표지를 포함한 표지개수가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다.

### 예 설

교통안전표지의 남용은 도로이용자의 인지 및 판단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 등 교통안전표지의 목적과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 교통안전표지는 주변 교통여건, 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 및 기존 교통안전표지와의 연계성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판단에 따라 교통안전표지가 남용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한 본표지에 부착하는 보조표지의 개수도 함께 고려하여 최소한의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제3장 >>> 주의표지

제1절 개요

제2절 주의표지 구분

제3절 교차로 예고표지

제4절 도로형상 예고표지

제5절 교통류변화 예고표지

제6절 시설 예고표지

제7절 노면상황 예고표지

제8절 연도위험 예고표지

제9절 기상상황 예고표지

제10 절 기타주의 예고표지



제 3 장

주의표지



제 1 절 | 개 요

주의표지의 목적은 도로이용과 관련된 위험요소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주의표지의 기능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주의표지의 내용은 도로이용자에게 안전과 소통을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간단명료한 형태이어야 한다.

권 장

- 주의표지의 예고거리는 도로종류 및 주행속도에 따라 다르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설치기준 및 장소에 따른다.

**해설** 주의표지는 도로상이나 도로변에 존재하는 위험 또는 잠재적 위험을 도로이용자에게 알리는 예고기능을 하며, 도로에 익숙하지 않은 도로이용자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주의표지를 무분별하게 설치하거나 남용할 경우에는 정보혼란 및 판단오류를 야기할 수 있으며, 주의표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도 초래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표지는 최소한으로 설치되도록 하며, 설치간격 및 배치간격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1개 지수에 사용되는 적정한 교통안전표지는 3개 이하이다. 또한 야간에도 주간과 동일한 표지의 시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 2 절 | 주의표지 구분

주의표지는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도로상황 예고표지: 도로의 선형, 시거 등 기하구조에 대한 주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도로개선을 하지 않으면 위험원인이 제거될 수 없는 장소나 지점에 비교적 장기적으로 설치한다. 이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기하구조 요소의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도로법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대한 규정’에서 정한 선형, 시거 등의 한계치를 기준으로 한다. 도로상황 예고표지는 교차로 예고표지, 도로형상 예고표지, 교통류 변화 예고표지 등이 있다.
- 노면 또는 연도상황 예고표지: 미끄러운도로(126), 노면고르지못함(128), 낙석도로(130)와 같이 노면 또는 연도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표지로서 설치기간은 단기적이며, 표지의 설치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제거해야 한다. 반면에 철길건널목(110), 어린이보호(133) 등과 같이 설치장소가 명확하며, 통행상 주의하여야 할 시설물 존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서 설치하며 설치기간은 장기적이다. 노면상황 또는 연도상황 예고표지는 시설 예고표지, 노면상황 예고표지, 연도위험 예고표지 등이 있다.
- 기상상황 예고표지와 기타 주의 예고표지: 해안이나 계절적 기상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또는 일시적이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될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해 도로이용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횡풍(137), 비행기(136), 야생동물보호(139), 위험(140) 등 주의표지가 있다.



### 제 3 절 | 교차로 예고표지

교차로 예고표지의 목적은 2개 이상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을 통과하고자 하는 도로이용자에게 교차로 형상을 미리 알려 주의환기와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데 있다. 교차로 예고표지의 기능은 교차로에 접근하는 도로이용자에게 교차로 형상을 제공함으로써 위험이나 사고방지를 위한 적절한 행동을 유도하고 진행방향에 따른 차로선택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자형 교차로(101), T자형 교차로(102), Y자형(103), ㅓ자형 교차로(104), ㅗ자형 교차로(105), 회전형 교차로(109) 표지 등이 있다.

#### 기 준

- 도로에서 속도를 낼 수 있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의 교차로에 설치해야 한다.
- 교차로로부터 전방 30~120m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 차량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해설

교차로 주의표지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거나 시인장애가 있는 도로에서 교차로 전방 30~120m 범위내 시인거리와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도시지역 교차로에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신호기 예고표지(125)가 있는 교차로에는 설치하지 않으나 지방지역 교차로에서 주행속도가 설계속도에 비해 높고 시인거리가 짧은 교차로에 설치한다. 설치장소는 도로이용자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인성 제고를 위해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공학적 판단이나 연구결과에 따른



다. 표지 설치위치는 도로의 설계속도와 볼 수 있는 거리에 따라야 하며, <표 3-1>의 볼 수 있는 거리 보다 작을 경우에 설치한다.

<표 3-1> 설계속도별 볼 수 있는 거리

설 계 속 도 (km/h)	20	30	40	50	60
볼 수 있는 거리 (m)	20	40	60	80	110

**권 장**

- 표지의 선정은 해당 교차로의 형상, 교차각도, 도로 폭의 차이 등을 고려한다.
- 차량 진행방향에서 볼 때 교차로 형상을 가장 명확하고 단순하게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선택한다.
- 교차로 형상과 일치하는 교차로 예고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교차로 형상과 가장 유사한 표지를 선택한다.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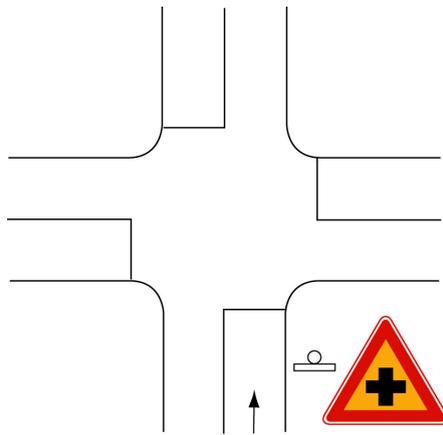
교차로 예고표지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교차로의 형상, 교차각도, 도로 폭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도로이용자가 교차로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형 또는 복합 교차로에서는 차량 진행방향에서 교차로 형상을 가장 단순하게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교차로 형상에 일치하는 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표지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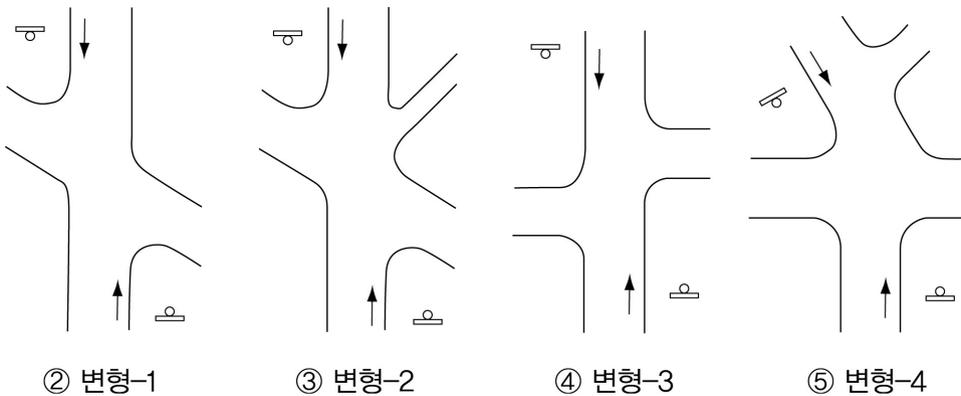
## 1. + 자형 교차로(101)

### 권 장

- 2개 도로의 교차각도가 45°~90°일 경우에는 +자형 교차로 주의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 [그림 3-2]의 변형-1, 변형-2, 변형-3, 변형-4의 교차로 형태에는 +자형 주의표지를 설치한다.



[그림 3-1] +자형 교차로(101) 기본형



② 변형-1

③ 변형-2

④ 변형-3

⑤ 변형-4

[그림 3-2] +자형 교차로(101) 변형



**해설**

[그림 3-1]은 교차각도가 90°인 +자형 교차로의 기본형이다. 그러나 보통 2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각도가 45°~ 90° 범위 내이고, 진행방향에서 교차로 형상이 +자형에 가장 가까운 경우에는 +자형 교차로 주의표지를 사용한다([그림 3-2] 참조). 즉, 변형-1과 변형-2에서 교차각도는 직각이 아니지만 +자형 교차로 형상과 유사하여 +자형 교차로 주의표지를 사용한 경우이다. 변형-3은 진행하면서 꺾자형과 T자형 교차로 형상이 나타나는 경우이며, 변형-4는 진행하면서 +자형, Y자형 교차로 형상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도로이용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형 주의표지만을 설치할 수 있다.

**2. T자형 교차로(102), Y자형 교차로(103), T자형 교차로(104), 꺾자형 교차로(105)**

**해설**

[그림 3-3]은 교차로 형상에서 교차로 전방에 T자형(102)과 Y자형(103) 기본형 교차로 주의표지를 설치하고, 길가장자리구역선(505) 노면표시를 병행 설치한다.

[그림 3-4]는 변형-1과 같은 교차로에서 한 도로의 폭이 무시될 정도로 좁은 경우, T자형 교차로(102) 표지보다 좌로 굽은 도로(112) 표지를 설치한다.

[그림 3-5] 변형-2는 직선 주도로가 다른 한 도로와 교차될 때 교차각도에 관계없이 우합류도로(107)나 좌합류도로(108) 표지가 아닌 T자형(104)과 꺾자형(105) 주의표지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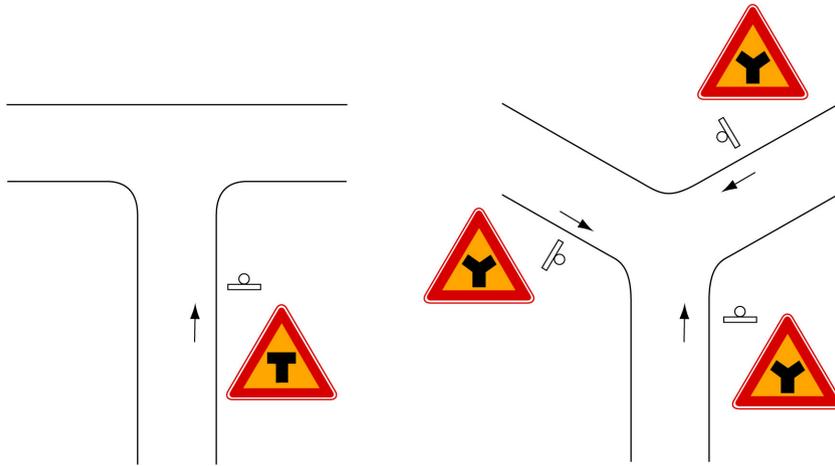
[그림 3-6] 변형-3은 교차로 형상이 +자형이지만 한 도로가 다른 세 도로의 폭에 비해 무시될 정도로 좁은 경우는 T자형(102), T자형(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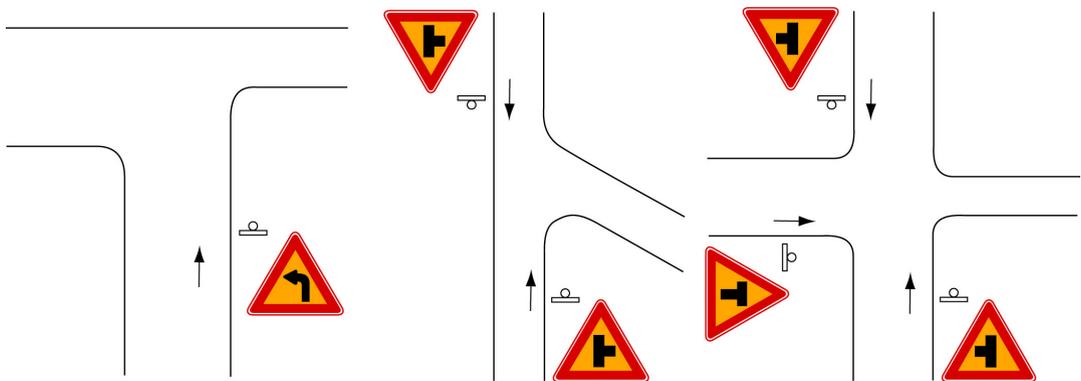
┌자형(105) 교차로 주의표지를 설치한다.

[그림 3-7] 변형-4는 진행방향에 따라 ┌자형(104), T자형(102) 및 Y자형(103) 교차로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진행방향에 따라 주의표지를 달리 설치한다.

[그림 3-8] 변형-5는 교차로 형상이 Y자형(103)에 가까우나 접근방향과 노면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형(104), ┌자형(105) 교차로 주의표지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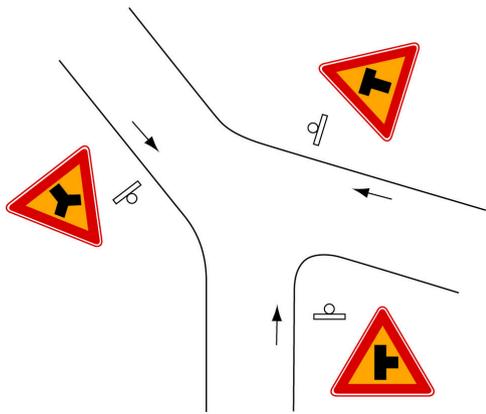
[그림 3-3] ┌자형(102) 및 Y자형(103) 기본형 교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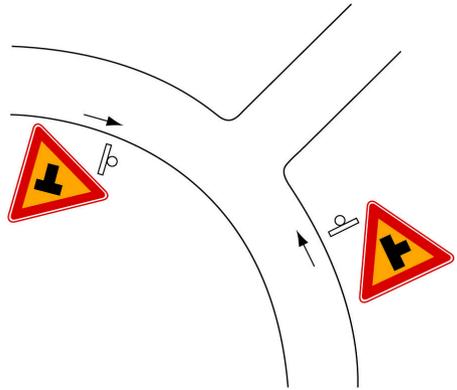
[그림 3-4] 변형-1

[그림 3-5] 변형-2

[그림 3-6] 변형-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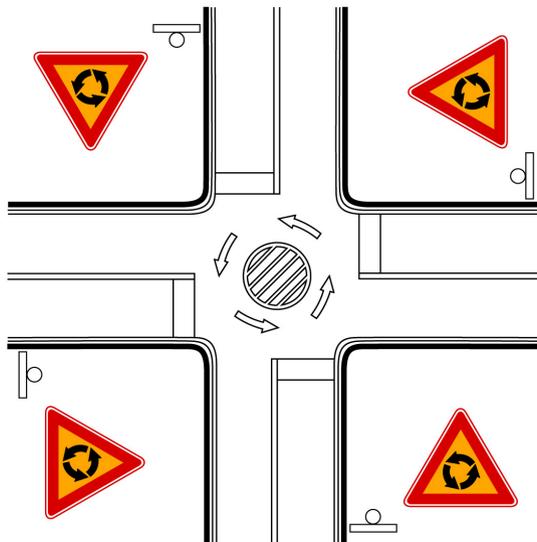
[그림 3-7] 변형-4



[그림 3-8] 변형-5

### 3. 회전형 교차로(109)

**해설** 교차로 중앙을 중심으로 차량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통과하는 교차로에 설치한다.



[그림 3-9] 회전형 교차로(109) 표지 설치 예시도



## 제 4 절 | 도로형상 예고표지

도로형상 예고표지의 목적은 굽거나 경사진 장소에 구간을 통과하고자 하는 도로이용자에게 도로형상을 미리 알려 주의환기와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도로형상 예고표지는 곡선구간의 굽은 횡수 및 방향, 경사구간의 경사방향 및 굽은 정도를 도로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위험이나 사고방지를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한다.

우로굽은도로(111), 좌로굽은도로(112), 우좌로이중굽은도로(113), 좌우로이중굽은도로(114), 오르막경사(116), 그리고 내리막경사(117) 등의 표지가 있다.

### 기 준

- 설계속도나 주행속도에 비해 급격하게 굽거나 경사진 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 굽거나 경사진 구간의 시작지점으로부터 30~200m 내에 설치해야 한다.
- 차량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도로형상 예고표지는 평면 및 종단선형으로 인하여 사고위험이 있는 구간을 도로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설치위치는 굽거나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의 전방 30~200m 범위 내에서 시인성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각 표지별 설치위치는 해당 항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권 장

- 굽은 도로에서 설치장소는 도로종류, 주행속도, 곡선반경, 시인거리, 도로 폭과 사고빈도 등을 고려하여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 경사진 도로에서 설치장소는 도로 폭, 도로선형, 교차로 유무, 연도상황,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 도로형상에 적합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해설** 도로형상예고표지의 곡선구간에서의 설치장소는 도로종류와 곡선반경을 고려하여 공학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시인거리와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정한다. 또한 짧은 곡선반경과 시인거리에 의한 사고가 잦은 곡선구간에도 설치한다. 종단구배 구간에서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에는 경사도, 도로 폭 및 선형, 교차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해야 한다. 경사구간의 거리가 길거나 경사도의 변화로 인해 도로이용자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지점에는 중복하여 설치한다. 이는 도로이용자가 급한 내리막길을 연속 주행하다 완만한 내리막길에 도달한 경우에 평지나 오르막길로 착각하여 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1. 우로굽은도로(111) 및 좌로굽은도로(112)

**해설** 굽은도로 표지는 도로등급 및 설계속도와 차량의 주행속도에 비해 곡선반경과 시인거리가 짧은 경우에 이를 도로이용자에게 예고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특히 도로의 곡선으로 인해 주행속도를 감속해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 권 장

- 굽은도로 표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치한다.
  - 주행속도와 설계속도에 따른 곡선반경이 짧은 경우
  - 굽은도로의 경정계수가 1.5이상인 경우
  - 동일지점에서 사고빈도가 연 2~3회 발생한 경우
  - 연속 굽은도로에서 상호간 직선거리가 60m 이하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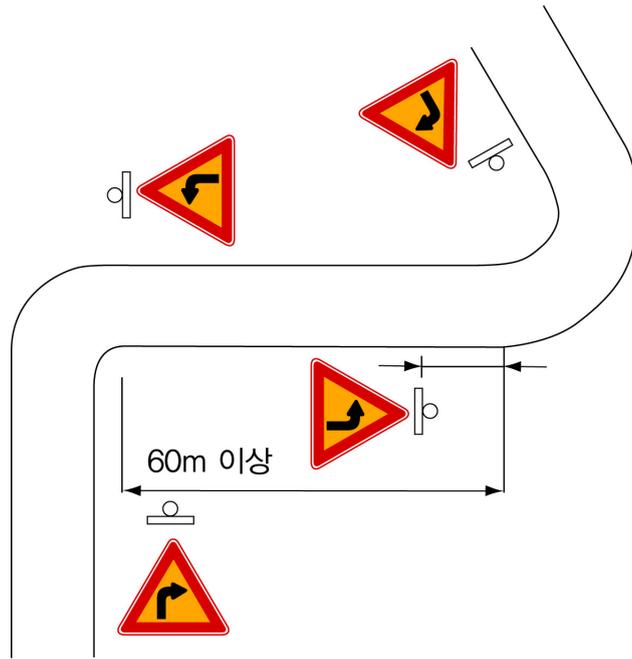
**애설** 곡선구간에서 곡선반경과 볼 수 있는 거리가 전방 도로구간의 설계속도와 주행속도에 비해 짧아 감속을 해야 하는 곳에 설치한다. 표지설치를 위한 고려요소는 주행속도에 따른 곡선반경과 볼 수 있는 거리이며, 곡선반경 한계치가 다음과 같을 때 설치한다.

- 주행속도가 60km/h 이상이고 곡선반경이 300m 미만
- 주행속도가 40km/h 정도이고 곡선반경이 120m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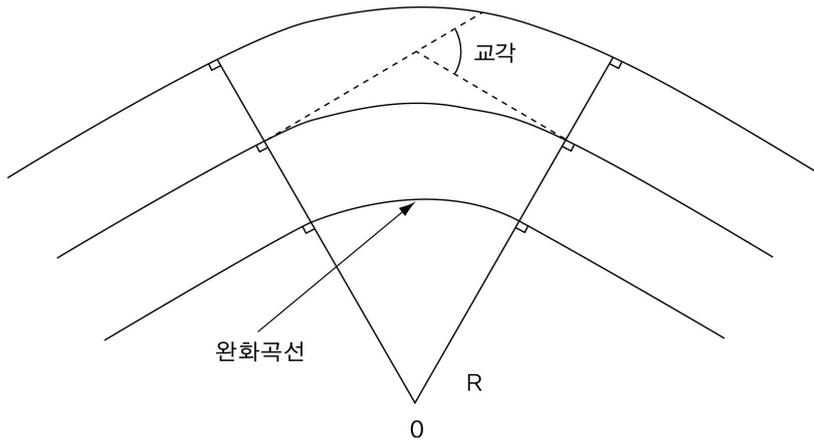
설계속도에 따른 곡선반경의 한계치가 <표 3-2>보다 작은 경우에도 설치한다. <표 3-2>에서 도로교각이라 함은 다음 [그림 3-11]과 같이 한 도로의 연장선이 교차하는 도로의 연장선과 이루는 각을 말한다.

〈표 3-2〉 설계속도별 곡선반경 한계치

설 계 속 도 (km/h)	곡 선 반 경 (m)	도 로 교 각 (°)
60	150 이하	45° 이상
50	100 이하	45° 이상
40	60 이하	45° 이상



[그림 3-10] 우로굽은(111), 좌로굽은(112) 도로 설치 예시도



[그림 3-11] 도로교각

굽은 도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정도를 지수로 표시한 것이 경정계수이다. 즉, 굽은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굽은 도로를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한



안전속도 이하로 감속해야 하는데 그 속도의 제곱차를 감속거리로 나누어 지수로 환산한 것이 경정계수이다. 경정계수는 차량의 제동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통 1.5 이상인 경우에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P = \frac{V_a^2 - V_s^2}{l}$$

여기서, P : 경정계수

Va : 감속이전 평균 접근속도(km/h)

Vs : 굽은 도로의 안전속도(km/h)

l : 감속시점부터 곡선시점까지 거리(m) (단, 야간주행기준)

굽은 도로구간의 동일한 지점에서 연간 2~3회 동일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설치하고, 안전속도를 나타내는 보조표지(409)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곡선구간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 굽은도로 또는 이중굽은도로 주의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데, 설계속도에 따른 굽은도로 주의표지를 설치해야 할 직선거리 한계치는 다음 <표 3-3>와 같다.

상호간 직선거리는 처음 곡선구간이 끝나는 곳에서 다음 곡선구간이 시작하는 곳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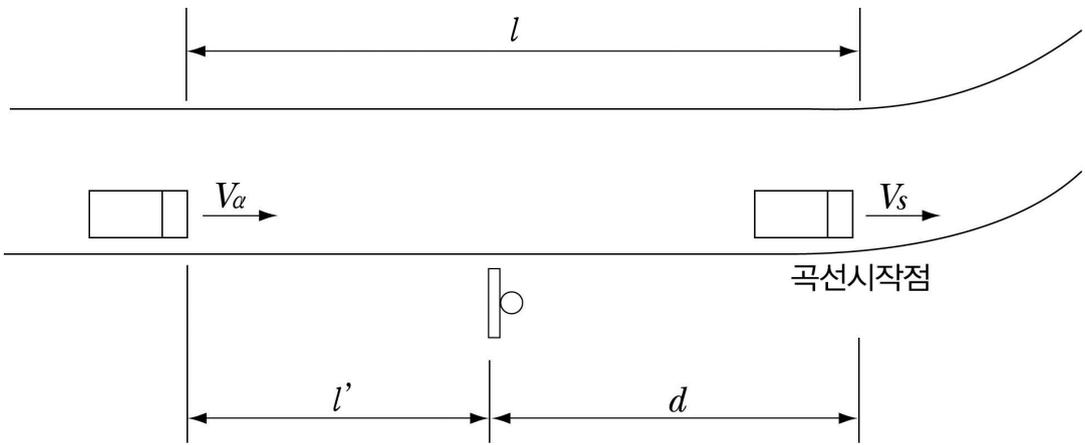
설치위치는 주행속도, 곡선반경, 시인성 등에 따라 30~200m 범위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도로는 60~100m, 고속도로는 100~200m 이내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특히, 안전속도(409) 보조표지를 굽은도로주의표지와 병설할 경우, 도로이용자가 굽은 도로구간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다.

〈표 3-3〉 설계속도별 굽은도로표지 설치

설 계 속 도 (km/h)	상호간 직선거리 (m)
60	100 이상
50	80 이상
40	60 이상

적용사례

주행속도가 시속 55km, 곡선구간의 안전속도가 시속 35km일 때, 굽은도로 주의표지를 인지하여 굽은도로 시작점까지 주행한 거리를 l 이라 할 때, 다음 계산공식을 이용하여 적합한 설치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림 3-12] 굽은도로(111) 표지의 설치지점

$$l = V_a \times t' + \frac{V_a^2 - V_s^2}{2 \times \alpha} \dots\dots\dots ①$$

- 여기서, Va : 접근속도(km/h)
- Vs : 안전속도(km/h)
- t' : 반응시간(sec, 보통 2.5sec)
- α : 감속도(m/sec<sup>2</sup>, 보통0.75 m/sec<sup>2</sup>)



식 ①에서 속도의 단위를 km/h에서 m/sec로 변환하면,

$$\frac{1000(m)}{1(km)} \times \frac{1(hr)}{3600(sec)} = \frac{1}{3.6} \left( \frac{m \times hr}{km \times sec} \right) \text{와 같다.}$$

식 ①에 앞 계산결과를 대입하면 주행한 거리공식(  $l$  )은 식②가 된다.

$$l = \frac{V_a}{3.6} \times t' + \frac{V_a^2 - V_s^2}{2 \times 3.6^2 \times \alpha} \dots\dots\dots ②$$

식 ②에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l = \frac{55}{3.6} \times 2.5 + \frac{55^2 - 35^2}{25.92 \times 0.75} = 130.0m \text{ 이다.}$$

표지의 판독거리( $l'$ )가 50m일 때, 설치위치( $d=l-l'$ )는 곡선의 시작점에서 전방 80m( $d= 130-50$ )이다.

도로의 시인성이 좋을 때는 반응시간( $t'$ )를 크게 하고 감속도( $\alpha$ )를 작게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판독거리( $l'$ )는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설치거리( $d$ )가 100m를 넘을 때에는 표지판을 확대하여 판독거리( $l'$ )를 크게 하는 것이 좋다. 감속도( $\alpha$ )란 속도가 시간당 감소하는 크기를 말하며, 0.75m/sec<sup>2</sup>의 감속도인 경우 시속 55km의 속력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92.6m를 진행한 후에 시속 35km로 감속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진행거리는 감속도가 클수록 짧아지며, 작을수록 길어진다.

## 2. 우좌로이중굽은도로(113) 및 좌우로이중굽은도로(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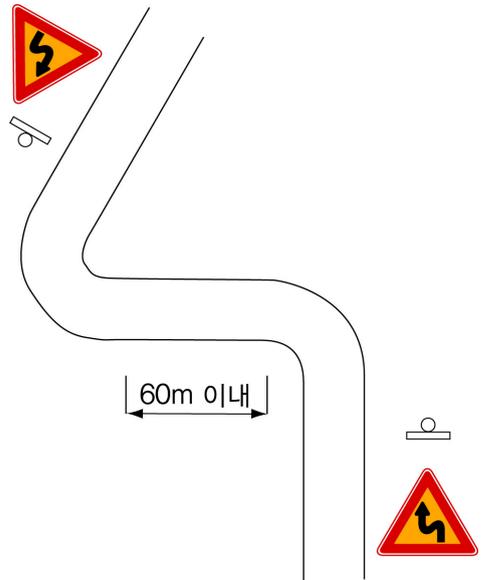
### 기 준

- 연속된 굽은 도로의 상호간 직선거리가 짧은 경우에 설치해야 한다.



**해설**

연속된 곡선구간이나 S자형으로 굽은 도로의 형상을 도로이용자에게 미리 알려 위험방지와 주의환기가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이중굽은도로의 표지설치는 굽은 도로표지와 동일하다. 단지 연속되는 곡선구간에서 두 도로 표지들 중 도로이용자에게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표지를 선택해야 한다. 연속되는 굽은 도로 또는 연속된 곡선구간이란 굽은 도로 사이에 60m미만의 짧은 직선도로를 포함하고 굽은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경우를 말한다. 또한, 설계속도별 상호간 직선거리가 굽은 도로와 이중 굽은 도로를 구분하는 한계치이며, 설계속도별 곡선반경의 한계치가 <표 3-3>보다 짧은 경우에 이중굽은 도로 주의표지를 설치한다. 설치 위치는 처음 굽은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전방 30~200m 범위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통 일반도로는 3-100m, 고속도로는 200m 이내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우좌로이중굽은도로(113), 좌우로이중굽은도로(114) 등 주의표지가 있다.



[그림 3-13] 이중굽은도로(114) 표지 설치 예시도

**권 장**

- 설계속도와 곡선반경에 따른 표지설치는 굽은 도로표지에 따른다.
- 3회 이상 연속하여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곡선구간에도 설치한다.



**해설** 이중굽은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도로형상, 주행속도, 사고빈도 등을 고려하여 공학적 판단에 따라 설치한다. 특히, 주행속도가 설계속도별 곡선반경 한계치 <표 3-3>과 비교하여 짧은 경우에 설치하며, 굽은 도로에서 3회 이상 연속하여 진행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곡선구간에도 설치한다. 최초의 굽은 방향에 따라 좌우 또는 우좌이중굽은도로 주의표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중굽은도로 주의표지와 안전속도(409)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하면 효과적이다.

### 3. 오르막경사(116) 및 내리막경사(117)

#### 기 준

- 오르막 또는 내리막 경사로 인해 도로이용자에게 주의환기를 필요로 하는 구간에 설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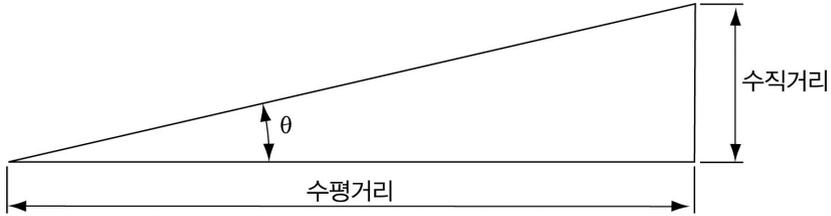
**해설** 급격한 경사로 인해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 도로이용자에게 위험을 예고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오르막 또는 내리막경사에 주의표지를 설치한다. 설계속도에 따른 경사도가 한계치가 다음 <표 3-4>보다 클 경우, 오르막 또는 내리막경사 주의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위치는 오르막 또는 내리막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30~200m 범위내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표 3-4〉 설계속도별 경사도 한계치

설계속도 (km/h)	120	100	80	60	50	40	30	20	20 미만
경 사 도 (%)	2	3	4	5	6	7	8	9	10



$$\ast \text{경사도}(\%) = \tan \theta \times 100 = \left( \frac{\text{수직거리}}{\text{수평거리}} \right) \times 100$$



### 권 장

- 구간 내에서 경사도가 변화하거나 구간이 긴 경우에는 주행속도와 설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중복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그림 3-14] 오르막경사(116) 및 내리막경사(117)

**해설** 경사구간에 표지를 설치할 경우 도로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인성이 좋지 않은 경우 공학적 판단에 따라 도로 좌측에 설치할 수 있다. 경사구간 내에서 경사도가 변하거나 경사구간이 길게 연속되어 있는 경우, 주행속도와 설치간격 등을 고려하여 중복 설치함으로써 도로이용자의 판단착오를 줄일 수 있다.



## 제 5 절 | 교통류변화 예고표지

교통류변화예고표지의 목적은 도로의 공사나 통제 또는 교통류 변화에 대해 도로이용자에게 미리 알려 주의환기와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데 있다. 교통류변화예고표지의 기능은 도로공사나 통제 또는 교통류 변화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이용자의 적절한 행동을 유도하고 지시하는 데 있다. 우선도로(106), 우합류도로(107), 좌합류도로(108), 2방향통행(115), 도로폭좁아짐(118), 우측차로없어짐(119), 좌측차로없어짐(120), 우측방통행(121), 양측방통행(122), 중앙분리대시작(123), 중앙분리대 끝남(124), 도로공사중(135) 표지 등이 있다.

### 기 준

- 교통량, 차량속도, 도로형상의 변화로 인해 위험하거나 주의가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 위험요소가 시작되는 지점의 전방 50~200m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 진행방향의 도로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교통류예고표지는 도로통제나 도로공사로 인해 교통량, 차량속도, 도로폭 등에 현저한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도로이용자의 진행방향과 통행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 사고방지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도로공사로 인해 긴 구간에 걸쳐 교통통제로 인한 지체 또는 정체가 예상되는 곳, 도로폐쇄나 특정한 방향으로 진입이 금지되는 곳 등에는 우회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우회할 수 있는 곳을 예고하여 도로이용자가 통행할 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주도로와 동일한 진행방향으로 합류하는 부도로가 있는 곳, 차로수나 차로폭이 감소하여 정체 또는 추돌사고가 예상되는 곳, 통행방향의 변화로 인해 통행방향 혼란과 역방향 주행, 차로 이탈 등 사고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위험요소가 있는 시작지점에서 해당도로의 전방 50~200m 범위내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권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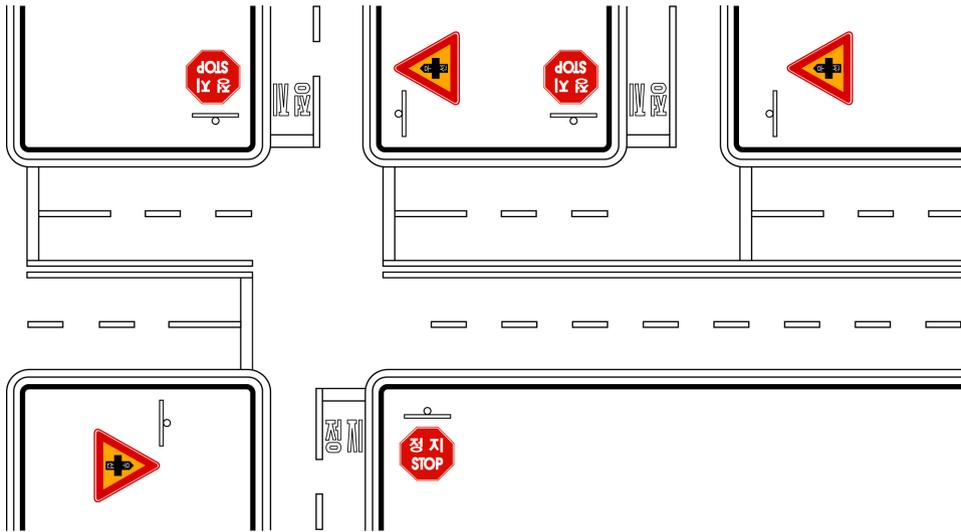
- 속도차이가 큰 경우에 안전속도(409) 등의 보조표지를 병설한다.
- 주행속도가 높은 곳에는 설치간격을 고려하여 중복되게 설치한다.

**해설** 해당되는 도로의 주행속도와 위험요소에 접근하는 속도가 크게 차이날 경우에는 교통류변화예고표지에 안전속도(409) 등의 보조표지를 병설하여 도로이용자가 위험요소에 도달하기 전에 안전한 속도로 감속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도로등급이 높거나 평균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서는 설치간격을 고려하여 중복되게 설치함으로써 위험요소에 도달하기 전에 위험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한다.

**1. 우선도로(106)**

**기 준**

-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에 설치한다.
- 주도로에는 우선도로 표지만을, 부도로는 일시정지(227) 규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그림 3-15] 우선도로(106) 표지 설치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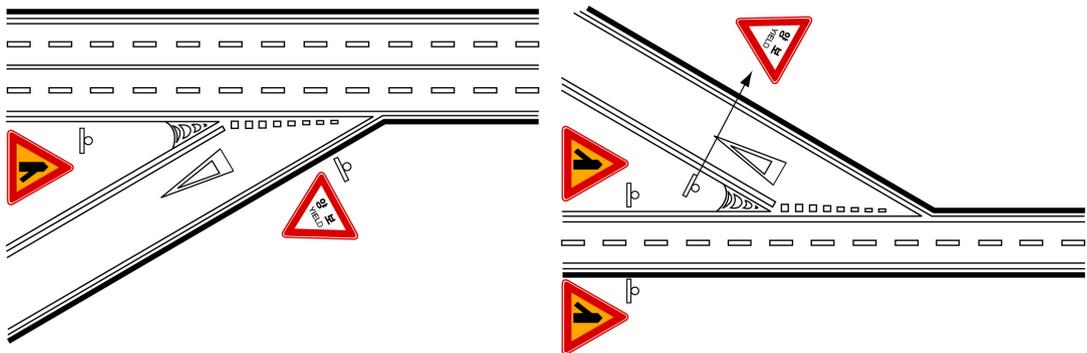
**해설** 우선도로 주의표지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없는 경우에 다른 차량보다 우선적으로 직진하여 통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선도로에는 일시정지, 양보 등의 교통통제시설이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우선도로 주의표지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의 주도로에만 설치할 수 있고, 부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주도로에는 일시정지(227), 서행(226) 또는 양보(228) 등의 규제표지나 노면표시를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부도로에는 일시정지(227) 규제표지와 일시정지(521)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주도로와 부도로의 교통량이 매우 적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부도로에 일시정지(227) 대신 양보(228) 규제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공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또한 우선도로에서 서행(226) 규제표지는 주도로와 부도로 모든 곳에 설치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설치위치는 교차로 전방 50~200m 범위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우합류도로(107) 또는 좌합류도로(108)

### 기 준

- 주도로에 우합류 또는 좌합류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 설치해야 한다.
- 교차로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우합류 또는 좌합류도로 주의표지는 주도로에만 설치하며, 합류 또는 유입하는 도로에는 양보(228) 규제표지와 양보(522) 노면표시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해설** 주도로에 접속하여 동일방향으로 합류되는 합류점 또는 유입되는 차로가 있음을 예고하고자 할 때에 설치한다. 우선도로나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와 같은 도로에는 절대로 설치해서는 안된다. 우합류 또는 좌합류 주의표지는 주도로에만 설치해야 하고, 합류 또는 유입하는 도로에는 양보(228) 규제표지와 양보(522) 노면표시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교통량이 많은 경우나 교통사고 잦은 지점에는 양보(228)가 아닌 일시정지(227) 규제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설치위치는 합류점으로부터 전방 50~200m 범위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3-16] 우합류도로(107) 및 좌합류도로(108) 표지 설치 예시도



### 3. 2방향통행(115)

#### 기 준

- 일방통행도로와 양방향통행도로가 이어지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해설** 일방향으로 통행하던 도로가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도로로 이어지는 지점에서 양방향으로 통행이 시작됨을 예고하기 위해 설치한다. 즉, 일방통행로가 양방향 통행도로와 이어지는 지점에서 양방향 통행도로임을 도로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양방향 통행도로의 시작점 또는 일방통행 끝점으로부터 전방 50~200m 범위 내에서 도로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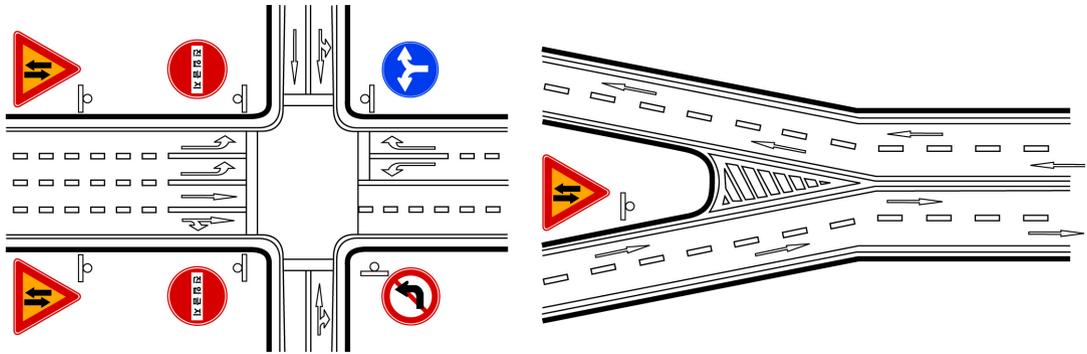
#### 권 장

- 대향차량이 없는 완전분리도로에서 대향차량의 도로와 인접하거나 만나는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 중앙분리대 또는 중앙분리시설 등으로 양방향이 분리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또는 중앙분리시설이 끝나는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단, 중앙분리대 시작 또는 끝남 주의표지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 한 한다.

**해설** 일방향 도로에서 반대 방향의 도로와 인접하여 나란히 주행하는 도로에서 대향차량과 통행방향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중앙선만 설치된 장소에 대향방향으로 잘못 진입하거나 대향차량이 잘못 진입 할 수 있음을 예고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또는 공사중인 도로에서 자주 나타나는 경우로서 중앙 분리시설이 끝나고 대향차량과 통행방향을 구



분하는 중앙선만 설치되어 도로이용자에게 주의환기가 요구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단, 중앙분리대 시작(123) 또는 끝남(124) 주의표지가 부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설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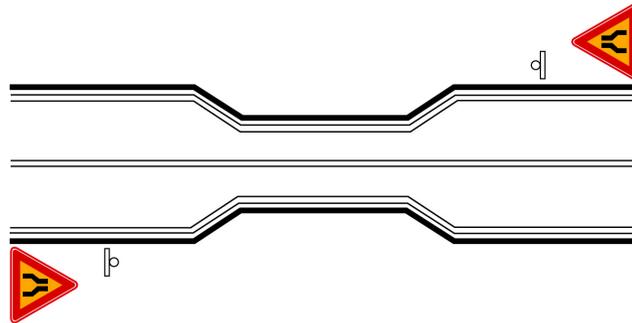
[그림 3-17] 2방향통행(115) 표지 설치 예시도

#### 4. 도로폭이좁아짐(118)

##### 기 준

-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나 3차로 이하의 도로에서 폭이 좁아질 경우에 설치해야 한다.

**해설** 차로폭 또는 양쪽 차로수가 감소함으로써 사고위험이 있거나 교통류 변화로 인해 교통사고 또는 소통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나 구간에 설치한다. 도로의 폭 또는 차로수가 감소되는 시작점으로부터 전방 50~200m 범위내 도로운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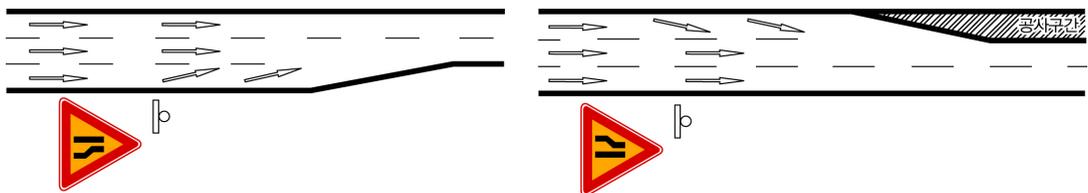
[그림 3-18] 도로폭이좁아짐(118) 표지 설치 예시도

## 5. 우측차로없어짐(119) 및 좌측차로없어짐(120)

### 기 준

-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우측 또는 좌측의 차로가 없어지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예설**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우측 또는 좌측의 차로수가 감소되어 사고위험 또는 소통장애나 정체 등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차로가 없어진 지점으로부터 전방 50~200m 범위 내로 하며,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서는 중복하여 설치한다. 이 경우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설치장소는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좌측차로수 감소로 인해 좌측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도로좌측에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림 3-19] 우측차로없어짐(119) 및 좌측차로없어짐(120) 표지 설치 예시도



## 6. 우측방통행(121)

### 기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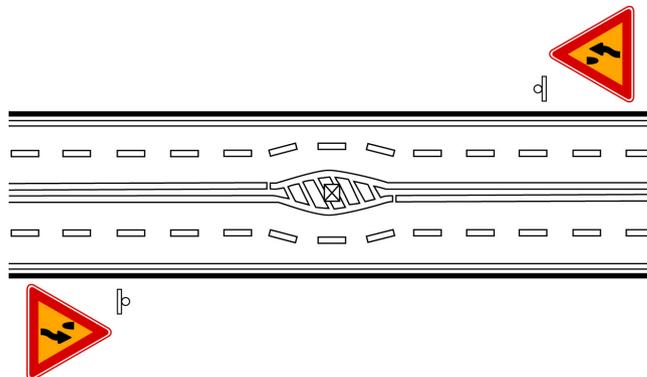
○ 도로 중앙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설치해야 한다.

**해설** 도로중앙에 장애물로 인해 차량이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주행속도를 고려하여 장애물이 있는 지점의 전방 50~200m 범위내, 도로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권 장

○ 중앙선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거나 노상장애물(509) 노면표시가 있어서 야간에도 안전거리보다 멀리서 볼 수 있을 때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중앙선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거나 노상장애물(509) 노면표시가 있음을 야간에도 충분한 거리에서 시인할 수 있을 때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충분한 거리 즉, 안전거리란 도로이용자가 급제동이나 급하게 진로 변경을 하지 않고도 위험구간을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제2장 제4절 3. 설치위치 참조).



[그림 3-20] 우측방통행(121) 표지 설치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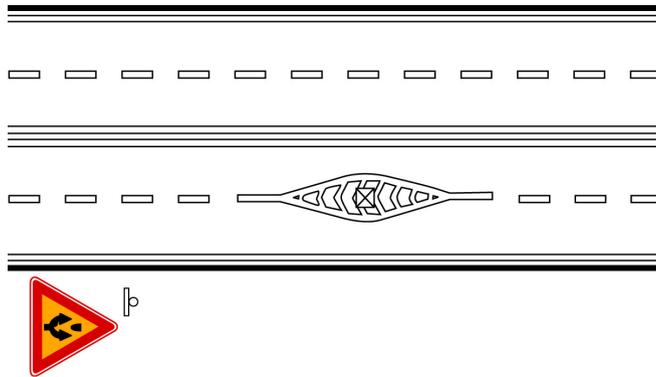


## 7. 양측방통행(122)

### 기 준

-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에서 동일방향의 차로 중간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설치해야 한다.

**예** **설**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동일방향의 차로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서 좌측 또는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곳에 설치한다. 주행속도를 고려하여 장애물이 있는 지점의 전방 50~200m 범위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3-21] 양측방통행(122) 표지 설치 예시도



## 8. 중앙분리대시작(123) 및 중앙분리대끝남(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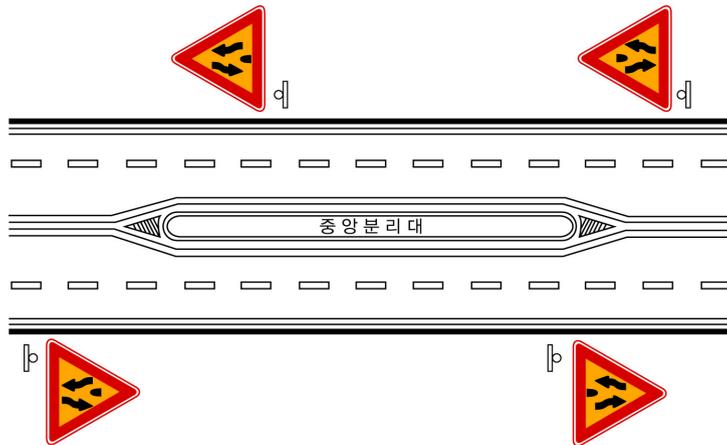
### 기 준

- 중앙분리대가 시작 또는 끝나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중앙분리대 또는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도로의 중앙에 중앙분리대 또는 분리시설, 장애물 등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것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설치한다. 중앙분리대가 시작 또는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전방 50~200m 범위내, 중앙 분리대 또는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권 장

- 도로구조상 중앙분리대 시설이 야간에도 안전거리보다 멀리서 볼 수 있을 때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3-22] 중앙분리대시작(123) 및 중앙분리대끝남(124) 표지 설치 예시도



**해설**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안전거리 밖에서 중앙분리대를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하고 사고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반드시 공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 9. 도로공사중(135)

### 기 준

- 도로상이나 도로연변에서 공사나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양측에 설치해야 한다.
- 도로공사중인 지점 또는 구간으로부터 전방 50~1,000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사지점 또는 구간으로부터 원거리(200~1,000m)에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보조표지를 병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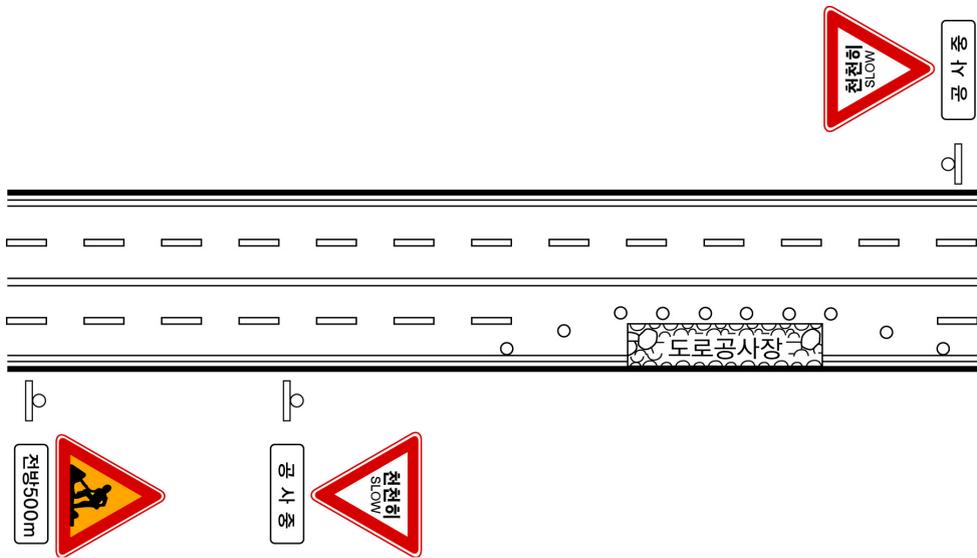
**해설** 도로공사중(135) 주의표지는 도로공사장 또는 구간의 전면과 도로 양측에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도로의 종류와 교통량, 공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보통 공사중인 지점 또는 구간으로부터 전방 50~1,000m 이내에 설치하며, 이때에는 주행속도를 고려하여 도로이용자가 충분히 안전속도로 감속할 수 있는 거리에 설치해야 한다. 표지를 원거리(200~1000m)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거리(402) 보조표지 및 안내표지 등을 설치한다. 그 내용으로 공사명, 위치(거리), 기간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설치간격을 고려하여 중복되게 설치해야 한다. 특히, 설치위치는 주야간의 시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권 장

- 도로공사중일 때에는 칸막이, 라바콘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해설** 도로가 공사중이거나 작업중일 때에는 공사구역과 차량 통행도로를 구분하고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칸막이, 라바콘 등 안전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공사지점이나 구간에 설치되는 모든 안전시설물은 야간에도 원거리에서 시인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설치해야 한다.



[그림 3-23] 도로공사중(135) 표지 설치 예시도



## 제 6 절 | 시설 예고표지

시설 예고표지의 목적은 철길건널목, 신호기, 터널 등 시설과 특별한 도로나 장소에 설치된 시설을 예고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있다. 그 기능으로 철길건널목, 신호기, 터널 등에 설치되는 예고표지는 사고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예고기능을 하며, 횡단보도, 통학로, 자전거 도로 등에 설치되는 예고표지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 등의 도로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고기능을 한다. 철길건널목(110), 신호기(125), 터널(138), 횡단보도(132), 어린이보호(133), 자전거(134) 표지 등이 있다.

### 기 준

-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등의 시설로 인해 사고위험이 있거나 주의환기가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 시설의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50~200m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단,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예고표지는 50~120m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 차량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설** 철길건널목, 신호기 또는 터널이 있으나 시인이 곤란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에 철길건널목(110), 신호기(125), 터널(138) 등의 주의표지를 설치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자전거 통행인 그리고 학교·유치원 등의 통학로에서 도로이용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횡단보도(132), 어린이보호(133), 자전거(134) 등의 주의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위치는 50~200m 범위 내에 설치하지만 철길건널목과 횡단보도의 경우 50~120m 범위 내에 설치한다. 설치장소는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철길건널목(110)

### 기 준

- 철길건널목이 있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철길건널목 전방 50~120m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 차량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해야 한다.

### 해설

모든 철길건널목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철길건널목이 있으나 시인이 곤란하여 도로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또한 주행속도가 높은 구간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중복하여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의 통과)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때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신호기가 있는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통과할 수도 있지만 신호기가 없는 경우에 모든 차량은 철길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호기가 없는 곳에서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철길건널목에는 일시정지(227) 규제표지와 일시정지(521) 노면표시가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 단, 비포장인 도로에서는 노면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여기서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란 도로교통법에 의해 설치되고 유지 또는 관리되는 곳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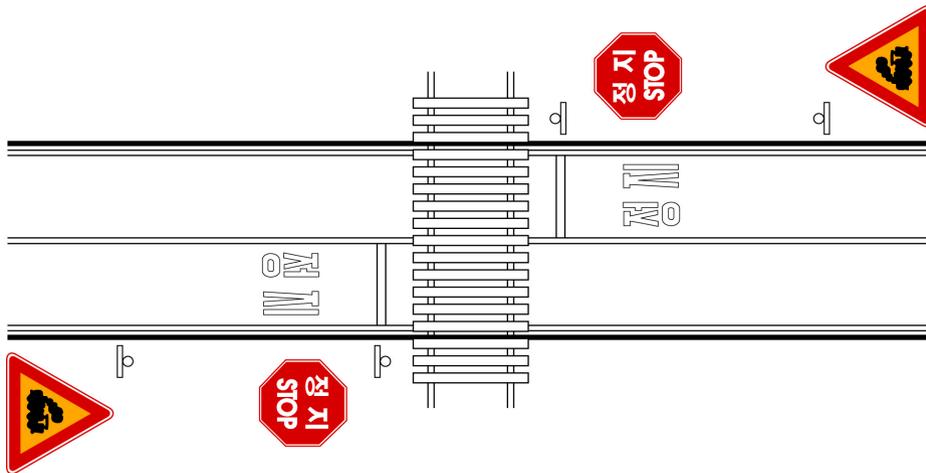
### 권 장

- 차량의 접근속도, 볼 수 있는 거리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한다.



- 주행속도가 높은 구간에는 중복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해설** 신호기가 없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하는 모든 차량은 철길건널목의 일시정지(227) 표지나 일시정지(521)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철길건널목에서는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신호기가 있더라도 건널목 안내원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호기가 없는 곳에서 철길건널목에 접근하는 차량이 건널목 정지선에서 정지할 수 있는 적정위치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는 중복하여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거리(402)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도심지역 시가지 도로에서 잘 정비된 시설과 건널목 안내원이 상주하는 등 안전성이 확보된 곳에서는 표지를 철길건널목과 근접하게 설치할 수 있다. 포장된 도로에서는 정지선(521) 노면표시를 함께 설치하지만 비포장 도로에는 일시정지(227) 규제표지만 설치한다. 철길건널목과 교차하는 도로가 3차로 이상 넓은 도로인 경우에는 표지의 시인성을 위해 측주식으로 설치한다.



[그림 3-24] 철길건널목(110) 표지 설치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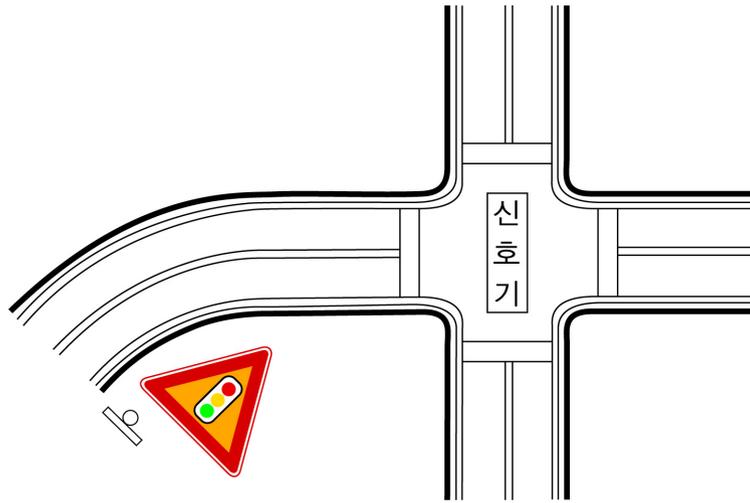
## 2. 신호기(125)

### 기 준

- 시야장애로 신호기의 위치를 사전에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해야 한다.
- 신호기가 있는 지점의 전방 50~200m 범위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해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에 의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과 교통순시원,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차량은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신호기가 필요하고 적법하게 설치되었을지라도 볼 수 있는 거리가 짧거나 시야장애로 인해 신호기를 볼 수 없는 장소 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자 할 경우, 정지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는 신호기 예고표지를 설치하여 신호기를 사전에 예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전방에 장애물 있는 곳, 도로가 급격하게 굽거나 경사져 볼 수 있는 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곳에 설치한다. 도로형태와 사고빈도에 따라 설치할 수도 있으나, 이때에는 공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설치위치는 신호기 위치와 정지거리 그리고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신호기가 설치된 지점의 전방 50~200m 범위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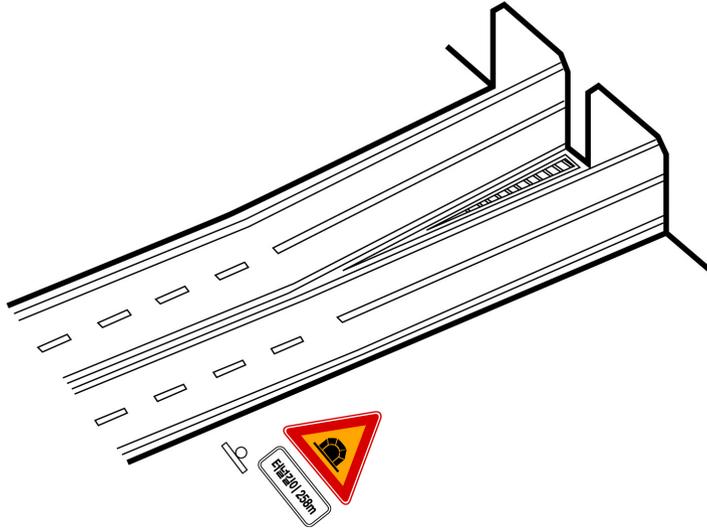
[그림 3-25] 신호기(125) 표지 설치 예시도

### 3. 터널(138)

#### 기 준

- 터널이 있으나 진입도로의 구간이 굽어 시인이 곤란한 경우에 설치해야 한다.

**해설** 터널 주의표지는 터널이 있으나 터널에 진입하는 도로의 구간이 심하게 굽거나 주변에 장애물이 있어 시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설치한다. 즉, 터널을 시인하기가 곤란한 경우로는 상하로 급하게 경사가 진 곳, 좌우로 심하게 굽은 곳, 도로변에 수목이 우거진 곳 등이다. 터널 주의표지는 터널의 위치, 길이, 폭, 높이, 안전속도(409) 등 보조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터널 입구로부터 전방 50~200m 범위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3-26] 터널(138) 표지 설치 예시도

#### 4. 횡단보도(132)

##### 기 준

-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치해야 한다.
  - 포장도로의 교차로에 신호기가 없을 때
  - 포장도로의 단일로에 신호기가 없을 때
  - 비포장도로의 교차로 또는 단일로(단, 신호기 설치여부와 무관함)

**해설** 횡단보도 주의표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보행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하며, 횡단보도가 있음을 차량운전자에게 사전에 사고위험과 주의환기를 시키고자 설치한다. 횡단보도 주의표지의 설치장소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포장도로이고 교차로 또는 단일로에 신호기가 없을 경우, 비포장도로에서 신호기 설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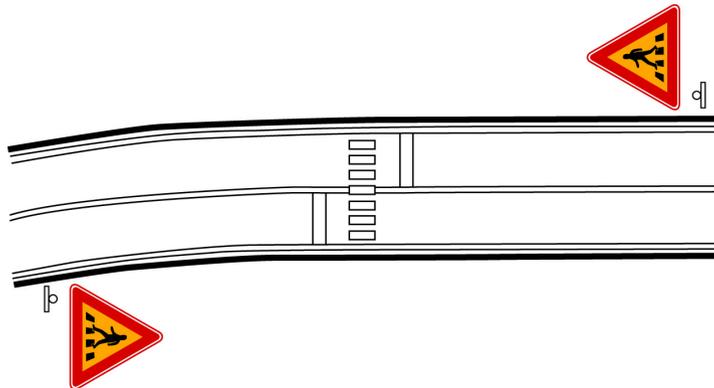


부와 관계없이 모든 교차로와 단일로의 횡단보도 전방에 설치해야 한다. 설치위치는 횡단보도 전방 50~120m 범위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장소는 정지선에서 정지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에 설치해야 하며 특히, 도로형태와 주행속도 등을 고려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 권 장

- 횡단보도가 있으나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포장도로에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한다.

**예** **설** 횡단보도가 있으나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횡단보도 주의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횡단보도 주의표지는 횡단보도예고(529)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해야 하지만, 노면표시를 설치함으로써 횡단보도 예고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주의표지는 생략할 수 있다. 기타 횡단보도 주의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노면표시는 속도제한(517), 서행(519) 등이 있다.



[그림 3-27] 횡단보도(132) 표지 설치 예시도



## 5. 어린이보호(133)

### 기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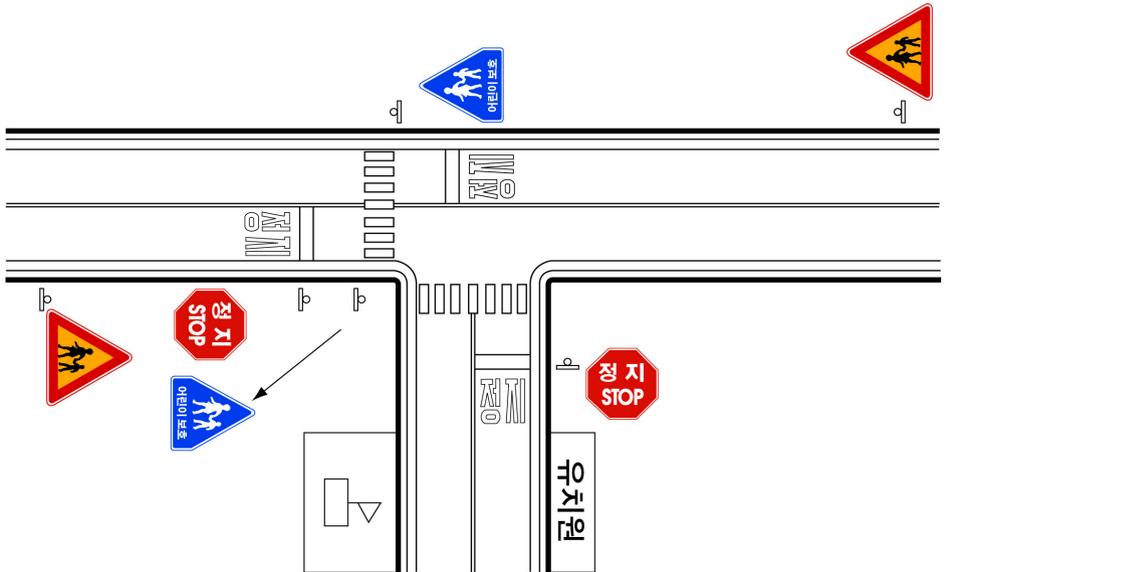
-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가 특별히 요청되는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 설치해야 한다.
- 어린이 보호지점 또는 구역의 전방 50~200m 범위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학교 및 통행로에 있어서는 학교의 주출입구로부터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에 설치해야 한다.

### 해설

학교나 유치원 등이 있는 통행로나 어린이 놀이터 부근, 그리고 어린이 통행 또는 횡단이 잦은 지점 등에서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어린이 보호지점 또는 구역의 시작점으로부터 전방 50~200m 범위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 부근의 등·하교 통행로나 통행로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어린이나 유치원생이 빈번히 통행하는 장소에는 학교 주출입구로부터 반경 300m의 구역 내에 설치한다.

### 권 장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일자(404), 시간(405) 등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 보호일자와 시간에 따라 적합한 지주형태를 선택하여 설치한다.



[그림 3-28] 어린이보호(133) 표지 설치 예시도

**해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보호일자와 시간 등 보조표지를 함께 병설함으로써 도로이용자의 사고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보호할 대상의 주된 통행시간에 대해서 알림으로써 보호를 위해 지정된 일자 및 시간대에 차량운전자의 주의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어린이 보호를 지정한 일자와 시간 등을 고려하여 내민식(촉주식) 또는 이동식 등 적합한 지주형태를 선택하여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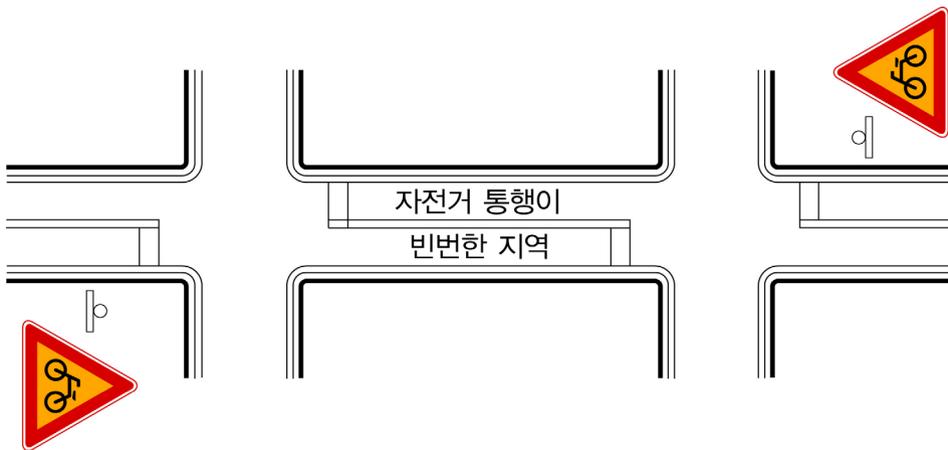


## 6. 자전거(134)

### 기 준

-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장소나 구간에서 자전거 통행인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해야 한다.
-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알릴 필요가 있는 시작점이나 중간에 설치해야 한다.

**해설**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장소나 구간,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등에서 자전거 사고위험이 있는 곳 또는 자전거 통행인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장소나 구간 또는 자전거전용도로 등에서 자전거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전방 50~200m 범위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전거 통행로 구간 내에 교차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다음의 자전거 도로 시작지점에 중복하여 설치한다.



[그림 3-29] 자전거(134) 표지 설치 예시도



## 제 7 절 | 노면상황 예고표지

**해설** 노면상황 예고표지는 도로의 노면상태로 인해 도로이용자나 주변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예고나 주의환기가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기능으로는 미끄럽거나 고르지 못한 노면상태를 미리 예고하거나 노면의 고인 물에 의해 주변 도로이용자의 사고위험방지나 피해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미끄러운도로(126), 노면고르지못함(128), 과속방지턱(129) 표지가 있다.

### 기 준

- 설치위치는 위험요소가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30~200m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노면상황 예고표지는 속도를 내기 쉬운 도로에서 도로의 노면이 미끄럽거나 고르지 못한 장소 또는 과속사고 위험이 있는 곳의 주변 도로이용자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소나 구간에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위험요소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전방 30~200m 범위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노면상황 예고표지는 노면상태를 개선하거나 보수를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할 수 있으며, 위험요소가 개선되거나 제거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표지를 제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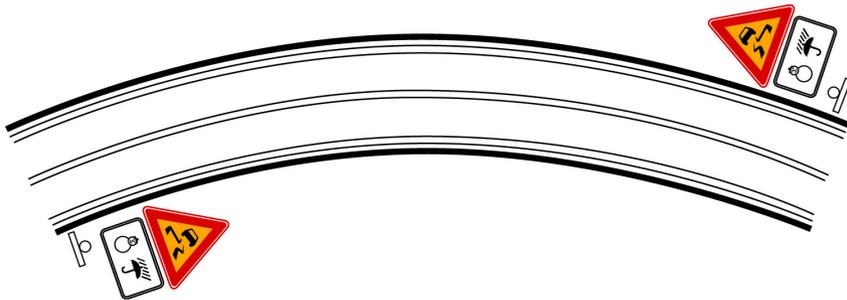


# 1. 미끄러운도로(126)

## 기 준

- 속도를 내기 쉬운 도로에서 미끄러지기 쉬운 구간에 설치해야 한다.
- 조향 및 제동조작이 빈번한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기상조건으로 인해 미끄러지기 쉬운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해설** 주행속도가 높거나 속도를 내기 쉬운 도로에서 미끄러운 장소에 설치한다. 또한 노면이 미끄럽거나 차량의 제동거리가 긴 곳, 조향 및 제동조작이 빈번한 지점, 그리고 눈이나 비, 서리 등 기상상태로 인해 노면결빙, 수막 등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 해당 위험요소를 사전에 도로이용자에게 알림으로써 감속을 유도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킬 장소에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위험요소가 있는 지점의 시작점으로부터 전방 50~200m 범위내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와 같이 주행속도가 매우 높거나 안개 등 기상조건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구간은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곳에서는 설치위치를 위험요소 시작점으로부터 전방 1,000m부터 중복되게 설치하여 도로이용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의 전방에 설치해야 한다.



[그림 3-30] 미끄러운도로(126) 표지 설치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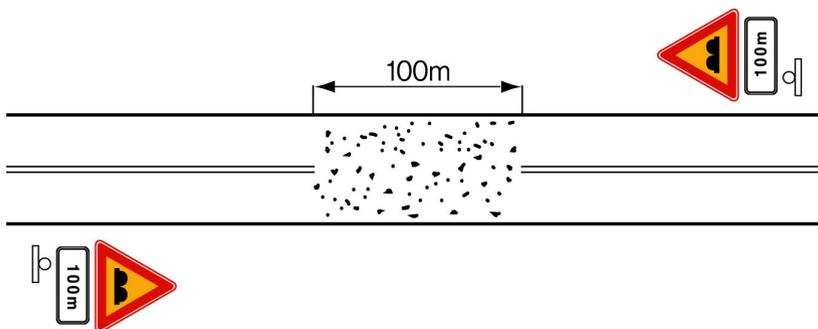


## 2. 노면고르지못함(128)

### 기 준

- 도로의 파손 또는 함몰 등으로 인해 노면이 고르지 못한 지점이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자갈 또는 모래 등의 비포장도로에 거리 보조표지와 함께 설치해야 한다.

**해설** 포장되지 않았거나 정비되지 않은 도로 또는 포장되었으나 파손 또는 함몰 등으로 인해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한 지점이나 장소에 설치한다. 포장된 도로에서 일정한 구간이 비포장된 경우는 비포장된 거리를 표시하는 보조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설치기간은 비교적 단기간 동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도로관리자에게 노면을 정비토록 하게 한다. 설치위치는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운전상 주의가 필요한 시작지점으로부터 전방 50~200m 범위내,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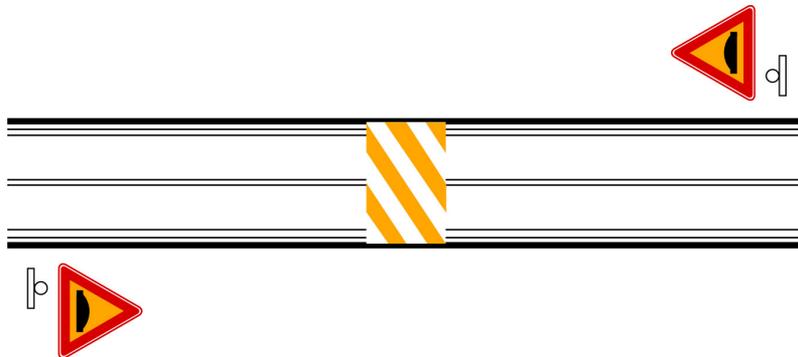
[그림 3-31] 노면고르지못함(128) 표지 설치 예시도

### 3. 과속방지턱(129)

#### 기 준

○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지점의 전방 30~200m에 설치해야 한다.

**해설** 과속방지턱은 일반적으로 과속지점, 사고가 많은 곳, 학교앞과 같이 특별히 보호해야 할 보행자가 빈번히 횡단 또는 통행하는 곳에 설치된다. 이런 경우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도로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 주행속도를 적정하게 낮추거나 안전속도 이하로 감속하도록 할 장소의 전방에 설치해야 한다. 도로의 주행속도와 감속을 유도하는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날 경우에 과속방지턱 주의표지와 안전속도(409)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하여 도로이용자가 충분히 감속하여 과속방지턱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치위치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시작지점으로부터 전방 30~200m 범위내 도로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도로주변의 토지이용도와 주행속도, 과속방지턱의 규모 등을 고려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그림 3-32] 과속방지턱(129) 표지 설치 예시도



## 제 8 절 | 연도위험 예고표지

연도위험 예고표지는 도로변이나 도로주변의 위험요소를 도로이용자에게 미리 알려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설치한다. 그 기능은 도로변이 강변, 해변, 호수인 경우에 추락사고가, 절개지 및 절토지 또는 성토지 등에서는 토사 또는 바위 등이 떨어지는 낙석사고가 발생할 우려있는 장소나 구간에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강변도로(127), 낙석도로(130) 등의 주의표지가 있다.

### 기 준

- 도로가 강변, 해변, 호수, 그리고 산지 등을 통과할 때 추락 또는 낙석으로 인한 사고위험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 설치위치는 위험요소가 있는 지점으로부터 30~200m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 차량진행방향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도로 주변이 강변, 해변, 호수인 지점이나 구간에서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 노면 침수로 인해 미끄러운 곳, 바다 물에 의한 토양부식으로 지반이 연약한 곳 등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산을 절개 또는 절토한 경우에 토사나 바위가 떨어져 낙석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요소에 대해 도로이용자에게 미리 알려 주의환기와 감속하여 추락 또는 낙석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설치위치는 위험요소가 있는 지점이나 구간의 시작점으로부터 30~200m 범위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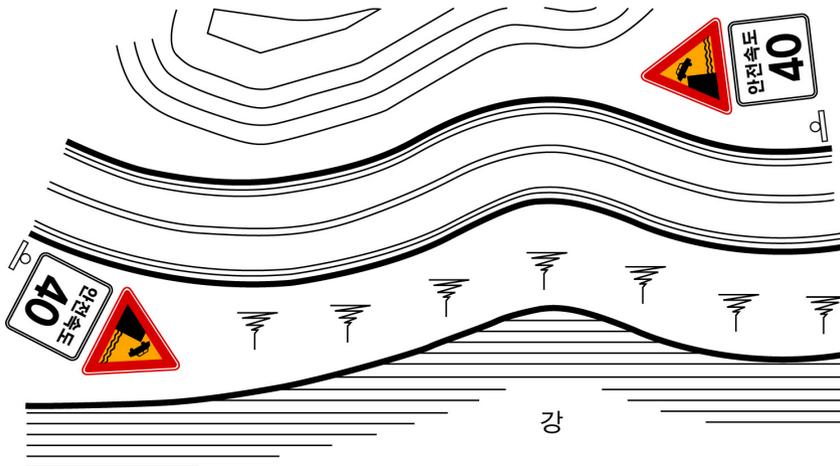


## 1. 강변도로(127)

### 기 준

- 도로의 한 변이 강변, 해변인 지점에서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 설치해야 한다.

**예** **설** 강변, 해변, 호수가 인접한 도로변에서 연약지반, 노면 결빙, 수막현상 등으로 인해 미끄러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의환기와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추락 또는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가 있는 시작점으로부터 전방 30~200m 범위내, 도로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3-33] 강변도로(127) 표지 설치 예시도



## 2. 낙석도로(130)

### 기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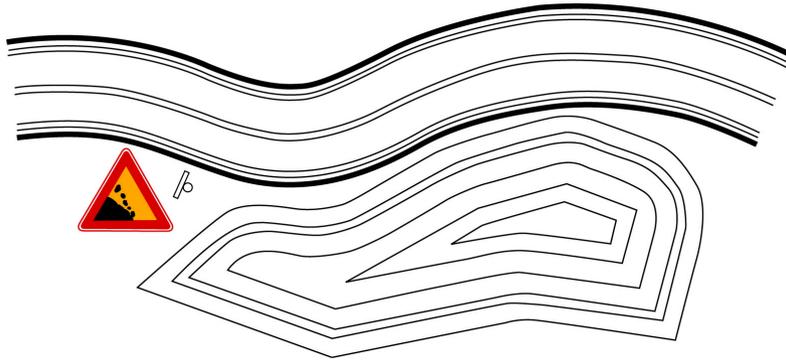
- 산이나 구릉을 절개 또는 절토한 지점 등에서 낙석 및 토사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해설** 절개 또는 절토한 산이나 구릉에 인접한 도로에서 낙석 또는 토사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도로이용자에게 주의환기를 통해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낙석 또는 토사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지점의 전방 30~200m 범위내 도로 양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권 장

- 도로폭이 좁고 낙석 또는 토사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도로 양측에 설치한다.
- 단기간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도로관리자로 하여금 낙석 또는 토사 방지 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등 해당 지점을 정비토록 한다. 단, 낙석 또는 토사가 떨어질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표지를 즉시 제거한다.

**해설** 도로폭이 좁고 차로수가 적은 도로에서 낙석 또는 토사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 양측에 낙석도로 주의표지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낙석 및 토사지역은 도로구조나 주변을 정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설치기간은 도로주변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만 설치하며 도로관리자에게 위험요소를 빠른 시일 안에 정비토록 요청한다. 위험 요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표지를 즉시 제거해야 한다.



[그림 3-34] 낙석도로(130) 표지 설치 예시도

## 제 9 절 | 기상상황 예고표지

기상상황 예고표지는 횡풍, 안개 등 기상상황으로 인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 장소에서 도로이용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설치한다. 기능은 기상상황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있다. 횡풍(137) 주의표지가 있다.

### 기 준

- 설치위치는 50~200m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 차량진행방향의 도로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기상상황으로 인한 위험요소가 존재하여 이를 도로이용자에게 알려 적절한 예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경우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50~200m 범위 내에 도로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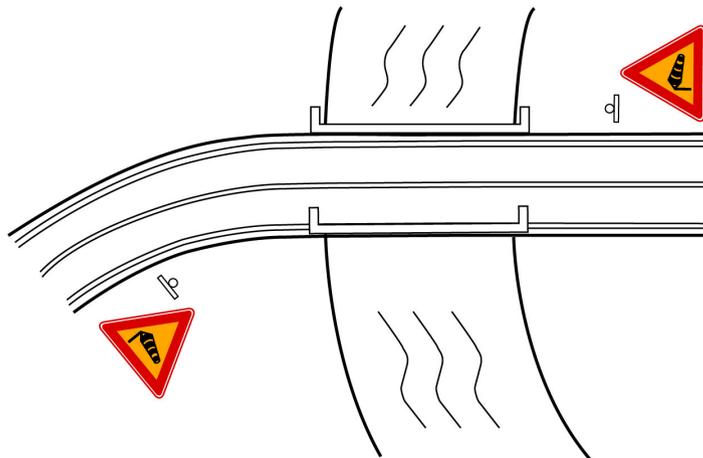


## 1. 횡풍(137)

### 기 준

- 횡풍이 불어 사고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해설** 횡풍 예고표지는 강한 횡풍(옆바람)으로 인해 차량이 도로이탈사고 또는 충돌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장소에서 도로이용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설치한다. 그 기능은 강변, 해변, 호수 또는 절벽 등에서 횡풍이 심하게 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거나 위험에 대한 필요한 예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있다. 강한 횡풍의 우려가 있는 지점의 시작점으로부터 전방 50~200m 범위내 도로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3-35] 횡풍(137)표지 설치 예시도



## 제10절 | 기타주의 예고표지

기타주의 예고표지는 특정지역에서만 발생하거나 기타 주의사항, 그리고 주의 예고표지에 없으나 주의해야 할 사항을 도로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목적으로 설치한다. 기능은 특정지역에서만 발생할 위험요소 또는 주의사항에 대해 미리 알려 필요한 예비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비행기(136), 야생동물보호(139), 위험(140) 등의 주의표지가 있다.

### 기 준

- 위험요소에 대한 해당 주의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 주의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 설치위치는 50~200m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단, 야생동물보호는 100~1,000m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 차량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설** 기타주의 예고표지는 특정한 위험 또는 해당 주의표지가 없고 위험 또는 잠재적 위험이 존재할 경우 도로이용자에게 이를 미리 알릴 필요가 있는 장소나 구간에 설치한다. 그러나 해당 주의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140) 주의표지를 사용하거나 위험(140) 주의표지와 보조표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즉, 위험요소에 해당하는 주의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하는 주의표지를 사용해야 하며 위험 주의표지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설치위치는 50~200m 범위 내에 도로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야생동물보호(139) 주의표지 등은 공학적 판단에 따라 100~1,000m 범위 내에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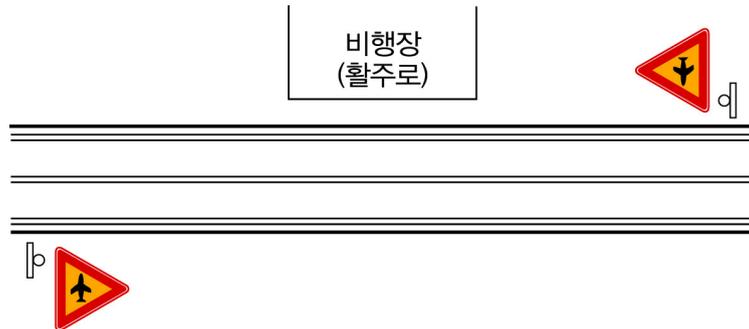


## 1. 비행기(136)

### 기 준

- 비행장의 비행기 이착륙 방향에 근접한 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 비행기가 비상으로 이착륙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예** **설** 비행장의 비행기 이착륙 방향에 근접한 도로에 설치한다. 또한 비행기가 비상으로 이착륙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나 장소에도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지점으로부터 전방 50~200m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3-36] 비행기(136) 표지 설치 예시도

## 2. 야생동물보호(139)

### 기 준

- 야생동물의 보호지역 또는 구간 내에 설치해야 한다.
- 보호지역 또는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전방 100~1,000m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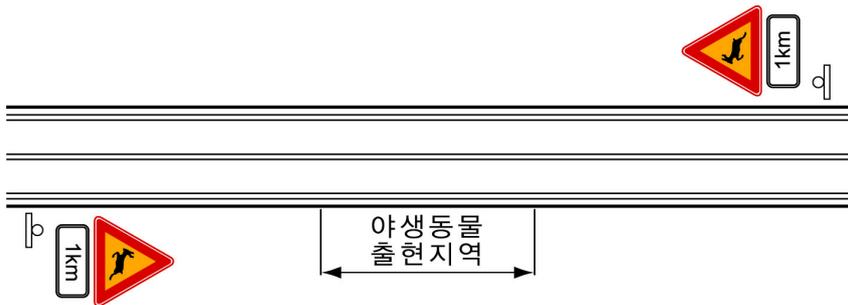


### 권 장

- 야생동물의 출현이 빈번한 장소나 구간에 대한 위치, 야생동물명, 거리, 구간, 시간 등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해설** 야생동물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나 구간 또는 야생동물의 출현이 빈번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전방 100~1,000m 범위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야생동물이 자주 출현하는 지역에서 동물보호 주의표지가 원거리에서 설치하거나 넓은 구간에 적용될 경우, 도로이용자가 장시간 주의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오히려 주의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의 출현이 빈번한 장소나 구간에 대한 위치, 야생동물명, 거리, 구간, 시간 등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함으로써 해당 구간에서만 도로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3-37] 야생동물보호(139) 표지 설치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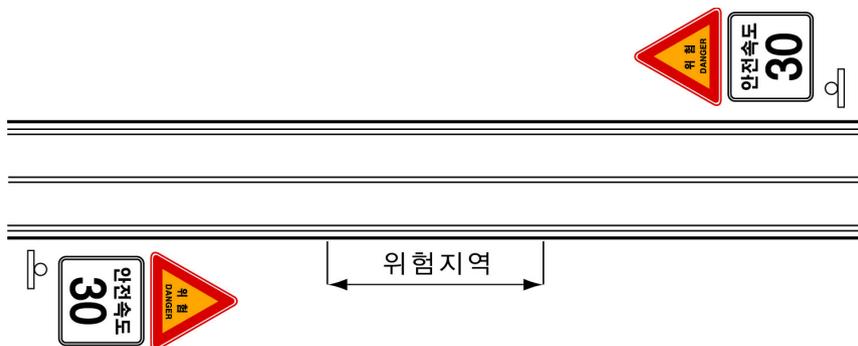


### 3. 위험(140)

#### 기 준

- 위해요소에 해당하는 주의표지가 없는 경우에 설치해야 한다.
- 해당 위해요소 보조표지와 함께 설치해야 한다.

**예** **설** 위해요소에 적합한 주의표지가 없는 경우 위험 또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위험 주의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위험 주의표지만을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도로이용자의 판단반응시간 등이 길어져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가 있다. 따라서 막연한 위험 주의표지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위해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조표지에 명시하여 함께 설치해야 한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운전자가 취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시함으로써 도로이용자의 판단반응시간을 줄일 수 있는 보조표지를 설치하는 것이다. 즉, 안전속도(409) 등과 같은 보조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설치형태는 위해요소와 도로여건에 따라 정주식, 측주식 또는 이동식 등 지주를 선택하여 설치하며, 설치위치는 위해요소가 있는 장소 또는 지역으로부터 전방 50~200m 범위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3-38] 위험(140) 표지 설치 예시도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제4장** >>> **규제포지**

**제1절** 개요

**제2절** 통행금지

**제3절** 통행제한

**제4절** 금지사항



## 제 4 장

## 규제표지



## 제 1 절 | 개 요

규제표지의 목적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위하여 도로이용과 관련한 제한, 금지 등의 사항을 해당 지점 또는 구간에 설치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알릴 목적으로 설치한다. 규제표지의 기능은 해당 지점 또는 구간에서 교통규제 및 통제를 통해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도로에서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규제사항을 도로이용자에게 알리고 규제표지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이용자, 즉 차량이용자나 보행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규제사항과 표지설치 장소는 반드시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장소와 지점에 금지나 제한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기 준

- 통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장소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최소한의 규제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 규제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규제사실을 공고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 규제표지의 기호, 모양, 색상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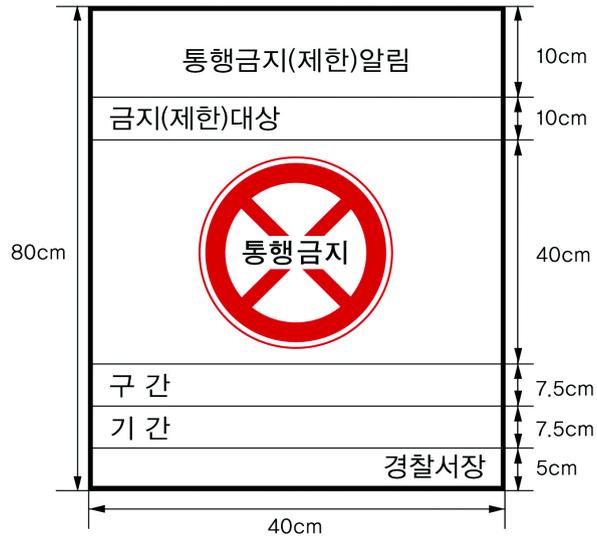


**해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의거 지방경찰청장 또는 서장은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확보를 위해 규제가 필요한 장소와 지점에서 차마와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할 경우에도 교통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곳에 최소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하면 “금지 또는 제한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통행금지 및 제한을 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에 의해 알려야 하며, 그 양식 및 규격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8에 명시되어 있다. 즉,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림 4-1]과 같은 양식으로 알림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알림판에 사용될 규제표지는 도로종별에 따른 속도규제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어야 하며, 알림판도 역시 규제표지와 동일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되어야 한다. 확대 및 축소비율은 표지의 확대 및 축소율에 따른다(제7장 제1절 3. 크기 <표 7-3> 참조).

단, 알림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 알림판은 상당하고 충분한 기간 동안 고시되어야 하며, 충분히 알려진 경우 또는 알림판으로 인한 소통장애가 있는 곳은 일정기간 고시 후에 알림판을 제거할 수 있다. 모든 규제표지는 반드시 정해진 규격과 형식에 의해 제작 또는 설치되어야 하며, 규제의 명칭과 정의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정해진 규격 및 형식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야 한다.



(주) 도로의 폭 및 교통여건에 따라 표시판의 크기를 2~4배의 크기로 확대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림 4-1] 통행금지 또는 제한알림판

## 제 2 절 | 통행금지

### 기 준

- 차마 또는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통행금지를 하고자 하는 대상과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규제표지만 설치해야 한다.
-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통행금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행금지 내용을 충분한 기간동안 고시해야 한다.
- 통행을 금지하는 구간 또는 장소의 도로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해야 한다.
- 통행금지의 대상이 금지구역에 도달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도로입구에 설치한다.



〈표 4-1〉 통행금지의 종류와 규제내용

표지번호	표지종류	표지판		내용
201	통행금지			사람과 차량 통행금지
202	자동차 통행금지			자동차만 통행금지
203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화물차 통행금지
204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205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206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207	경운기·트랙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			경운기·트랙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
210	자전거 통행금지			자전거만 통행금지
231	위험물 적재차량 통행금지			위험물을 실은 차량만 통행금지



〈표 4-2〉 2개 차종 통행금지(206)의 사용방법

표지번호	표지종류	금지차종	표지판	내용
없음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1. 승합자동차 2.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없음	이륜차 통행금지	1.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해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의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해 통행을 금지 및 제한할 수 있다. 통행금지의 종류는 <표 4-1>과 같이 통행금지, 자동차 통행금지, 화물자동차통행금지,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경운기 및 트랙터 통행금지, 손수레 통행금지, 자전거 통행금지, 위험물 적재차량 통행금지 등이 있으며, 통행을 금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하는 구간과 장소에 적합한 통행금지 규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즉, 2개의 통행을 금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의 통행금지 표지를 사용하기보다는 2개의 대상이 함께 있는 규제표지를 사용해야 한다(<표 4-2> 참조). 통행금지 표지의 설치위치는 통행이 금지된 장소나 구역의 시작지점에서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단, 도로의 중앙에 규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별히 허용된 공사차량 등이 출입 및 통행하는데 장애가 없을 때
- 이동식 지주형태의 표지를 사용할 때
- 중앙분리대, 교통섬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

통행금지구역에 통행금지 대상차량이 진입하기 전에 우회가 가능한 도로입구에도 통행금지에 대한 규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통행금지(201)

### 기 준

- 보행자 및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통행금지의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통행금지표지는 차마와 보행자 등 모든 도로이용자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구간 또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통행을 금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즉, 일정한 기간동안만 통행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규제표지에 거리(401, 402, 417), 기간(404, 405)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그러나 광범위한 지역이나 장기간 동안 통행을 금지하고자 할 경우는 법 시행규칙 제22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고시)에 의거하여 고시를 해야 한다. 설치위치는 통행을 금지하는 구간 또는 장소의 시작지점에 설치하며,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통행금지구간이 길고, 진입 후 우회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통행금지구간 전방에서 우회도로 안내와 함께 통행금지 규제표지와 거리 및 기간의 보조표지를 설치하여 차량이 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권 장

- 통행금지가 규제되는 도로 전방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입구에 통행금지 규제표지와 거리 및 기간, 금지이유 등을 고시한다.



- 통행금지 지역에 차량이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해설** 통행금지 도로가 시작되기 전방 도로에서 우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회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의 입구에 통행금지 규제표지와 거리(401, 402, 417) 및 기간(404, 405), 금지이유 등을 고시하여 도로이용자가 도로이용에 참고하도록 한다. 통행이 금지된 도로로 차량이 진입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진입을 막기 위한 바리케이트 등과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이 진입 또는 통행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그림 4-2] 통행금지(201) 표지 설치 예

## 2. 차종제한 통행금지

화물자동차 통행금지(203), 승합자동차 통행금지(204),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205),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206), 경운기·트랙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207), 자전거 통행금지(210), 위험물 적재차량 통행금지(231)

**기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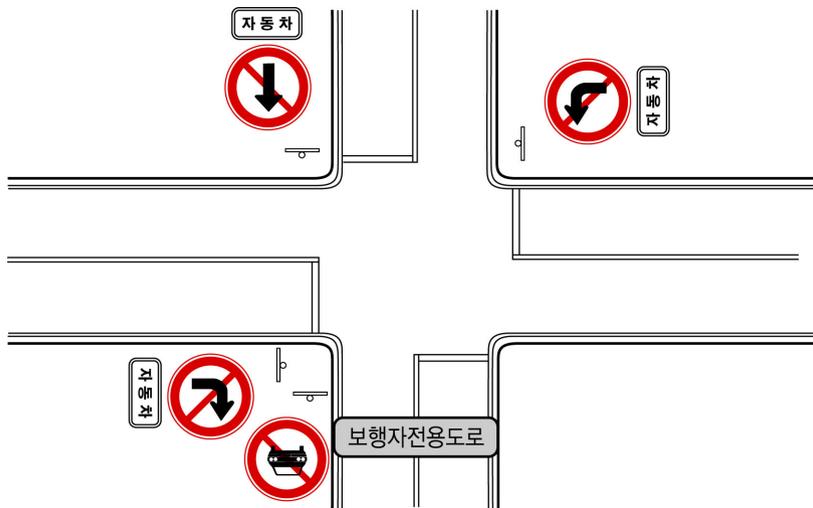
- 제한 차종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한 차종의 통행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기간, 구역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해설** 차종제한 통행금지지는 특정 차종의 통행으로 인해 사고위험 또는 소통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차종의 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구간에 설치해야 한다. 설치장소는 통행금지가 시작되는 도로의 구간, 지역 또는 장소의 전면,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을 금지하고자 하는 방향, 주행속도와 제한 차종이 통행하는 차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통행금지 규제표지에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하여 도로이용자가 도로를 이용할 때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도로구조 또는 교차로로 인해 통행금지를 하고자 하는 도로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방향(420, 421, 422) 보조표지를 설치하여 통행금지를 하고자 하는 도로와 방향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특히 위험물 운반차량은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위험물 운반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에서는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231)표지를 설치한다. 위험물 운반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위험물 운반차량을 말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 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의한 고압가스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 원자력법 제2조 제5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물질
- 산업안전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 농약관리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및 별표2 제1호에 따른 유독성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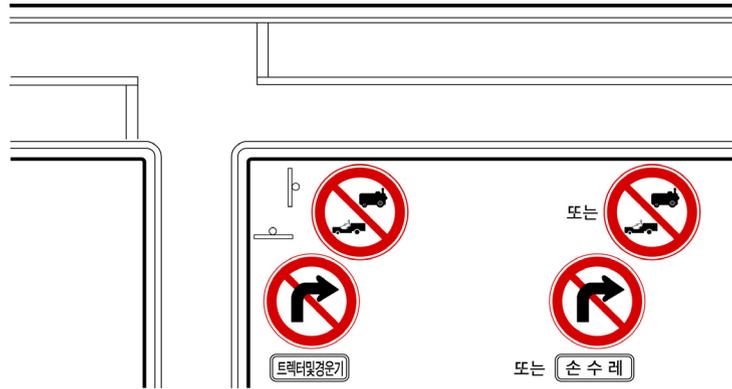
[그림 4-3] 자동차 통행금지(202) 표지 설치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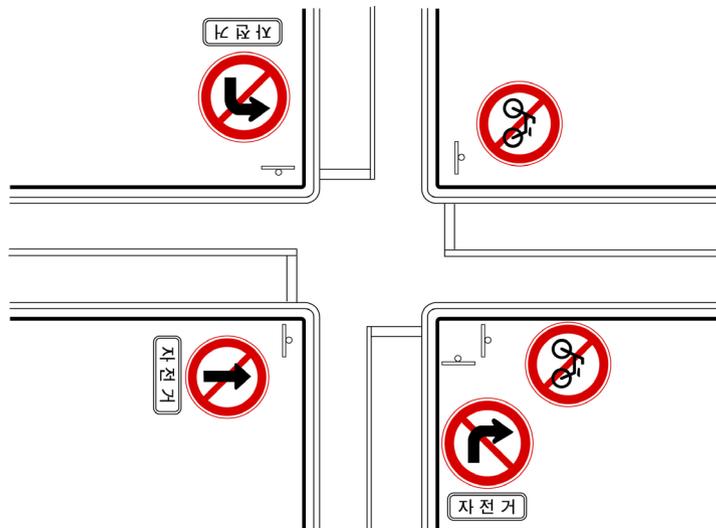
[그림 4-4]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205) 표지 설치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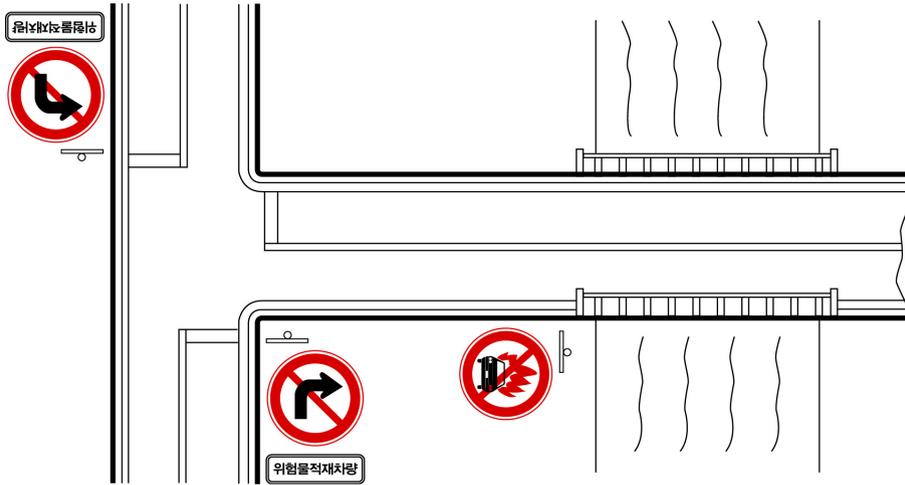
[그림 4-5] 승용자동차, 2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206) 표지 예시도



[그림 4-6] 트랙터 및 경운기 통행금지(207), 손수레 통행금지(207) 표지 설치 예시도



[그림 4-7] 자전거 통행금지(210) 표지 설치 예시도



[그림 4-8] 위험물 적재차량 통행금지(231) 표지 설치 예시도

### 제 3 절 | 통행제한

차마 또는 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거하여 통행제한 규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통행제한 규제표지의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제17조: 최고속도 제한, 최저속도 제한
- 도로교통법 제19조: 차간거리 확보
- 도로교통법 제25조: 양보
- 도로교통법 제26조: 서행, 일시정지



## 기 준

- 통행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장소와 구간에 설치해야 한다.
- 보호해야 할 도로구조물 또는 도로시설물에 따라 적합한 통행제한을 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 규제표지만 설치해야 한다.
- 광범위한 지역 또는 구간에 대해 통행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제표지를 적정한 설치간격으로 중복하여 설치해야 한다.
-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의거하여 차마 또는 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통행제한 규제표지의 목적은 첫째, 도로구조나 도로시설물로 인한 도로이용자의 사고위험을 방지하는 것, 둘째, 도로구조나 도로시설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행제한이 필요한 장소나 구간에는 반드시 통행제한 규제표지를 설치하여 도로구조물로 인한 도로이용자의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또한 도로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통행제한의 종류는 최고속도제한, 최저속도제한, 차간거리확보, 양보, 서행, 일시정지가 있다.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통행제한은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 등의 속도)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차간거리 확보 통행제한은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에 근거한다. 또한 양보 통행제한은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서행과 일시정지는 도로교통법 제25조와 제26조 그리고 제31조에 명시되어 있다. 통행제한 규제표지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설치되는 표지로서 설치위치는 도로시설물의 종류와 용도 및 운전자 행동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설치장소는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



물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이용자의 시각과 측방 여유폭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 전면에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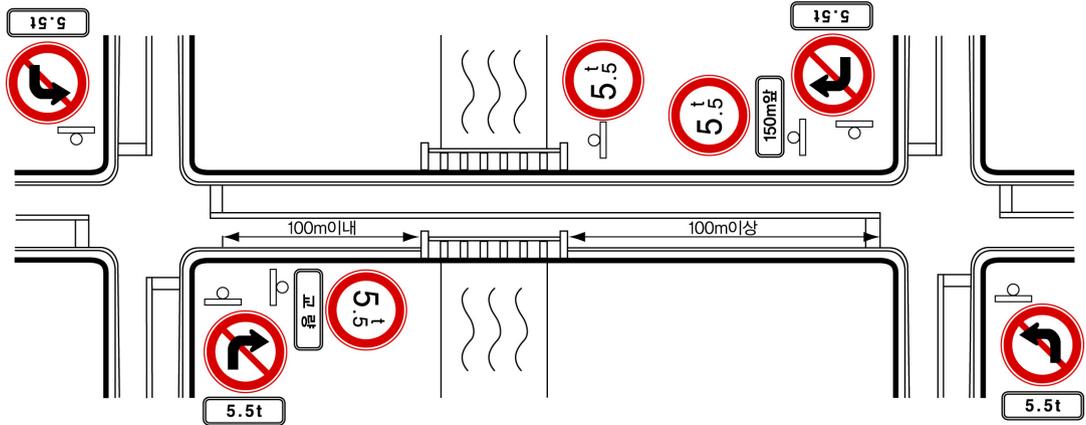
## 1. 차중량제한(220)

### 기 준

- 차량의 중량에 대한 통행제한이 필요한 장소와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차중량제한 규제표지의 숫자는 차량과 화물을 합한 전체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 특정차량을 제한할 경우에는 우회로 지점에 제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해설

차중량제한 표지는 교량, 고가도로 등 도로구조물이나 도로포장과 도로시설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지판에 표시된 중량을 초과하는 차량통행을 제한해야 할 지점과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차중량의 통행제한이 필요한 이유는 도로침하, 포장훼손, 도로 구조물의 과부하로 인한 피로누적 등의 방지이다. 차중량제한 규제표지에서 차중량이라 함은 차량과 화물의 전체중량을 말하며, 이때 표지에 표시된 숫자도 전체중량을 의미한다. 또한 차중량제한 규제표지에 표시할 중량은 해당 구조물의 관리책임자가 제시한 값을 표시해야 한다. 설치위치는 차중량 통행제한을 하고자 하는 구간의 시점과 진입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우회할 수 있는 도로입구에 중복하여 설치한다.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에서 100m 이상 원거리인 경우에는 해당 거리(401, 402) 보조표지를 부착하여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림 4-9] 차중량제한(220) 표지 설치 예

## 2. 차높이제한(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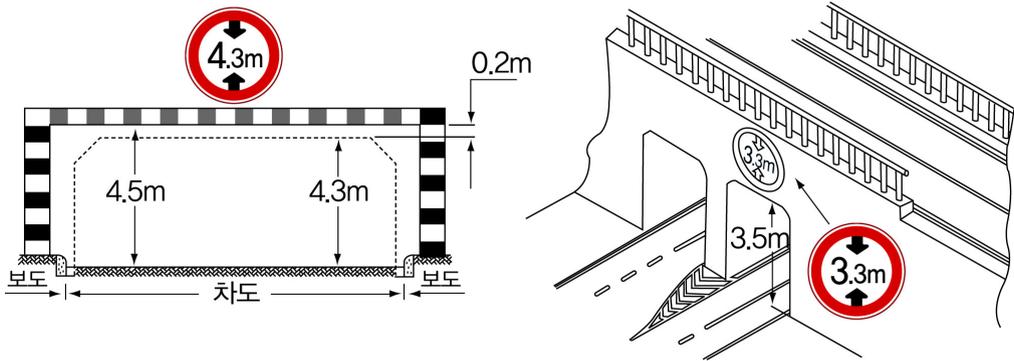
### 기 준

- 차높이 통행제한이 필요한 장소나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차도의 노면으로부터 상단 여유폭이 4.7m 미만인 구조물에 설치하되, 당해 구조물 높이에서 20cm를 뺀 수치를 표시해야 한다.
- 차량진행방향의 도로 우측 또는 해당 도로구조물의 전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우회로 전방에 차높이 제한의 예고와 우회로를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해설** 도로이용자와 도로구조물 또는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차높이 통행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지점 또는 시설물에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차높이 제한은 측정한 높이에서 장래에 도로노면의 변형과 보수로 인한 덧씌우기 높이 등 여유폭(20cm)을 뺀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차높이 제한 규제표지는 건축한계 높이인 4.7m 미만 구조물에 반



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우회로가 없는 단일로에서 구조물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가장 낮은 높이 제한을 우회도로 입구에서 미리 알려 도로이용자가 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치위치와 장소는 차량의 높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도로 우측 또는 해당하는 구조물 전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행제한의 대상차량이 잘못하여 진입하지 않도록 우회도로의 전방에서 차높이 통행제한을 미리 예고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우회도로를 함께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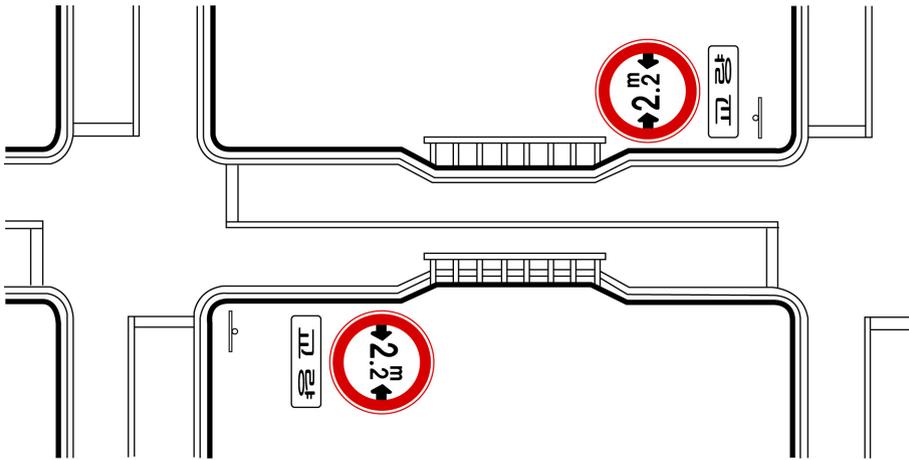


[그림 4-10] 차높이제한(221) 표지 설치 예

### 3. 차폭제한(222)

#### 기 준

- 도로 또는 차로의 폭을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의 구간 또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차량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4-11] 차폭제한(222) 표지 설치 예시도

**해설** 차폭제한 표지는 도로 또는 차로의 폭을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할 필요가 있는 도로의 구간 또는 지점에 설치한다. 차폭제한은 도로의 굴곡으로 인한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주변의 차량이 통행하는데 따른 사고위험이 없는 폭의 넓이를 차폭 제한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차량의 통행제한을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지점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 4. 차간거리확보(223)

##### 기 준

- 표지판에 표시된 차간거리 이상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도로의 구간 또는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 도로의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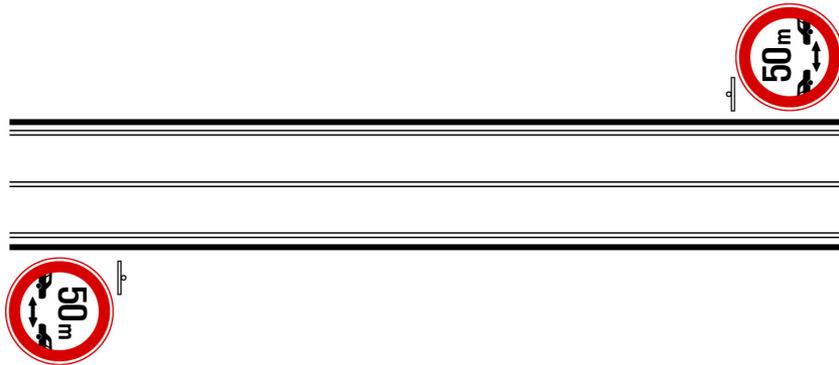


**해설** 차간거리 확보 규제표지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속도가 높을수록 정지시거는 길어지며 적절한 차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 앞 차량의 급제동으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의 주행속도가 높거나 차량의 급정지가 예상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지역에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차간거리 확보 표지를 설치한다. 특히, 고속도로 또는 도시고속도로와 같은 속도가 높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곳이나 급정지가 빈번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권 장**

- 속도가 높은 도로, 도로폭이 좁아지는 도로, 내리막 경사로, 산간 고갯길 등에 설치한다.

**해설** 제한속도에 비해 주행속도가 높게 나타나거나 속도를 내기 쉬운 도로 구간에 차간거리 확보 표지를 설치한다. 도로폭이 갑자기 좁아지는 도로 또는 내리막 경사, 산간 고갯길 등의 도로에서는 도로 선형의 불량에서 기인하는 선두차량의 급제동에 의해 도로시설물과 충돌하거나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간거리 확보 표지를 설치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2] 차간거리확보(223) 표지 설치 예시도

## 5. 최고속도제한(224)

### 기 준

-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 진행방향의 도로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최고속도제한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 등의 속도) 제2항 “경찰청장(고속도로) 또는 지방경찰청장(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와 제3항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양호한 도로조건이나 교통상황에서 도로이용자가 규정속도 이상으로 속도를 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규정속도를 환기시키거나 규정속도 이하



로 속도를 제한할 구간에 설치해야 한다. 설치위치는 제한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구간의 시작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최고속도 제한표지는 주의표지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되며, 위험요소(공사중, 안개, 학교앞 등)를 알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조표지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정해진 구역 또는 구간에 대해서 속도제한을 한 경우, 제한구역 또는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규제가 끝난 최고속도 규제표지와 해제(427) 보조표지를 병설하거나 그 도로 본래의 최고속도 규제표지만 설치한다. 단, 속도를 제한한 구역 또는 구간이 30m 이내로 짧고 시작지점에 거리(402) 또는 구간(418, 419) 등의 보조표지를 함께 병설한 경우에는 해제(427) 보조표지를 생략한다.

※ 여기서 고속도로라 함은 고속국도를 말한다.

## 권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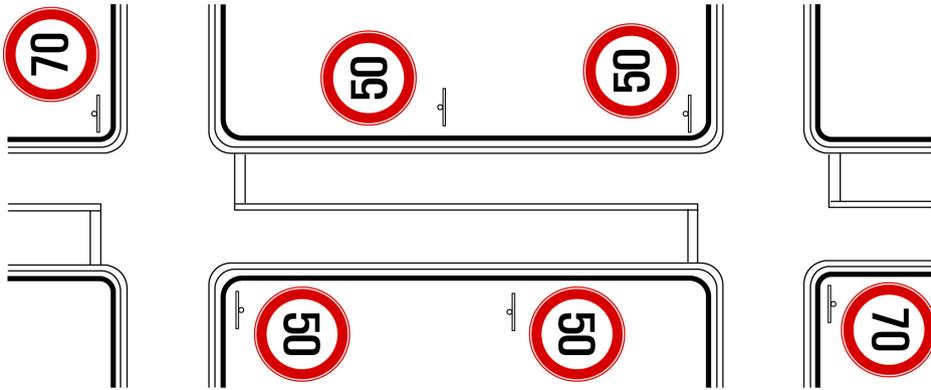
- 제한해야 할 구역 또는 구간이 길 경우에는 중복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시가지도로는 200m, 지방도로는 400m, 자동차전용도로는 8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 제한속도는 노면상태, 갓길상태, 구배, 선행 및 시거, 노면의 조건, 위험요소, 85% 주행속도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 해설

제한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구간이 긴 경우에는 중복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간격은 시가지도로 200m, 지방도로 400m, 자동차전용도로 800m로 중복하여 설치한다. 제한속도는 노면상태, 갓길상태, 구배, 선행 및 시거, 노면의 조건, 위험요소, 85% 주행속도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 감속하게 하거나 규정속도를 환기시킬 곳에 설치한다. 85% 주행속도란 어느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 100대를 조사하여 낮은



속도에서부터 높은 속도로까지 나열할 경우 85번째로 높은 속도를 말한다. 또한 제한하는 구역 또는 구간 내에 교차로가 있고 그 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속도제한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지난 도로의 시작지점에 최고속도 규제표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한속도가 규정속도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모든 도로이용자에게 제한속도 규제표지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에는 최고속도 제한이 시작되는 규제시점으로부터 전방 70m (단, 자동차전용도로는 200m)지점에 거리(401) 보조표지와 함께 최고속도 제한표지를 설치한다.



[그림 4-13] 최고속도제한(224) 표지 설치 예시도

## 6. 최저속도제한(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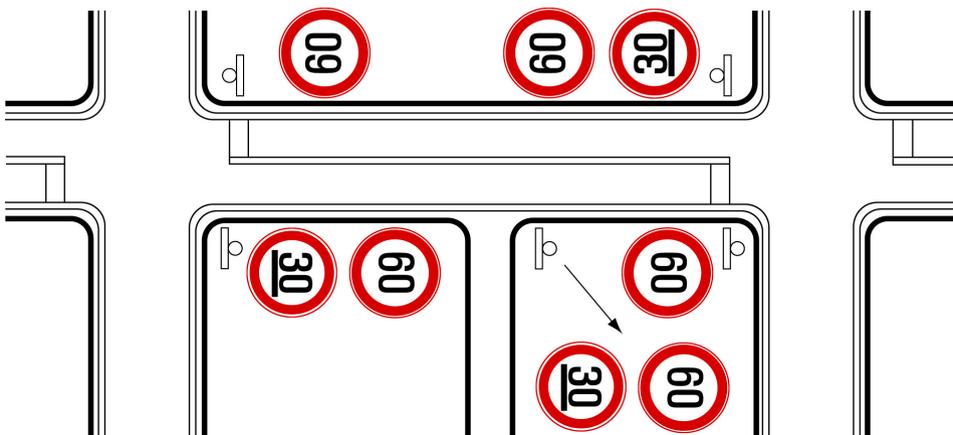
### 기 준

- 자동차의 최저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최저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의 시작 및 끝에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 진행방향의 도로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최저속도제한은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 등의 속도) 제2항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와 제3항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명시되어 있다. 즉,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구간에 최저속도 규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는 저속차량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는 차량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방해하거나 교통지체를 야기함으로써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다. 설치위치는 차량의 최저속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구간의 시작점에 설치한다. 또한 시작점에는 최고속도(224) 제한표지와 함께 사용해야 하며, 다른 교통안전표지와 함께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최저속도제한이 끝나는 지점에는 최저속도 제한표지와 해제(427) 보조표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그림 4-14] 최저속도제한(225) 표지 설치 예시도



## 권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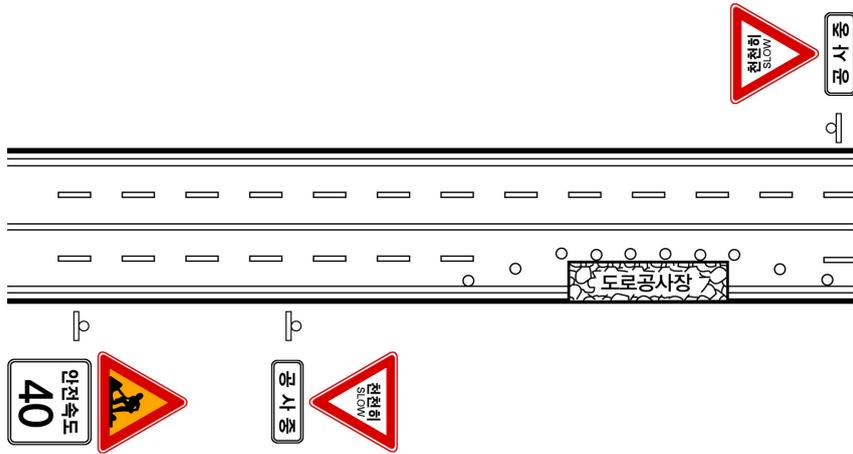
- 제한해야 할 구역 또는 구간이 길 경우에는 중복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시가지도로는 200m, 지방도로는 400m, 자동차전용도로는 8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해설** 제한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구간이 긴 경우에는 중복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간격은 시가지도로는 200m, 지방도로는 400m, 자동차전용도로는 800m이다. 또한 제한하는 구역 또는 구간 내에 교차로가 있고 그 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속도제한을 알 수 없는 경우 교차로를 지난 도로의 시작지점에 최저속도 규제표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모든 도로이용자에게 제한속도 규제표지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최저속도 제한이 시작되기 전에 규제시점으로부터 전방 70m (단, 자동차전용도로는 200m) 지점에 거리(401) 보조표지와 함께 최저속도 제한표지를 병설해야 한다.

## 7. 서행(226)

### 기 준

- 자동차가 서행하여야 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서행 노면표시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 서행구간이 30m 이상일 때는 시작과 끝 지점에 보조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서행구간이 100m 이상일 때는 100m 간격으로 중복하여 설치해야 한다.
-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의표지와 함께 설치해서는 안된다.



[그림 4-15] 서행(226) 표지 설치 예시도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6항에는 “‘서행’이라 함은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위험을 발견할 경우에 즉시 정지할 수 있을 수 있는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에 서행해야 할 장소는 다음과 같다.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곳

최고속도(224), 일시정지(227), 양보(228) 등의 규제표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사항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그러한 표지의 사용이 모호한 곳에 서행 규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서행 규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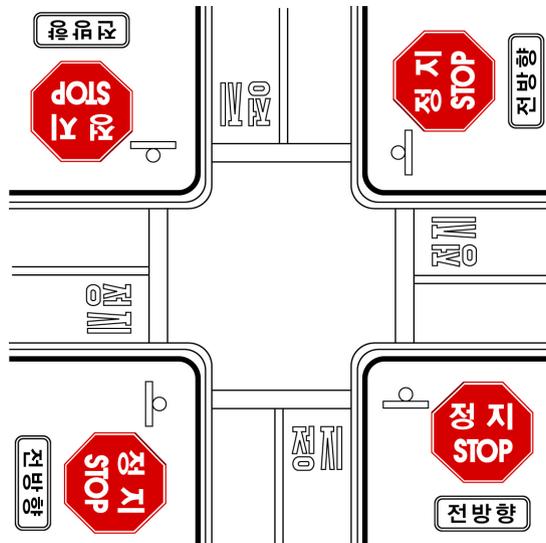


지는 다른 주의표지와 함께 병설해서는 안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위해요소를 명시한 보조표지(예: 도로공사중)를 병설한다. 서행구간이 30m 이상일 때는 시작지점에 거리(401, 402)나 구역(417, 418, 419)의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서행이 끝나는 지점에는 서행 규제표지와 해제(427) 보조표지를 설치하지 않으며, 그 도로의 최고속도(224) 규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서행구간이 100m 이상 긴 경우에는 100m 간격으로 중복되게 설치한다.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8. 일시정지(227)

### 기 준

- 차량이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교차로나 기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일시정지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해야 한다.
-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4-16] 일시정지(227) 표지 설치 예시도



**해설** 일시정지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8항에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를 완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 31조 2항에 일시정지 할 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시인거리가 짧거나 장애물로 인해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곳과 같은 장소에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교통이 빈번하여 사고위험이 있는 장소에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통행이 빈번한 지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철길건널목, 우선도로와 교차하는 부도로 등에도 설치해야 한다. 일방통행도로의 출구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각 방향별로 좌회전 금지(214) 또는 우회전금지(213)를 설치하고, 진입금지(211) 규제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우선도로와 교차하는 도로에서 주도로에는 우선도로 (106) 주의표지만 설치하고 부도로에는 일시정지와 전방우선도로(408) 보조표지를 함께 부착한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주도로와 부도로의 교통량이 많고 차이가 없을 때는 모든 방향의 입구에 일시정지 (227) 표지를 모두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모든 방향이 모두 일시정지라는 것을 보조표지를 이용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알려 불필요한 지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일시정지 규제표지는 반드시 일시정지(521)노면표시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 9. 양보(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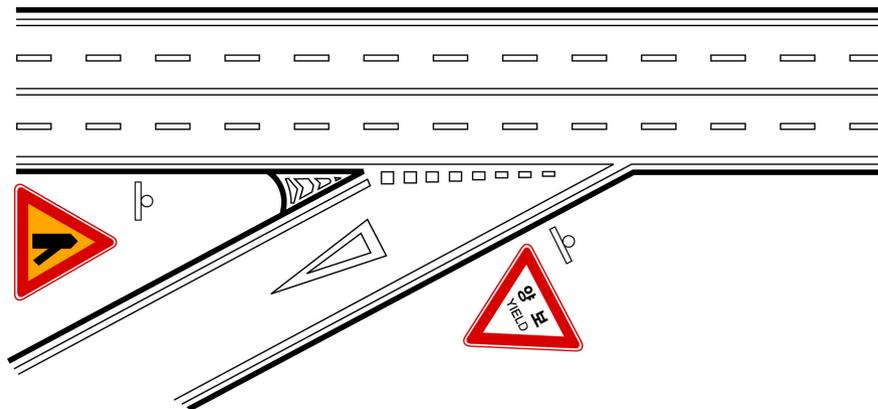
### 기 준

- 차량이 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양보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해야 한다.



○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합류 또는 교차로에서 주도로에 합류하거나 진입을 할 경우 다른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면서 진행해야 할 도로에 설치한다. 즉, 교차하는 두 도로에서 모든 방향의 교통량이 매우 적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도 통과할 수 있는 곳에서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부도로에만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방향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주도로에 합류하는 경우에 합류도로 양보 규제표지를 설치한다. 그러나 교통량이 많거나 교통흐름을 영향을 미치는 교차로나 합류도로에서는 반드시 양보 규제표지가 아닌 일시정지(227) 규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양보 규제표지는 반드시 양보(522) 노면표시와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우선도로와 교차하는 부도로에는 양보 규제표지가 아닌 일시정지(227) 규제표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지만 주도로의 교통량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양보 규제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우선도로(3장5절1항), 일시정지(4장3절8항) 참조). 설치장소는 차량의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4-17] 양보(228) 표지 설치 예시도



## 제 4 절 | 금지사항

차마 또는 보행자에게 도로이용을 금지하고자 하는 곳에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거하여 규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금지사항에 대한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제6조 및 제58조: 진입금지, 직진금지, 우회전금지, 좌회전금지
- 도로교통법 제18조: 횡단금지, 유턴금지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64조: 정차 및 주차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
- 도로교통법 제10조 및 제62조: 보행자 횡단금지, 보행자 보행금지
- 도로교통법 제22조: 앞지르기금지

### 기 준

-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방법이나 기타 금지사항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및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의거하여 차마 또는 보행자의 도로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통행방향별 금지는 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와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에 의해 규제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으며, 정차 및 주차의 금지는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와 제64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해 금지장소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주차금지 근거는 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주차금지장소가 명시되어 있으며, 보행자의



횡단금지는 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앞지르기 금지는 법 제22조에 앞지르기 금지시기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방법이나 기타 금지사항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및 지역에 금지사항 규제표지를 설치하여 금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규제사항은 도로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설치해야 하며,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해야 한다. 설치위치는 금지구간의 시작지점에 설치한다. 설치장소는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진입금지(211) 및 직진금지(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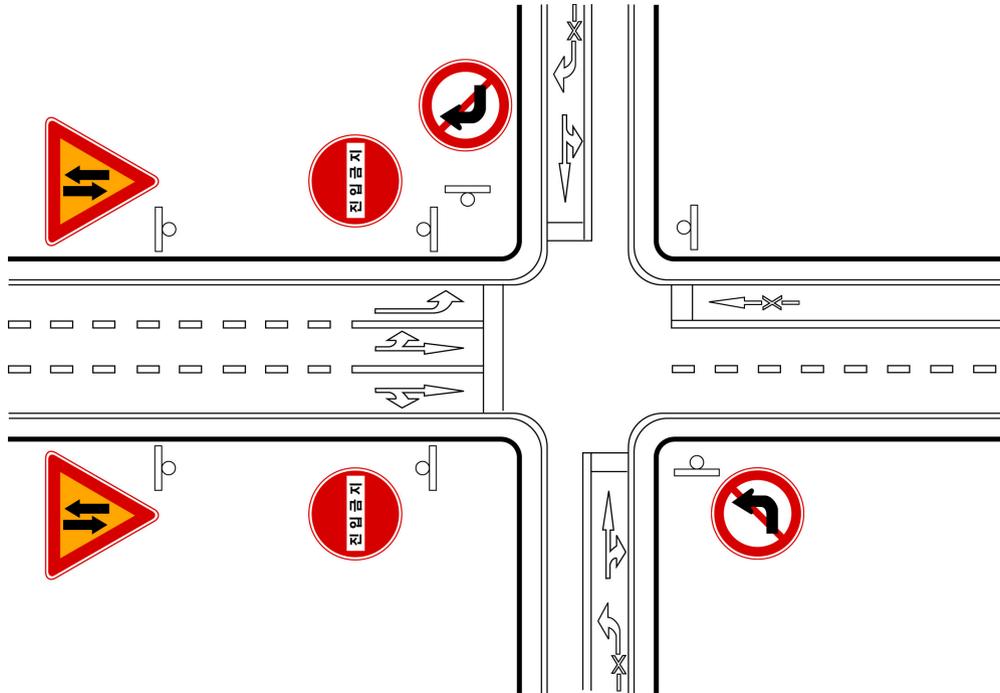
### 기 준

- 차량의 진입 또는 직진을 금지해야 할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진입금지의 이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설** 진입금지 및 직진금지는 차량이 진입 또는 직진을 해서는 안되는 도로의 입구나 구역 및 구간의 시작점에 설치한다. 진입금지는 일방통행도로의 출구와 같이 차마가 진입해서는 안되는 도로에 설치해야 하며, 직진금지는 도로가 끝나는 곳에서 직진을 할 수 없거나 직진해서는 안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일시적인 진입금지인 경우에는 진입금지의 이유나 기간 등을 명시하는 보조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표지의 설치장소는 진입 또는 직진을 금지하는 구역 및 구간에서 도로의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일방통행 도로에서 일방통행 출구의 좌측과 우측 모두에 진입금지 규제표지를 설치하고, 다른



도로에는 잘못 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합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즉, 각 방향별 회전금지(213, 214) 규제표지를 해당 도로에 설치한다.



[그림 4-18] 진입금지(211) 및 직진금지(212), 우회전금지(213) 및 좌회전금지(214) 표지 설치 예시도

## 2. 우회전금지(213) 및 좌회전금지(214)

### 기 준

- 차량의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금지해야 할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차량 진행방향의 도로우측에 설치해야 한다.



**해설** 우회전 금지 및 좌회전 금지 표지는 차량이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해서는 안되는 지점에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도로의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로폭이 넓어 좌측차로에서 우측에 설치된 규제표지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에 설치할 수 있으며,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일시적으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금지이유와 기간을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한다. 일방통행으로 인해 진입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일방통행(326, 327) 지시표지와 2방향통행(115) 주의표지 및 좌회전금지(214) 규제표지를 같이 사용하여야 하고, 직진금지(212) 및 우회전금지 규제표지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일정구간이 자동차 통행금지 구역인 경우에는 진입금지(211) 또는 직진금지(212) 규제표지를 우회전금지(213), 좌회전금지(214) 규제표지와 함께 사용한다.

### 3. 유턴금지(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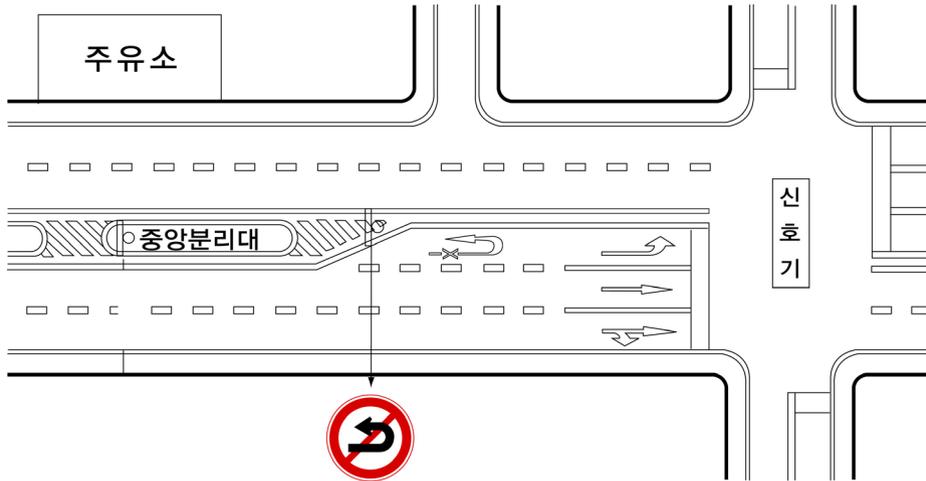
#### 기 준

- 차량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금지하는 장소의 전면 또는 도로 우측에 설치해야 한다.

**해설** 유턴금지 표지는 차량이 횡단하거나 유턴하기에 부적합 한 도로 폭(9m 미만)인 경우와 횡단 또는 유턴할 경우에 사고위험이 있는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설치위치 및 장소는 유턴이 금지된 구간이나 장소에서 전면 또는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도로 폭이 넓



거나 도로 중앙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시인성 등을 고려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 도로중앙에 설치할 수 있다.



[그림 4-19] 유턴금지(216) 표지 설치 예시도

#### 4. 앞지르기금지(217)

##### 기 준

-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시작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구간의 시작(402) 또는 끝(427) 등의 보조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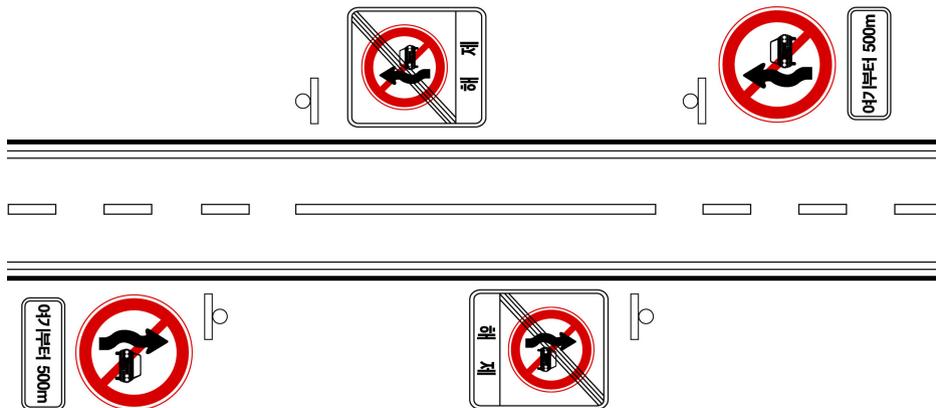
## 권 장

- 구간 내에서 시가지도로는 200m, 지방도로는 300m, 자동차전용도로는 500m 간격으로 중복하여 설치한다.

**해설** 앞지르기 금지는 도로교통법 제21조에 ‘앞지르기 방법’과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시기 및 장소’, 제23조 ‘끼어들기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 교차로·터널 안 또는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차량의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구간이나 장소의 시작지점의 전면이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간 내에서는 시작(402) 또는 끝(427)의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설치간격은 시가지도로는 200m, 지방도로는 300m, 자동차전용도로는 500m 간격으로 중복하여 설치한다.



[그림 4-20] 앞지르기금지(217) 표지 설치 예시도



## 5. 정차·주차금지(218)

### 기 준

- 차량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 도로 구간이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구간의 시작(417) 및 끝(419) 또는 시간(405, 406) 등의 보조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64조에는 정차·주차를 금지할 장소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런 장소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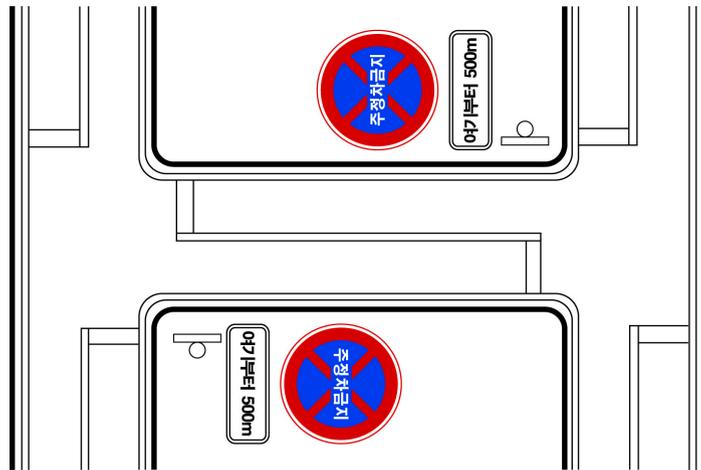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단, 주차장법에 의해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 제외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권 장

- 구간 내에서 시가지도로는 200m, 지방도로는 300m, 자동차전용도로는 500m 간격으로 중복하여 설치한다.



**해설** 정차 및 주차 금지표지는 정차·주차금지(516) 노면표시를 설치했으나 그 효과가 의심스러운 곳에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제34조에 의해 정차·주차하는 방법과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구간 시작(417), 구간끝(419), 거리(402), 시간(405, 406) 등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구간이 긴 경우에는 구간 내에 구간내(418) 보조표지와 함께 중복하여 설치하며, 시작점에서 거리(402) 보조표지를 사용한 경우, 구간내(418) 보조표지 없이 중복하여 설치한다. 또한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는 구간끝(419) 보조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그림 4-21] 정차·주차금지(218) 표지 설치 예시도

## 6. 주차금지(219)

### 기 준

-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 도로 구간이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구간의 시작(417) 및 끝(427) 또는 시간(405, 406) 등의 보조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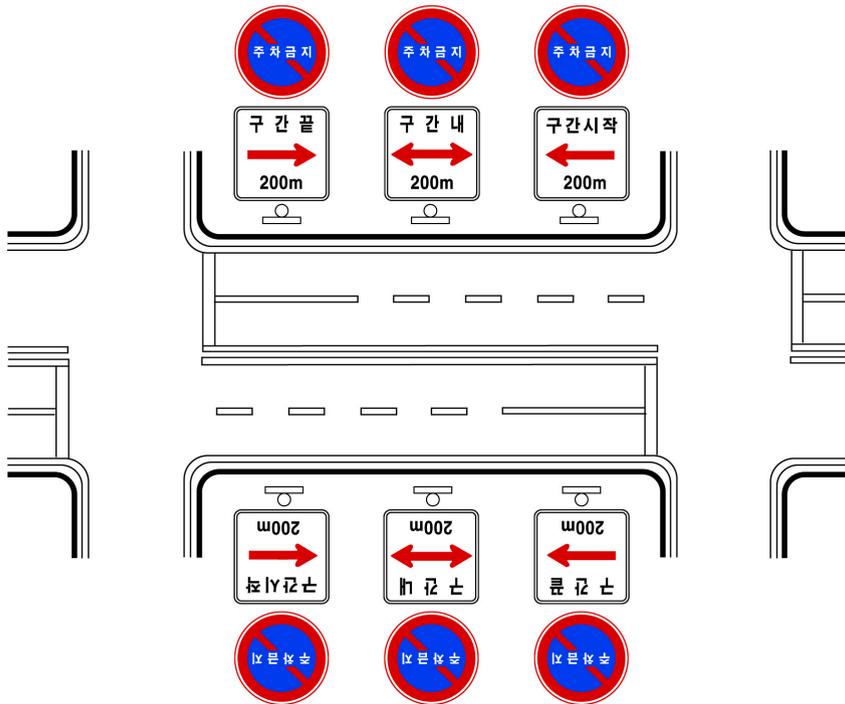
**해설** 주차금지의 장소로는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러한 장소는 다음과 같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은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권 장**

- 구간 내에서 시가지도로는 200m, 지방도로는 300m, 자동차전용도로는 500m 간격으로 중복하여 설치한다.

**해설**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차금지표지는 주차금지(515)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에서 그 효과가 의심스러운 곳에 설치한다. 구간시작(417), 구간끝(419), 시간(405, 406) 등의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구간이 긴 경우에는 구간 내에 구간내(418) 보조표지와 함께 중복하여 설치하며, 시작점에서 거리(402) 보조표지를 사용한 경우, 구간내(418) 보조표지 없이 중복하여 설치한다. 또한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는 해제(427) 보조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그림 4-22] 주차금지(219) 표지 설치 예시도

## 7. 보행자보행금지(230)

### 기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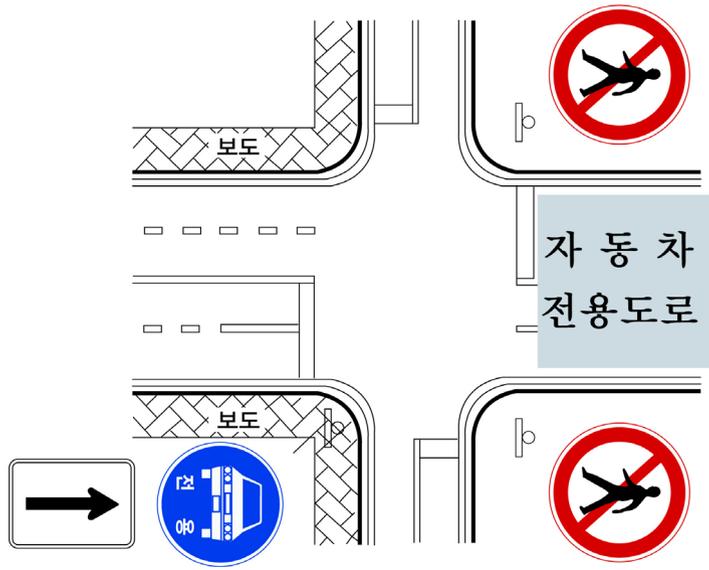
- 보행자의 보행을 금지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 및 장소 내에 필요한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도로를 따라 보행자 보행을 금지할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구간의 시작 또는 끝 등의 보조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해설

도로교통법 제5조(행렬 등의 차도통행)에 차도로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에 관해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명시된 보행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보행자는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하며, 특정한 차량만 통행토록 지정된 전용도로는 통행하지 말아야 한다. 즉, 보행자가 보행해서는 안 되는 곳과 보행시 사고위험이 있는 곳에는 보행자의 통행 또는 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보행할 가능성이 있는 도로의 좌측과 우측 모두에 설치한다. 이때 보행금지 규제표지를 양면으로 하여 가능한 모든 보행자가 볼 수 있도록 설치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보행금지 시작지점에 보행금지의 구간과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보행금지에 대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보행금지 규제표지의 보행자가 중간에서 잘못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구간 내에 중복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설치간격은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그림 4-23] 보행자보행금지(230) 표지 설치 예시도

**제1절** 개요

**제2절** 도로지정

**제3절** 통행방법 지시

**제4절** 일방통행 지시

**제5절** 보행자 지시

**제6절** 기타 지시



## 제 5 장

## 지시표지



## 제 1 절 | 개 요

지시표지의 목적은 도로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통행방법 및 통행구분 등에 대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지시를 할 경우에 그 지시사항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다. 지시표지의 기능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필요한 지시와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지시표지는 차량이나 보행자에 대하여 도로의 지정, 통행방법의 지시, 기타 지시를 하는 표지로서, 일정한 행위의 허가 및 허용, 또는 특정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다. 또한, 교통통제를 위해 필요한 법규를 도로이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거나 취하여도 좋다는 지시통제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시표지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설치해야 하며 또한, 도로이용자가 지시표지의 지시사항에 따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 제 2 절 | 도로 지정

도로지정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조, 제57조에 의거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는 그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조에 의해 버스 또는 다인승차량 전용차로의 차로 지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버스 또는 다인승차량 전용차로는 특정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 또는 도로이며, 지정된 차량만이 통행을 하도록 해당 지시표지를 설치한다. 단,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도로이용자는 지정된 도로에서 특별히 지정된 차마 또는 보행자만이 통행할 수 있으며, 특별히 지정된 도로임을 표시하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단,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그 밖의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는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로 한다. 또한 도로관리자는 도로지정을 도로이용자에게 고시할 필요가 있다.

## 1. 자동차전용도로(301)

### 기 준

-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 및 기타 필요한 구간에 설치해야 한다.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 차량의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자동차전용도로표지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에서 전용도로 구간이 시작되는 입구와 끝나는 출구에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 표지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 구간시작(417)의



보조표지와 함께 부착하고, 끝나는 지점에 구간끝(419) 또는 해제(427)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간 내에서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에도 자동차전용도로 표지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제외한 도로이용자가 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설치장소는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권 장

- 전용도로 표지를 시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도로로 진입할 우려가 있는 도로의 우측에 회전금지(213, 214) 규제표지를 설치한다.

**해설** 자동차전용도로 표지의 효과가 작거나 시인성이 좋지 못하여 자동차 이외의 차량이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여 전용도로에 진입할 우려가 많을 때에는 우회전 또는 좌회전할 가능성이 있는 도로의 우측에 우회전금지(213) 또는 좌회전금지(214) 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자동차전용도로 표지는 전용도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전방 약 7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전용도로에 접근하는 모든 차량이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자전거전용도로(302)

### 기 준

- 자전거전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자전거전용도로 표지는 자전거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에서 전용도로 구간이 시작되는 입구와 끝나는 출구에 설치해야 한다.

자전거전용도로 표지는 자전거전용도로의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 구간시작(417)의 보조표지와 함께 병설하고, 끝나는 지점에 구간끝(419) 또는 해제(427)의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자전거전용도로의 구간 내에서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에도 자전거전용도로 표지를 설치하여 자전거를 제외한 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설치장소는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권 장**

- 전용도로 표지를 시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도로로 진입할 우려가 있는 도로의 우측에 회전금지(213, 214) 규제표지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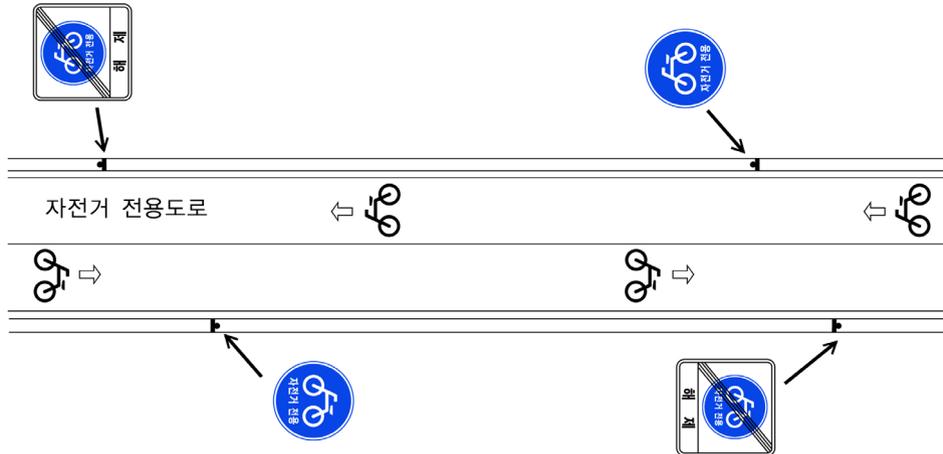
**해설**

자전거전용도로 표지는 전용도로 시작지점에 설치하며, 전용도로에 접근하는 모든 차량과 자전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전거전용도로 표지의 효과가 작거나 시인성이 좋지 못하여 자전거를 제외한 차량이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여 전용도로에 진입할 우려가 많을 때, 우회전 또는 좌회전할 가능성이 있는 도로의 우측에 우회전 금지(213) 또는 좌회전금지(214) 규제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자전거 전용도로 2방향〉



〈자전거 전용도로 1방향〉



[그림 5-1] 자동차전용도로(301) 및 자전거전용도로(302) 표지 설치 예시도

### 3.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303)

**기 준**

-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구간의 시작 또는 끝 보조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로 지정된 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겸용도로 구간이 시작되는 입구와 끝나는 출구에 설치해야 한다.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의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 구간시작(417)의 보조표지와 함께 병설하고, 끝나는 지점에 구간끝(419) 또는 해제(427)의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의 구간 내에서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에도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를 설치하여 자전거와 보행자를 제외한 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설치장소는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간 내에 교차로 부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에만 설치한다.



[그림 5-2]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을 구분할 필요없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303) 표지 설치 예시도



## 4.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317)

### 기 준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중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 구간의 시작 또는 끝 보조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통행구분 방법에 따라 도안을 바꿀 수 있다.

**예** **설**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지정된 도로에서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도로 구간이 시작되는 입구와 끝나는 출구에 설치해야 한다.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표지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의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 구간시작(417)의 보조표지와 함께 병설하고, 끝나는 지점에 구간끝(419) 또는 해제(427)의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에도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는 도로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5-3]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317) 표지 설치 예시도



## 5. 버스전용차로(330)

### 기 준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특정한 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전용차로에서 버스전용으로 지정된 차로 또는 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 버스전용차선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해야 한다.
- 구간, 일자, 시간 등의 보조표지를 병설해야 한다.
- 표지설치시 지주의 유형은 측주식 또는 문형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해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특별히 정한 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전용차로에서 버스전용으로 지정된 차로 또는 도로에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에 의해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에서 “전용차로의 종류,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용어 정의와 동령 별표1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표 5-1>과 같다. 따라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량이 당해 전용차로로 통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으며, 그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 통행차외의 차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택시운전자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 도로의 파손 및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한 경우



버스전용차로 지시표지는 버스전용차로가 시작되는 지점에 구간시작, 끝나는 지점에 구간끝(417, 419) 혹은 해제(427)를, 그리고 필요한 곳에 거리(402), 시간(405) 등의 보조표지를 병설해야 한다. 즉, 버스전용차로 시작지점에 버스전용차로 지시표지와 전용차로 시간(405) 및 일자(404), 그리고 구간길이(402) 등의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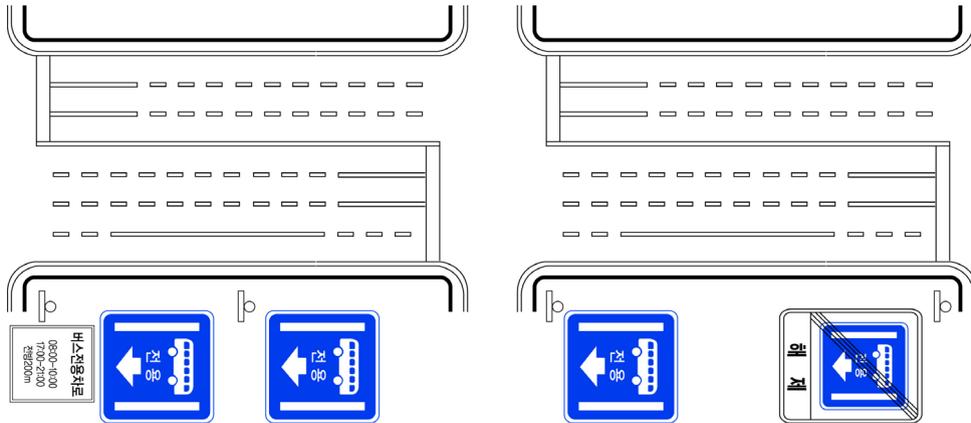
구간이 긴 경우와 구간 내에 교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구간 내에 중복하여 설치하나 구간내(418) 보조표지는 생략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가 시작되기 전에 도로이용자에게 미리 전용차로가 시작됨을 알리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예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전용차로가 시작하는 지점으로부터 일반도로는 50~100m,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는 200m 전방에 설치한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전용차선(504)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해야 하며, 설치구간이 긴 경우 중복하여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전용차로로 지정된 차로의 상단이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표 5-1〉 전용차로 통행차량

전용차로 종 류	통행할 수 있는 차량	
	고속도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
버 스 전용차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3. 법 제52조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가.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전용차로 종 류	통행할 수 있는 차량	
	고속도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
		<p>나.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에 한한다)</p> <p>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p>
다인승차량 전용차로	3인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단, 버스전용차로와 함께 설치된 도로인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제외)	
자 전 거 전용차로	자전거	



[그림 5-4] 버스전용차로(330) 표지 설치 예시도



## 6. 다인승차량전용차로(331)

### 기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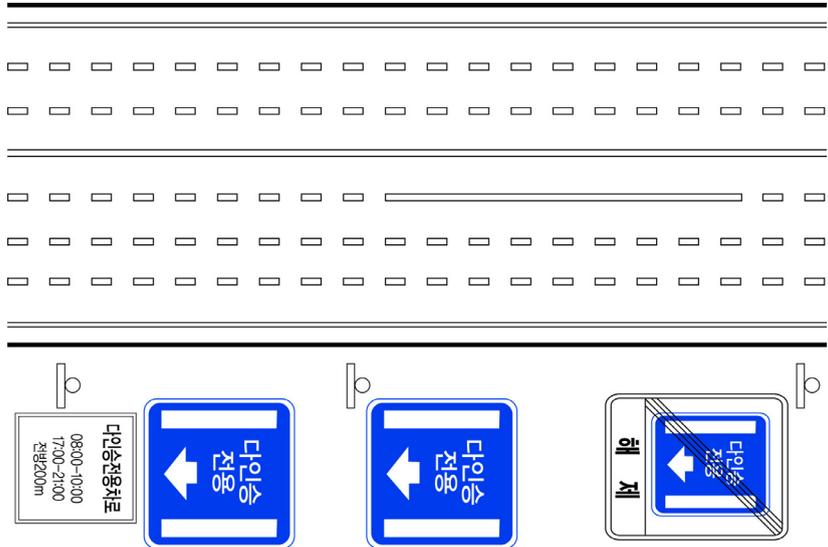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특정한 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전용차로에서 다인승차량전용차로로 지정된 차로 또는 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 버스전용차선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해야 한다.
- 구간, 일자, 시간 등의 보조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표지설치시 지주의 유형은 측주식 또는 문형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 **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특별히 정한 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전용차로에서 다인승차량전용차로로 지정된 차로 또는 도로에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전용차로의 설치)에 의해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전용차로의 종류 등)와 별표1(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에 명시되어 있다(<표 5-1> 전용차로 통행차량 참조).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에 전용차로 통행차량을 제외한 차량이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5장2절4항 버스전용차로 참조).

다인승차량전용차로 지시표지는 다인승차량전용차로의 시작지점에 구간시작, 끝지점에 구간끝(417, 419) 혹은 해제(427), 그리고 구간 내 필요한 곳에 거리(402), 시간(405) 등의 보조표지를 병설해야 한다. 구간이 긴 경우와 구간 내에 교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인승차량전용차

로 지시표지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있지만 구간내(418) 보조표지는 생략할 수도 있다. 다인승차량전용차로가 시작되기 전에 도로이용자에게 미리 전용차로가 시작됨을 알리기 위하여 다인승차량전용차로 예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전용차로가 시작하는 지점으로부터 일반도로는 50~100m,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는 200m 전방에 설치한다.

다인승차량전용차로는 버스전용차선(504)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해야 하며 설치구간이 긴 경우 중복하여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전용차로로 지정된 차로의 상단이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그림 5-5] 다인승전용차로(331) 표지 설치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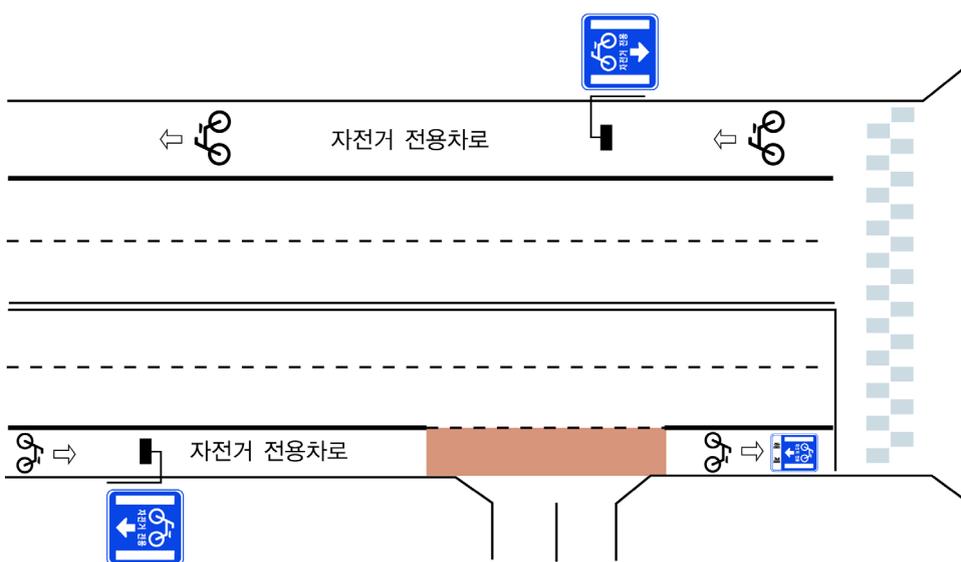


## 7. 자전거 전용차로(318)

### 기 준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차로의 일부를 자전거전용차로로 지정한 도로에 설치한다.
- 자전거 전용차로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해야 한다.
- 구간·일자·시간 등의 보조표지를 병설할 수 있다.
- 표지설치시 지주의 유형은 내민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애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으로 지정된 차로 또는 도로에 설치한다.



[그림 5-6] 자전거 전용차로(318) 표지 설치 예시도



### 제 3 절 | 통행방법 지시

**해설** 차마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도로의 통행방법을 지시하며,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도로의 통행방법을 지시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도로의 통행방법을 지시한다.

통행방법 지시는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 장소와 구간에 한해서 최소한의 지시가 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치해야 한다. 관련법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에 유턴, 양측방통행, 우측면 또는 좌측면통행,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에 회전교차로, 직진, 우회전, 좌회전, 직진 및 우회전, 직진 및 좌회전, 좌우회전, 비보호좌회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통행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통행방법 지시는 크게 회전방향지시와 진로지시로 분류할 수 있다. 회전방향지시의 종류에는 회전교차로(304), 직진(305), 우회전(306), 좌회전(307), 직진 및 우회전(308), 직진 및 좌회전(309), 좌우회전(310), 유턴(311), 비보호좌회전(329) 등이 있으며, 진로지시에는 양측방통행(312), 우측면통행(313), 좌측면통행(314) 등이 있다. 통행방법 지시중에 화살표시가 2개인 표지는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여도 좋으나 그 외의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화살표시가 1개일 경우는 그 방향만으로 회전(좌회전, 우회전) 또는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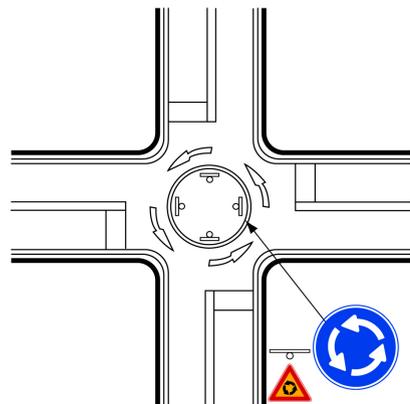
화살표가 하나인 표시는 특정차종표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뉜다. 특정차종 표시가 있는 경우 특정차종은 반드시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 때 특정차종을 제외한 차종은 통상적인 방향전환(직진, 좌회전, 우회전)이 가능하다. 특정차종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차종은 반드시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화살표가 2개이며, 특정차종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차종은 화살표의 어느 방향으로든 유턴 또는 진행이 가능하다. 특정차종 또는 특정차종을 제외한 차량의 통행방법 지시를 할 경우도 통행방법 지시표지와 특정차종에 해당하는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즉, 특정차종을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 통행방법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특정차종 제외’라는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예, 버스제외)한다. 통행방법 지시표지의 사용방법은 <표 5-2>와 같다.

## 1. 회전교차로(304)

### 기 준

-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교차로에 설치해야 한다.
-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해야 한다.

**예** **설**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설치장소는 회전교차로에서 교차로 입구의 도로 우측이나 교차로



[그림 5-7] 회전교차로(304) 표지 설치 예시도

의 정면에 설치한다. 회전교차로를 원거리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고 사고위험이 없는 회전교차로에는 지시표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표 5-2〉 통제방법

구분	특정차종(예:버스)			그 외 차 종			지 시 방 법	
	좌회전	직진	우회전	좌회전	직진	우회전	본 표 지	보조표지
1 방 향 금 지	○	○	○	×	○	○		「버스제외」
	×	○	○	○	○	○		「버스」
	○	○	○	○	○	×		「버스제외」
	○	○	×	○	○	○		「버스」
	○	○	○	○	×	○		「버스제외」
	○	×	○	○	○	○		「버스」
2 방 향 금 지	○	○	○	○	×	×		「버스제외」
	○	×	×	○	○	○		「버스」
	○	○	○	×	○	×		「버스제외」
	×	○	×	○	○	○		「버스」
	○	○	○	×	×	○		「버스제외」
	×	×	○	○	○	○		「버스」
3 방 향 금 지	○	×	×	×	○	○	 	「버스」 「버스제외」
	×	○	○	○	×	×	 	「버스」 「버스제외」
* 3방향 이상의 금지는 위와 같은 요령으로 반드시 지시표지를 사용하며(규제표지는 불가) 특정차종에 대한 표지를 상부에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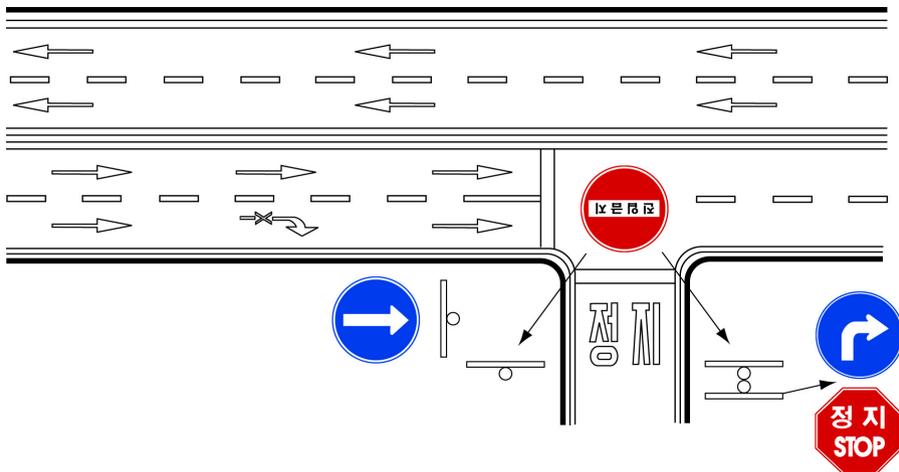


## 2. 직진(305)

### 기 준

- 차량이 직진을 해야 할 장소나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도로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특정차종에 대해서 지시할 경우,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도로가 분리되는 곳에서 반드시 직진만을 허용해야 할 때는 그 분리지점의 도로 우측에 지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지시표지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곳에는 회전하여 진입하여서는 안되는 방향에 대한 회전금지(우회전(213) 또는 좌회전(214)) 규제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도 있다. 특정차종 또는 특정차종을 제외한 차종에 대해서 통행방법을 지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표지를 사용한다(<표 5-2> 참조).



[그림 5-8] 직진(305) 표지 설치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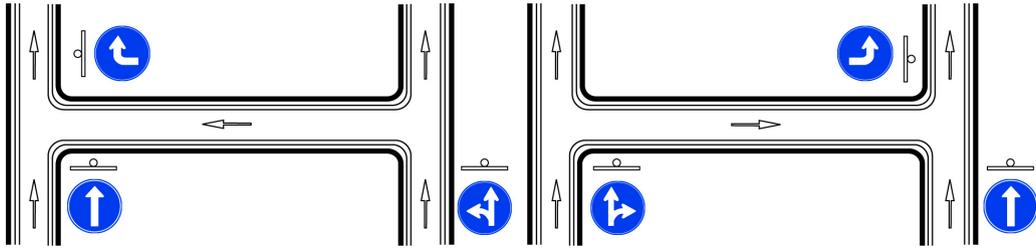


### 3. 우회전(306) 및 좌회전(307)

#### 기 준

- 차량이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해야 할 장소나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도로 우측에 해야 한다. 단, 광로에서 중앙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중앙에 설치해야 한다.
- 특정차종 또는 특정차종을 제외한 통행방법을 지시할 경우, 보조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예** **설** 도로가 분리되는 곳에서 우회전(또는 좌회전)만을 허용해야 할 때는 그 분리지점의 도로 우측에 해당하는 지시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지시표지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곳에는 진입하여서는 안되는 방향에 대한 금지 규제표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일방통행 도로와 교차하는 도로에서 일방통행 도로의 출구로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진입금지(211) 표지를 사용하고 그밖에 도로에서 직진을 금지해야 할 곳에는 직진금지(212) 표지를 사용한다. 도로의 형상이 우로(또는 좌로) 굽어서 감속을 해야 할 장소에는 우회전(또는 좌회전) 지시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그런 경우는 반드시 우로(또는 좌로) 굽은 도로 주의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특정차종 또는 특정차종을 제외한 차종에 대해서 통행방법을 지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표지를 사용한다(<표 5-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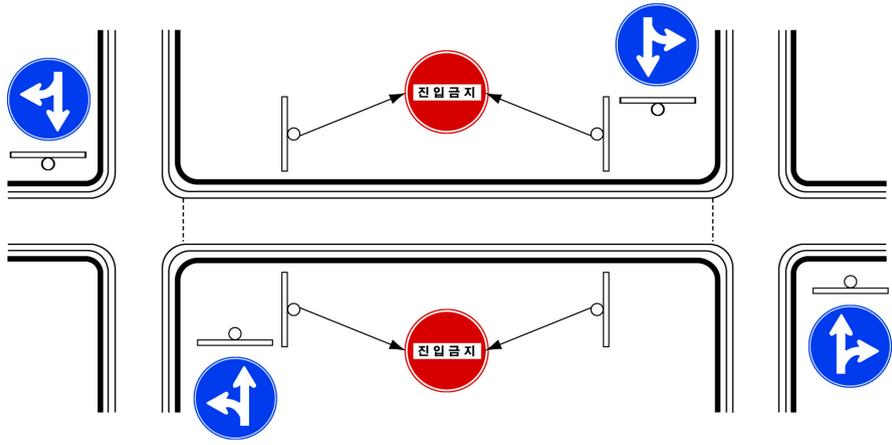
[그림 5-9] 우회전(306) 및 좌회전(307) 표지 설치 예시도

#### 4. 직진 및 우회전(308), 직진 및 좌회전(309)

##### 기 준

- 차량이 직진 및 우회전, 직진 및 좌회전을 해야 할 장소나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특정차종 또는 특정차종을 제외한 통행방법을 지시할 경우, 보조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해설** 도로가 분리되는 곳에서 직진과 우회전(또는 직진과 좌회전)만이 가능할 때는 그 분리지점의 도로 우측에 해당하는 지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지시표지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곳에는 진입하여서는 안되는 방향에 대한 금지 규제표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형상에서 좌측(또는 우측)이 막혔을 경우에는 금지 규제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특정차종 또는 특정차종을 제외한 차종에 대해서 통행방법을 지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표지를 사용한다(<표 5-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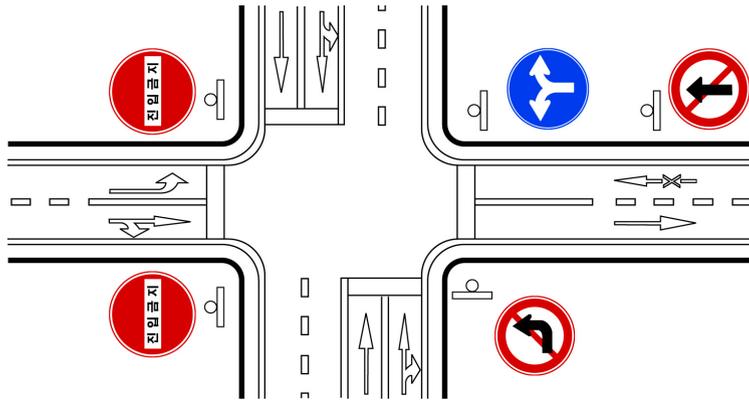
[그림 5-10] 직진 및 우회전(308), 직진 및 좌회전(309) 표지 설치 예시도

## 5. 좌·우회전(310)

### 기 준

- 차량이 좌·우회전을 해야 할 장소나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도로 우측에 해야 한다. 단, 광로에서 중앙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중앙에 설치해야 한다.
- 특정차종 또는 특정차종을 제외한 통행방법을 지시할 경우, 보조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해설** 도로가 좌측과 우측으로 분리되는 곳에서 우회전 또는 좌회전만이 허용될 때는 그 분리지점의 도로 우측에 해당하는 지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지시표지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곳에는 금지(일방통행도로는 진입금지(211) 또는 그 이외는 직진금지(212)) 규제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도 있다. 특정차종 또는 특정차종을 제외한 차종에 대해서 통행방법을 지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표 5-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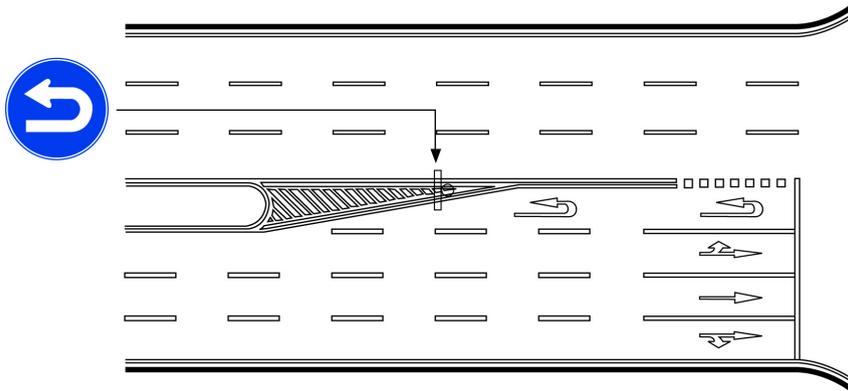
[그림 5-11] 좌우회전(310) 표지 설치 예시도

## 6. 유턴(311)

### 기 준

- 차량이 유턴해야 할 장소나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단, 광로에서 중앙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중앙에 설치한다.
- 특정차종 또는 특정차종을 제외한 통행방법을 지시할 경우, 보조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해설** 도로에서 진행방향을 반대로 허용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서 유턴할 장소를 지시하는 표지로서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도로의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한다. 유턴을 해야 할 지점을 지정할 때 유턴구역선(502) 노면표시를 설치해야 하나, 비포장도로에서는 유턴 지시표지만 설치한다. 특정차종이나 특정차종을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 통행방법을 지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표 5-2>, 유턴구역선(502) 노면표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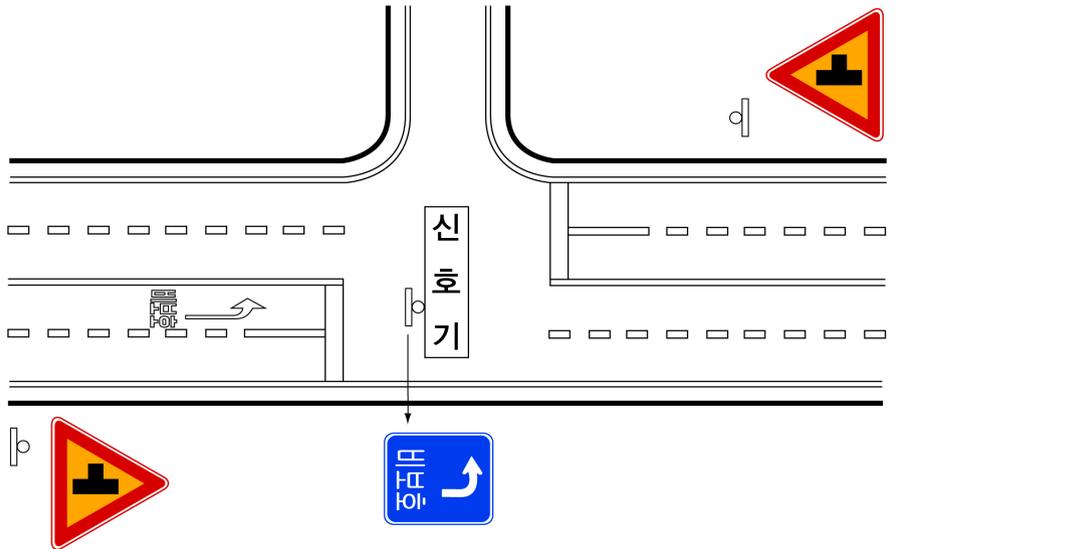
[그림 5-12] 유턴(311) 표지 설치 예시도

## 7. 비보호좌회전(329)

### 기 준

- 신호교차로에서 차량의 좌회전을 허용해야 할 장소나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해설** 신호교차로에서 주도로의 교통량이 적고 차와 차의 간격이 충분히 넓어서 대향차량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지점에서 설치한다. 그러나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많아서 주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설치위치는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차량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비보호좌회전 지시표지는 공학적 판단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에도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차량신호기 설치기준 참조).



[그림 5-13] 비보호좌회전(329) 표지 설치 예시도

## 8. 양측방통행(312)

### 기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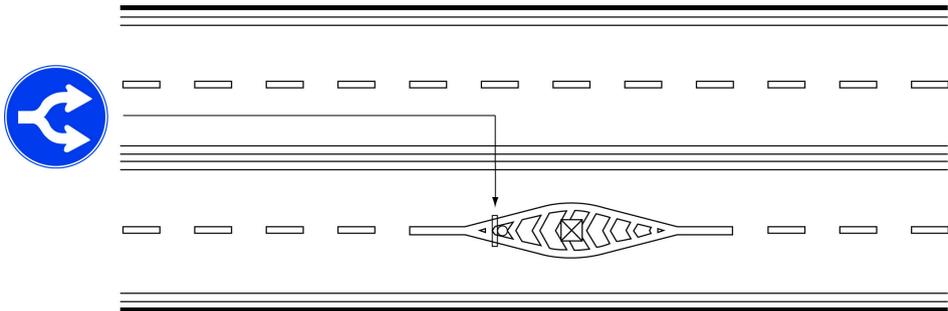
- 차량이 양측방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이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차량이 직진을 계속할 수 없고 차로변경 등을 하여 양측으로 통행을 해야 할 경우에 설치해야 한다. 양측방통행의 지시의미는 도로의 우측 또는 좌측 어느 곳으로든 통행을 하여도 좋다는 허용을 나타낸다. 따라서 양측방 통행 지시표지는 동일방향으로 차로가 분리되거나 또는 입체도로로 분리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의 통행방향이 반대방향이거나 도로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양측방통행 지시표지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설치위치 및 장소는 양측방으로 통행이 분리되는 지점이나 장소에 설치하며, 표지가 잘 보이는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즉, 차량의 진행방향이 동일방향으로 분리되는 고가도로, 지하도로, 입체교차로 입구 등과 같은 장소에서 상하 또는 좌우로 분리되는 입구에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주의를 요하는 장소나 지점에는 지시표지 이외에 전방 30~200m 지점에 양측방통행(312) 주의표지를 추가적으로 설치한다.

특정차종을 방향별로 지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양측방통행 지시표지를 사용해선 안되며, 반드시 방향별로 우측면통행(313) 또는 좌측면통행(314) 지시표지와 특정차종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우측면통행(313) 및 좌측면통행(314) 지시표지 참조).



[그림 5-14] 양측방통행(312) 표지 설치 예시도

## 9. 우측면통행(313) 및 좌측면통행(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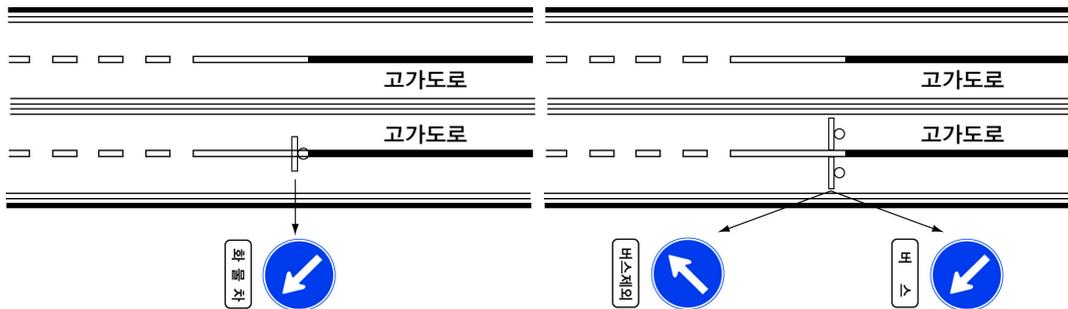
### 기 준

- 차량이 도로의 우측 또는 좌측면을 통행하여야 할 장소나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우측면 통행표지는 도로우측에 설치해야 한다.



- 좌측면 통행표지는 도로좌측 또는 중앙에 설치해야 한다.
- 특정차종 또는 특정차종을 제외한 통행방법을 지시할 경우, 보조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예** **설** 도로 파손 및 공사 등으로 인해 현재의 차로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고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이용자에게 도로의 우측면(또는 좌측면) 통행을 지시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지점에 설치한다. 통행하여야 할 장소나 지점에서 우측면통행 지시표지는 도로의 우측에, 좌측면통행 지시표지는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특정차종에 대하여 지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차종을 표시한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또한 동일지점에서 각 방향별로 특정차종에 대한 통행방법을 지시할 경우에 한해서 우측면통행과 좌측면통행 지시표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그림 5-15] 우측면통행(313) 및 좌측면통행(314) 표지 설치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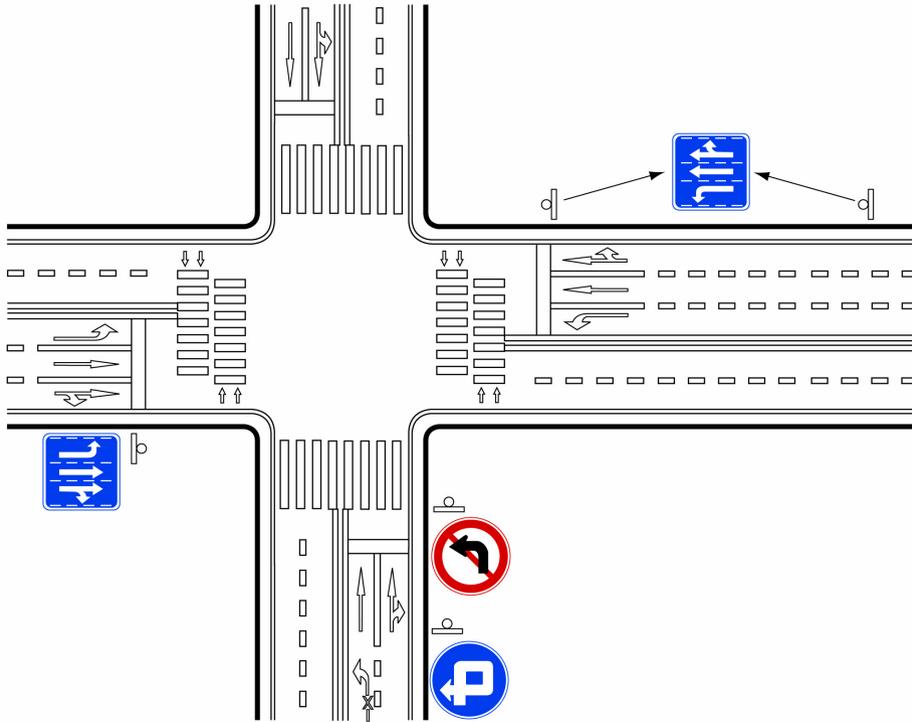


## 10. 진행방향별통행구분(315) 및 우회로(316)

### 기 준

- 도로이용자에게 차량의 차로별 통행방법(좌회전, 직진 또는 우회전)을 지시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차량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도로이용자에게 우회하도록 지시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도로이용자에게 차로별 통행방법을 지시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지점에서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해야 한다.

**해설** 차량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또는 도로의 효율을 위해 각 차로에 따라 차량의 통행을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차로별 통행방법을 진행방향별 지시표지를 설치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지시해야 한다. 또한 좌회전이 금지된 구간이나 장소에서는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도로이용자에게 우회하도록 지시하여 불법적인 통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설치위치는 도로이용자가 적절하게 차로를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설치장소는 진행방향별 통행구분은 도로 우측에 설치하며, 우회도로는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한다.



[그림 5-16] 진행방향별통행구분(315), 우회로(316) 표지 설치 예시도

## 11. 통행우선(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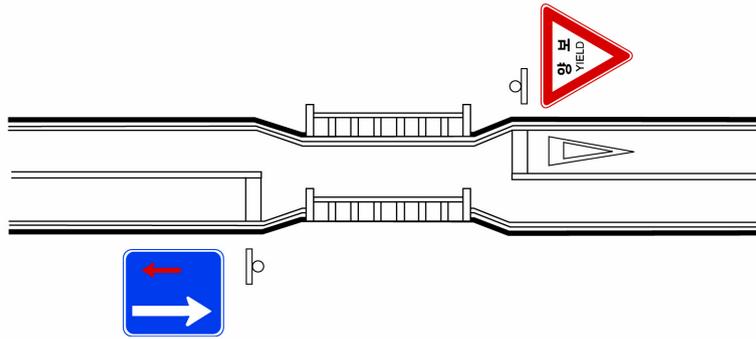
### 기 준

- 도로폭이 좁아 차가 한 대씩 교대로 통행하는 도로구간에서 도로폭이 좁아지는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 백색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예** **설** 도로폭이 좁아지는 도로구간에서 우선권이 있는 방향에 설치하며, 양보의 의무가 있는 방향에는 도로폭이 좁아지는 지점에 양보(228)표지



와 양보(522)노면표시를 설치하여 우선적으로 양보하여야 함을 명확히 한다.



[그림 5-17] 통행우선(332) 표지 설치 예시도

#### 제 4 절 | 일방통행 지시

일방통행이란 차마의 통행이 일방향으로만 지정되고 일방통행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도로의 일방통행을 지시한다.

#### 기 준

-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도로의 입구 또는 시작지점에 일방통행 지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도로의 출구 또는 끝나는 지점에 진입금지 규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해설** 일방통행은 도로교통법 제13조 2항(차로의 설치 등) “차마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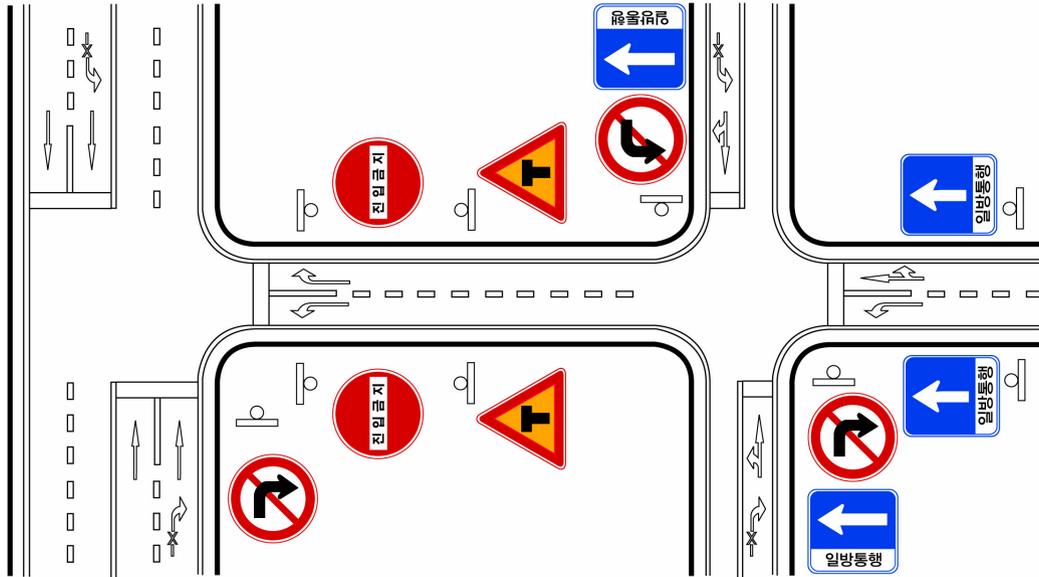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바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된 도로에서 차마는 지시된 방향으로만 통행을 해야 하고, 도로책임자는 도로이용자에게 일방통행 도로임을 알려야 하며, 일방통행 도로로 잘못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즉, 일방통행도로의 입구에는 일방통행 지시표지를 설치하며, 일방통행도로의 출구에는 일방통행이 끝남을 알려야 한다. 또한 일방통행이 끝나기 전에 2방향통행(115) 주의표지를 설치하여 도로이용자가 차로를 적절히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일방통행 도로의 출구에는 잘못하여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측면에 진입금지(211) 규제표지를 설치하고 교차하는 도로의 각 방향에서 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방향별로 회전금지(212, 213, 214) 규제표지를 설치한다. 일방통행 지시표지의 의미는 지시된 방향으로 일방통행 하여야 한다는 강요가 아니라 일방통행 도로의 위치와 교통류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시표지이다. 일방통행도로의 지정 또는 운영은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 1. 일방통행(326, 327, 328)

### 기 준

-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 내의 필요한 지점이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구간이 길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병설한다.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양측에 설치해야 한다.



[그림 5-18] 일방통행(326, 327, 328) 표지 설치 예시도

**해설**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와 구간 내의 필요한 지점 또는 장소에서 좌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일방통행도로 입구의 정면에는 일방통행(328)을, 좌측 방향에는 일방통행(327)을, 우측 방향에는 일방통행(326) 지시표지를 설치하여 일방통행 도로에 진입하는 도로이용자에게 일방통행 도로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일방통행 출구의 양측에는 반드시 진입금지(211) 규제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또한 좌회전할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는 좌회전금지(214), 우회전할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는 우회전금지(213) 규제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진입금지(211), 우회전(213) 또는 좌회전금지(214) 참조). 일방통행 구간이 길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병설한다. 또한,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접근로 방향에서 [그림 5-18]과 같이 방향에 따라 적합한 일방통행(326, 327) 표지만 설치한다. 그러나 일방통행 입구에 교차로의 접



근로 방향에 대하여서는 일방통행(326, 327, 328) 표지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 제 5 절 | 보행자 지시

보행자 지시는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제9조(행렬 등의 통행), 제10조(도로의 횡단),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에게 통행방법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즉,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의하여 보행자전용도로 지정, 제10조에 의해 횡단보도 지정, 제11조에 의해 어린이 등의 보호를 지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방법을 지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하는 보행자 지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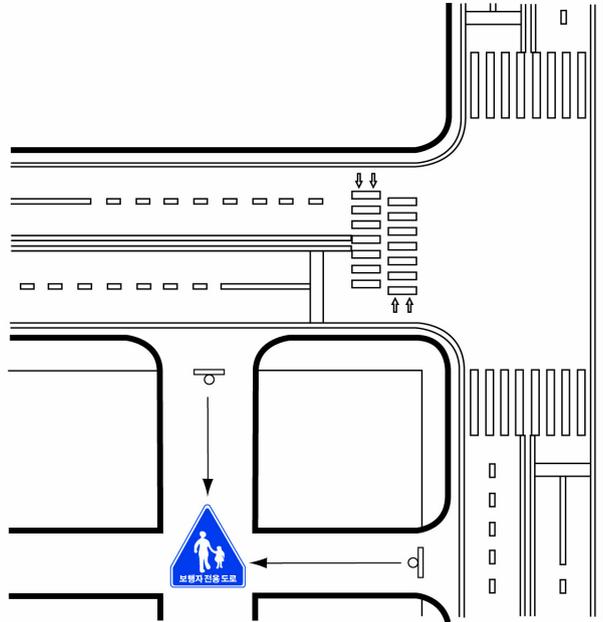
### 1. 보행자전용도로(321)

#### 기 준

- 보행자 전용도로의 입구 또는 기타 필요한 구간에 설치해야 한다.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병설한다.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중복하여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해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에 의해 지정된 보행자전용도로의 입구 또는 기타 필요한 구간에 해야 한다.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시작지점에는 구간시작(417), 끝나는 지점에는 구간끝(419)의 보조표지를 병설한다.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때에는 교차로 부근에서 보행자전용도로 입구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보행자 전용도로 지시표지를 중복하여 설치한다.



[그림 5-19] 보행자전용도로(321) 표지 설치 예시도

## 2. 횡단보도(322)

### 기 준

-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횡단보도를 설치한 곳에서 필요한 지점이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보행자 및 차량의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횡단보도(532, 533) 노면표시만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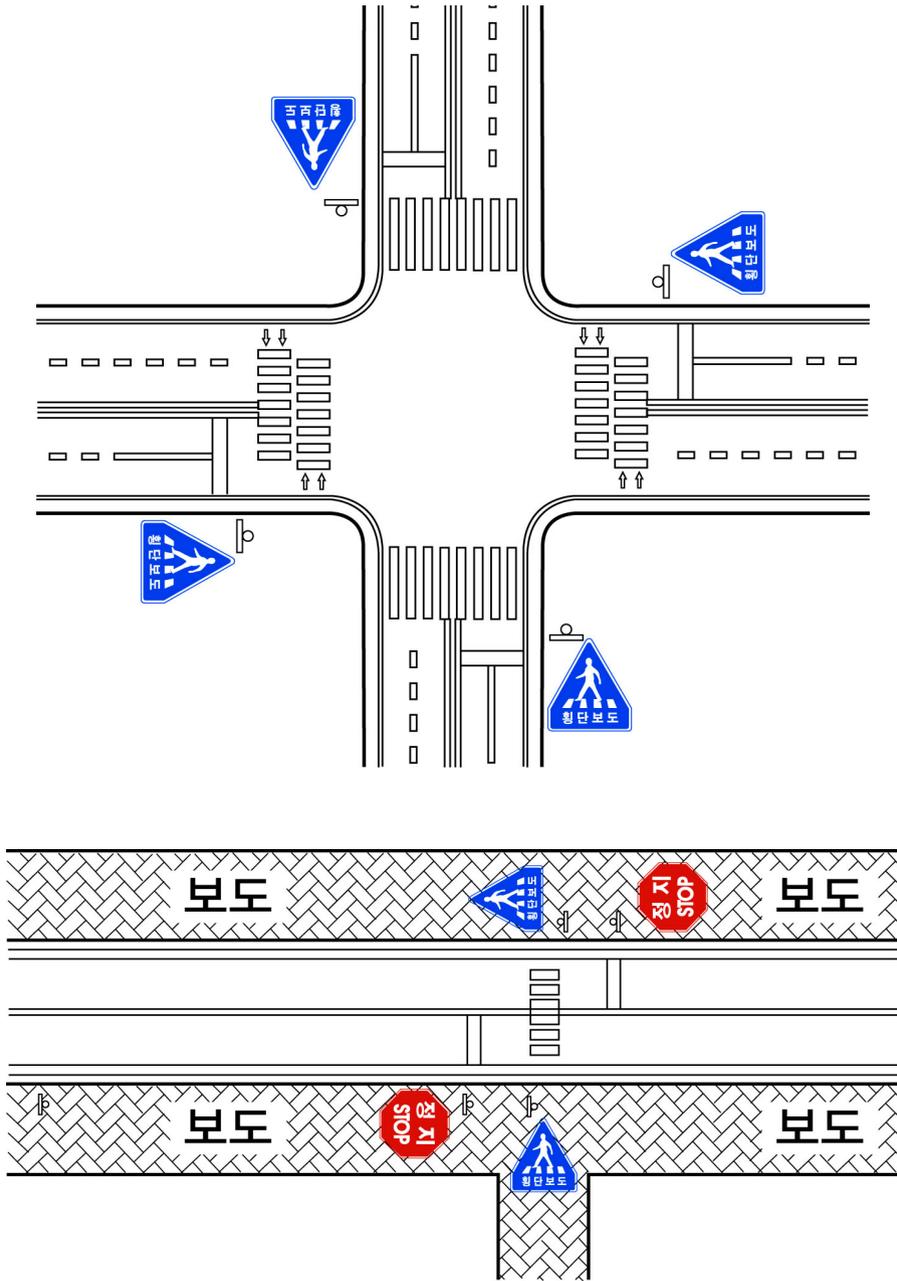
- 육교, 지하도부근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이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행자의 안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해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와 제10조(도로의 횡단)에 의해 보행자는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는 <표 5-3>에 따라 횡단보도 지시표지와 횡단보도(532, 533) 노면표시가 설치되어야 하며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비포장도로에는 반드시 횡단보도 표지를 설치한다. 단, 횡단보도 폭(424) 보조표지를 함께 병설해야 한다.
- 횡단보도는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 내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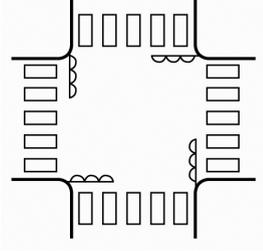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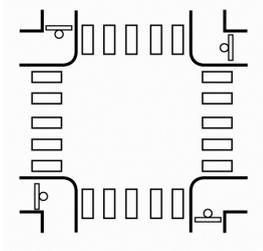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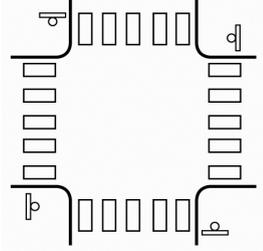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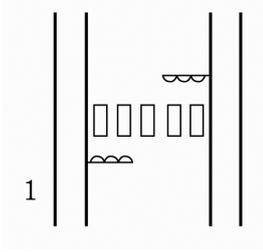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 따르면, 횡단보도 표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표지로 규정하고 있다. 교통통제가 없는 곳에서 차량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차량방향으로 일시정지(227) 규제표지 혹은 일시정지(521)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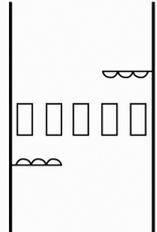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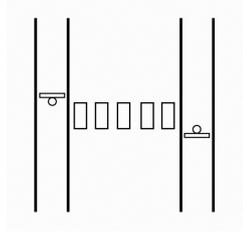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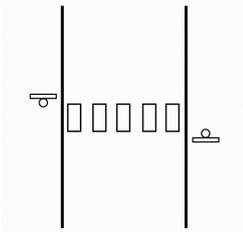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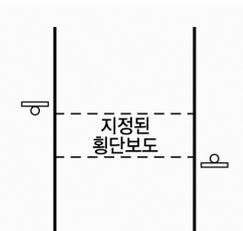


[그림 5-20] 횡단보도(322) 표지 설치 예시도



〈표 5-3〉 횡단보도(322) 표지의 설치 예시도

포장 유무	설치장소		교통 안전 표지	그 림
	교차로 유 무	신호기 유 무		
포 장 장	교 차 로 부 근	있  음	불 필 요	페인트 도색  
		없  음	필  요	페인트도색 (보도가 있을 때)  
				페인트도색 (보도가 없을 때)  
				보도 구분 없음  

설치장소			교통 안전 표지	그 림	
포장 유무	교차로 유 무	신호기 유 무			
포 장	교 차 로	있  음	불 필 요	보차도 구별 없음	
		없  음	필 요	보차도 구별있음	
포 장	교차로 아닌 도로	신 호 기 유 무 에 관 계 없 음	필 요	보차도 구별없음	
		교차로 또는 교차로 아닌 도로	없  음	요	보차도 구별없음
비 포 장	교차로 또는 교차로 아닌 도로	없  음	요	보차도 구별없음	

주) 비포장 도로에는 반드시 횡단보도 쪽의 보조표지를 병설해야 한다.



### 3. 노인보호 및 어린이보호(323, 324)

#### 기 준

-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양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학교 및 유치원 등에서 노인 및 어린이 통행로가 있을 경우에는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일정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권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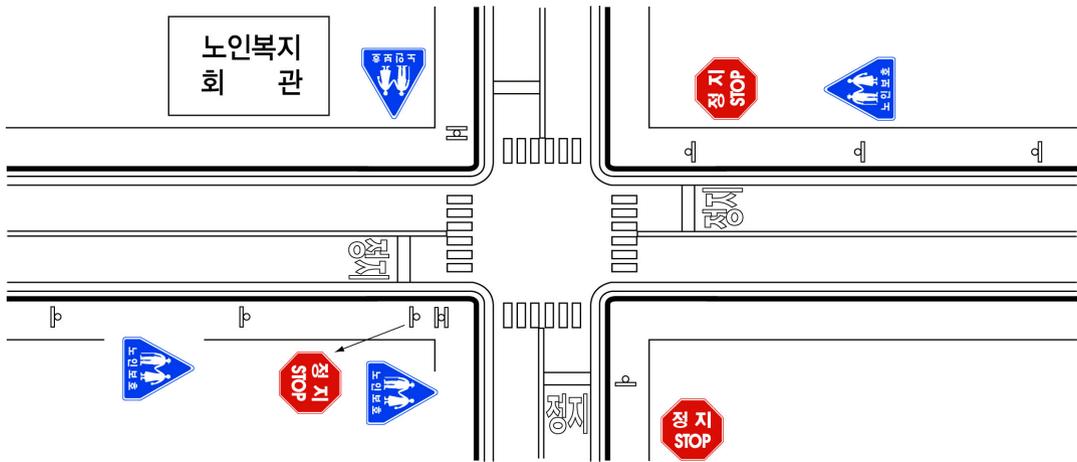
- 노인보호구역, 학교, 유치원 등에서 노인 및 어린이 통행로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조사 후 전문가의 설계를 거쳐 권역설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이 겹치는 장소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업무편람에 따른다.

**예** **설**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의 통행로가 있는 경우에는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학교 및 유치원 등의 통행로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학교의 출입구로부터 300m 범위내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정하나, 주출입구에서 통행로가 긴 경우는 1km 범위까지 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 보호 지점 또는 구역의 시작 및 끝에는 노인 및 어린이보호 표지를 도로 양측에 설치한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시간과 구간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간(405) 및 구간(417, 418, 419, 429)의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사례는 「노인보호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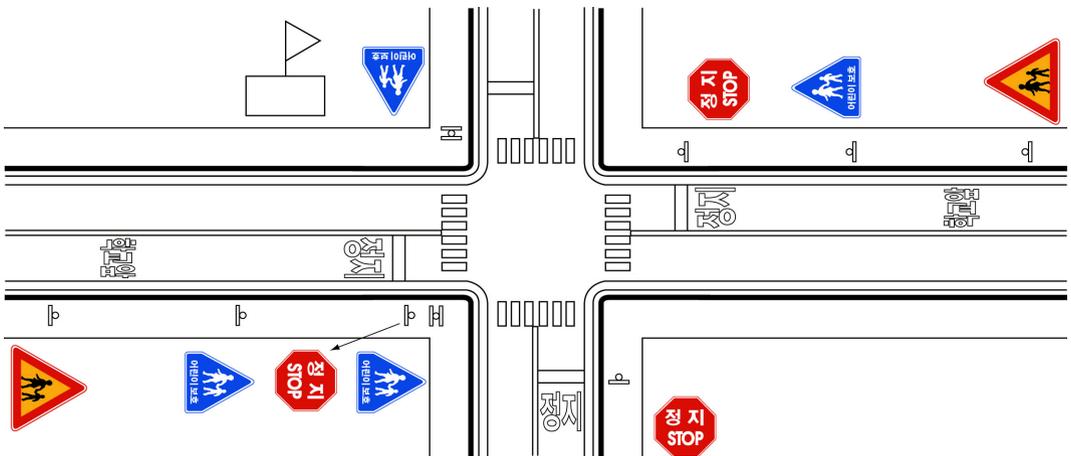


사업 업무편람』을 참조한다.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이 겹치는 장소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이 복잡해지므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으로 일원화 하여 시설설치를 단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5-21] 노인보호(323) 표지 설치 예시도



[그림 5-22] 어린이보호(324) 표지 설치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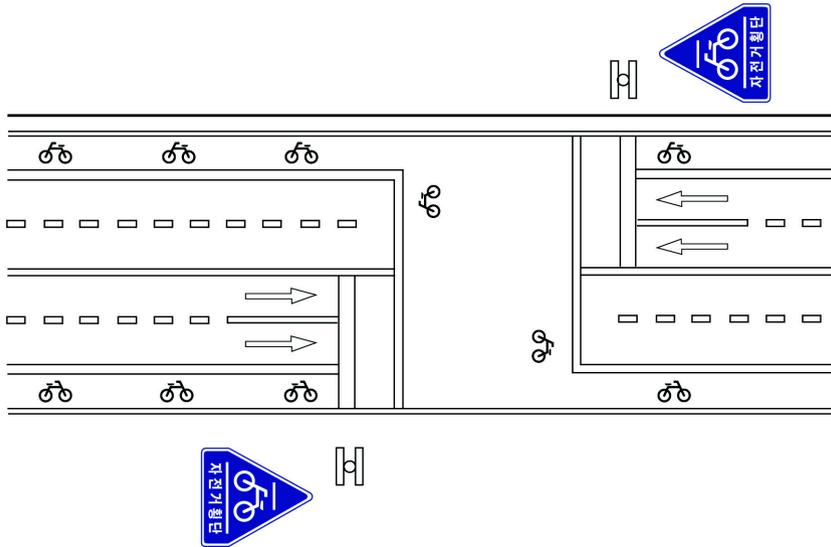
## 4. 자전거횡단도(325)

### 기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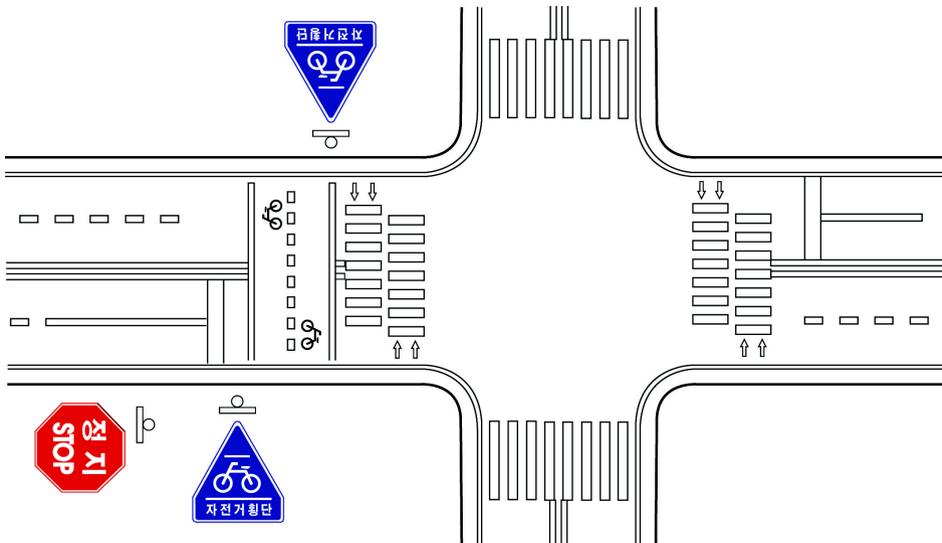
- 자전거 횡단이 가능한 것을 알리거나 지시하기 위해 설치해야 한다.
- 자전거 횡단도를 설치한 지점이나 장소에서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 자전거 이용자가 차도를 빈번하게 횡단하는 지역이나 장소에서 횡단하는 자전거 이용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자전거횡단표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해설** 자전거횡단도 지시표지의 의미는 자전거 횡단이 가능한 지점이나 장소를 자전거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지시하기 위해 설치한다. 설치장소는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된 곳이나 차도를 빈번하게 횡단하는 자전거 이용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된 장소나 필요한 지점에서 도로 양측에 설치한다. 보행자 횡단보도와 함께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따른다(횡단보도 설치 및 [그림 5-24] 참조).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자전거횡단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자전거 횡단도(노면)만 설치한다.



[그림 5-23] 자전거횡단도(325) 표지 설치 예시도(1)



[그림 5-24] 자전거횡단도(325) 표지 설치 예시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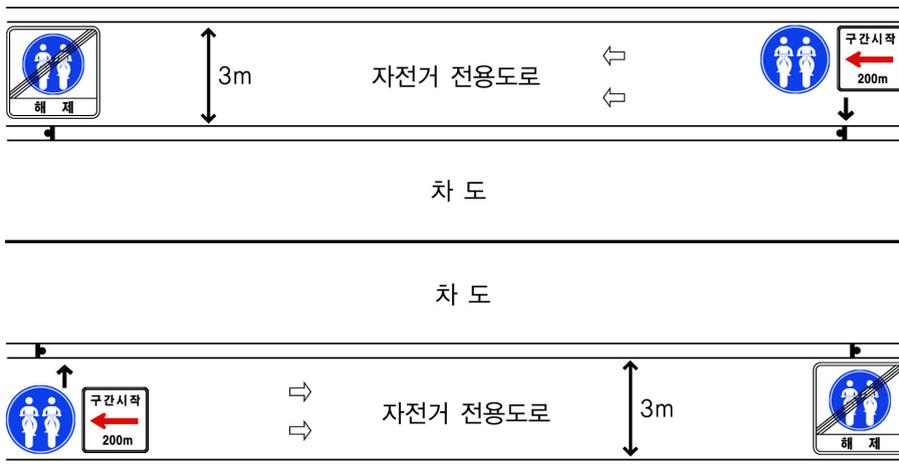


## 5. 자전거병진(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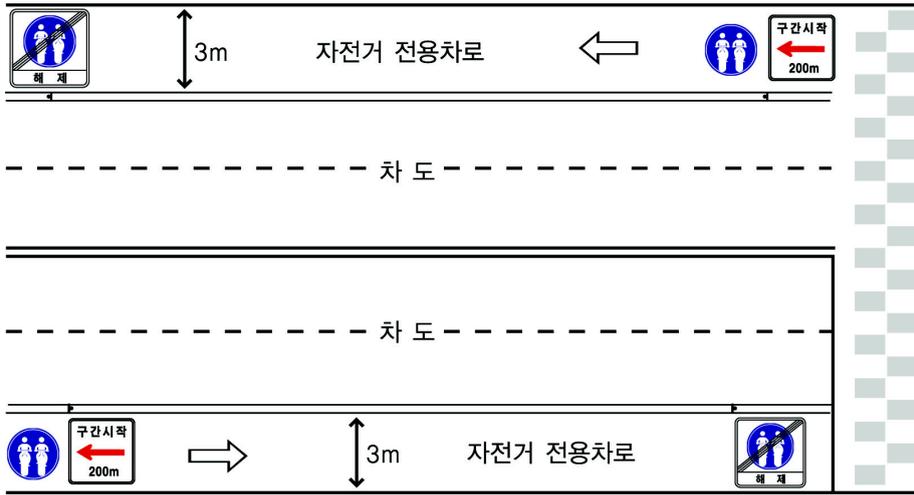
### 기 준

- 자전거가 2열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알리거나 지시하기 위해 설치 한다.

**예** **설** 차로의 폭원이 넓어 자전거가 2열로 진행할 수 있는 도로에서 자전거가 2열로 병진할 수 있도록 지시해야 할 경우에 설치한다.  
구간을 제한하여 지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구간시작(417) 및 구간끝(419) 또는 시간(405) 등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그림 5-25]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병진 예시도



[그림 5-26]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자전거병진 표지 예시도

## 제 6 절 | 기타 지시

### 기 준

-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주차장 지정 등을 지시하거나 허용하는 장소 또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해설**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에는 정차 및 주차에 대한 지시를, 도로에서 도로이용자에게 기타사항에 관해 지시할 때에는 반드시 기타 지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1. 주차장(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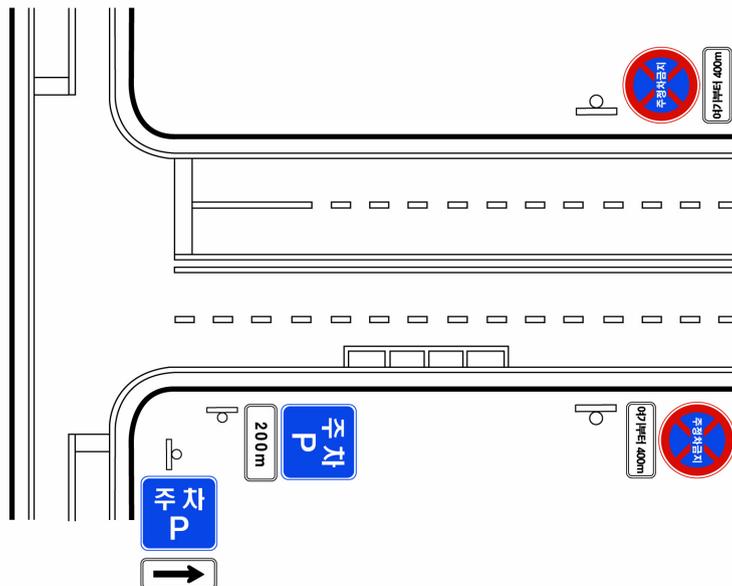
### 기 준

-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에 설치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병설한다.

**예** **설**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에 설치한다.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도로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차할 하고자 하는 도로이용자에게 주차에 대한 제한사항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구간시작(417) 및 구간끝(419) 또는 시간(405) 등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또한 주차장이 부근인 경우에는 우방향(420), 좌방향(421), 전방(422) 등의 보조표지를 사용하여 주차장 진입을 안내할 수 있다.



[그림 5-27] 주차장(319) 표지 설치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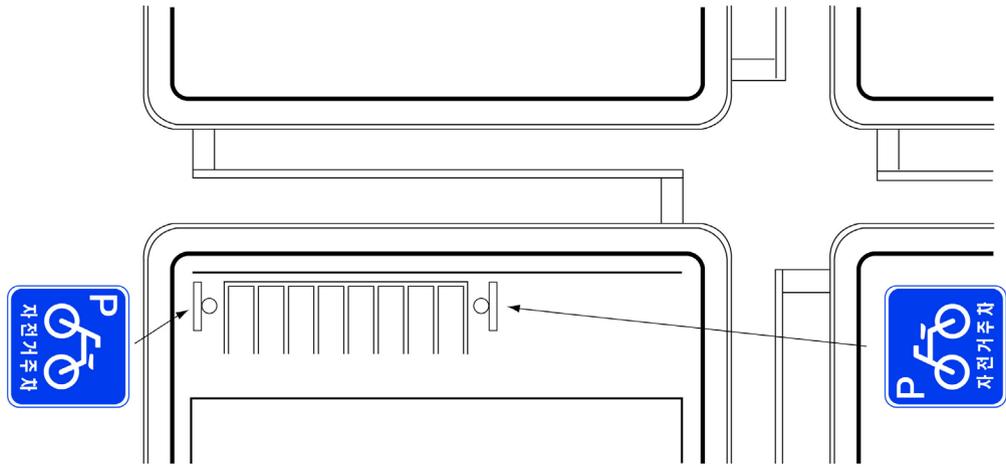
## 2. 자전거주차장(320)

### 기 준

-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에 설치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병설한다.

**예** **설**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에 설치한다.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차할 하고자 하는 도로이용자에게 주차에 대한 제한사항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구간시작(417) 및 구간끝(419) 또는 시간(405) 등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그림 5-28] 자전거주차장(320) 표지 설치 예시도

**제1절** 개요

**제2절** 거리, 구역, 구간

**제3절** 일자, 시간

**제4절** 본표지 설명

**제5절** 해 제

**제6절** 기타



## 제 6 장

## 보조표지



## 제 1 절 | 개 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에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로 정의되어 있다. 보조표지는 본표지의 의미를 보완 또는 첨가하거나 설명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이해를 돕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조표지는 반드시 본표지와 함께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표지 단독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보조표지의 내용은 본표지가 나타내지 못하는 정보(주의, 규제 및 지시의 세부사항)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본표지의 내용을 중복하여 표시하거나 본표지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표시해서는 안된다.

## 기 준

- 표지의 크기, 색상, 문자체 등의 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과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본표지에 있는 위해요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호나 문자를 제작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 표지에 사용하는 용어는 모든 도로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설치각도는 본표지와 동일해야 한다.
- 보조표지가 본표지에 병설될 때, 종형인 경우는 본표지의 하단에, 횡형인 경우는 우측에 위치하도록 한다.



**해설**

보조표지는 거리, 구간, 시간, 차종, 방향, 기타 필요한 정보를 나타낼 경우에 사용한다. 보조표지의 규격 및 색상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 의거하여 제작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보조표지는 필요한 사항을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내용이 본표지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보조표지에 사용하는 문자정보는 가급적 총 10자를 넘지 않도록 하고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지켜야 한다. 필요시 2열로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보조표지에 자주 사용하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사고 잦은 지점
- 우회로
- 화물차, 노선버스 허용, 승용차 제외
- 공사중
- 비상전화
- 안개지역, 결빙주의, 폭설주의, 폭우주의

보조표지는 함께 설치되는 본표지의 종류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 예를 들면, 도로공사중(135) 주의표지에 통행주의(415, 속도를 줄이시오) 보조표지를 사용한 경우와 서행(226) 규제표지에 공사중 보조표지를 사용한 경우에서 이 둘의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공사중 주의표지는 공사구역을 통과하므로 속도를 줄여서 통과하라는 주의의 의미이며, 후자는 전방의 공사지역이 있어 사고위험이 있으니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주행하라는 강요이다.



## 제 2 절 | 거리, 구역, 구간

### 기 준

- 본표지로부터 위해요소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본표지의 영향이 미치는 구역 또는 구간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거리 또는 구역의 보조표지는 본표지의 위해요소나 영향이 미치는 지점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한다. 즉, 위해요소까지의 거리나 위해요소의 영향이 미치는 구역 또는 구간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사용한다. 본표지의 내용, 위치 및 장소에 따라 적합한 보조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 1. 거리(401, 402, 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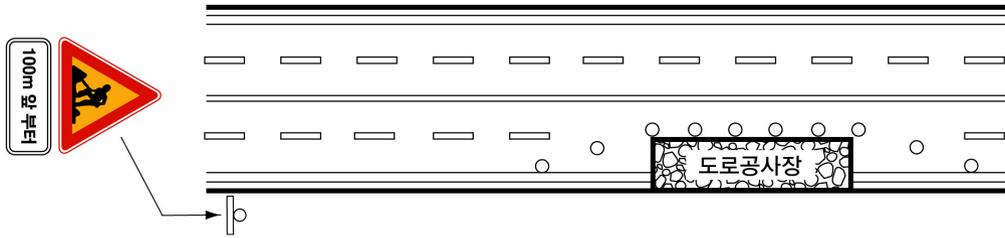
#### 기 준

- 본표지가 표시하는 시설물 또는 장소의 시작점, 구간내 또는 끝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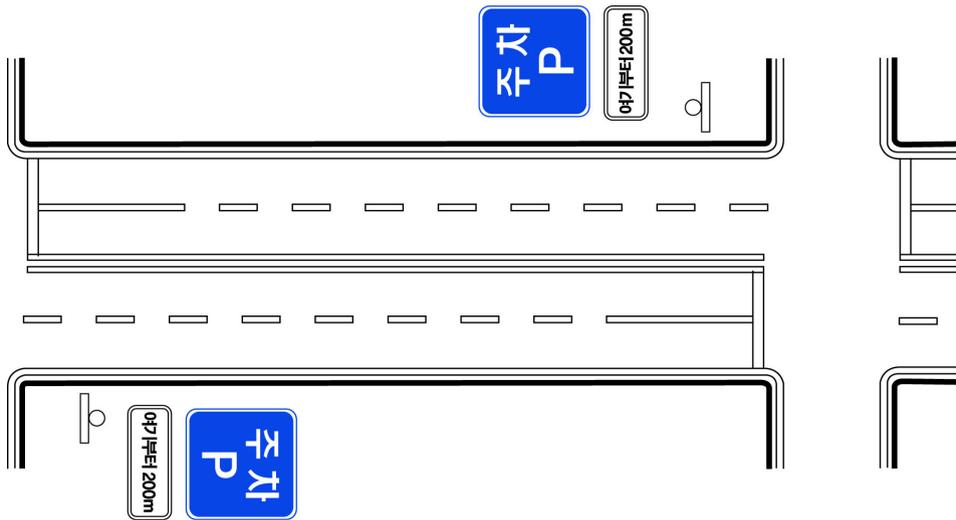
**해설** 본표지가 표시하는 시설물 또는 장소까지의 거리, 영향이 미치는 구간내 거리, 그리고 구간이 끝나는 거리 등을 나타내고자 할 때 본표지와 함께 설치하는 보조표지이다. 주의표지와 함께 설치하는 거리 보조표지의 의미는 예고거리를 나타내며, 규제표지와 함께 설치한 거리 보조표지는 규제거리를 나타낸다. 또한 지시표지와 함께 설치하는 거리 보



조표지의 의미는 시행시점까지 예고거리를 나타낸다. 보조표지의 설치 각도는 본표지와 동일한 방향으로 설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본표지가 차량의 진행방향과 30°~90°로 설치될 때에만 함께 설치한다.



[그림 6-1] 거리(401) 표지 설치 예시도



[그림 6-2] 거리(402) 표지 설치 예시도



## 2. 구역(403), 구간(417, 418, 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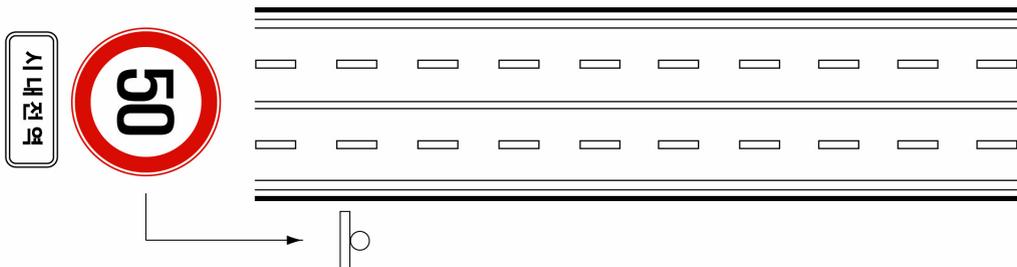
### 기 준

- 본표지가 표시하는 내용의 영향이 미치는 구역 또는 구간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설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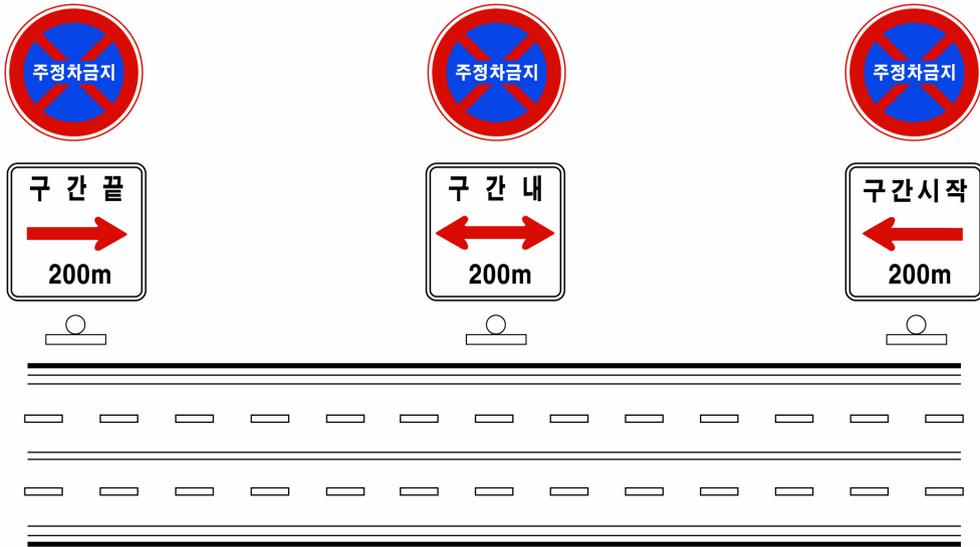
### 권 장

- 규제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규제, 지시가 행하여지는 내용을 표시할 때에는 구간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해설** 본표지가 표시하는 내용의 영향이 미치는 구역 또는 구간을 도로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일정구역 또는 구간에 대해서 규제 및 지시를 할 때에는 구역, 구간시작, 구간내, 구간끝 또는 해제(427) 등의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구간을 표시하는 보조표지는 정차·주차금지(218), 주차금지(219) 등과 같은 규제표지의 설치각도가 차량의 진행방향과 45° 이하인 경우에 한해 설치하여야 한다. 반면에 본표지 설치각도가 차량의 진행방향과 45°~90°인 경우에는 거리(402)와 해제(427) 보조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6장2절1항 거리 참조).



[그림 6-3] 구역(403) 표지 설치 예시도



[그림 6-4] 구간시작, 구간내, 구간끝(417, 418, 419) 표지 설치 예시도

### 제 3 절 | 일자, 시간

#### 기 준

- 본표지가 적용되는 일자, 시간을 명시하고자 할 때에 사용한다.

**해설** 규제 또는 지시사항이 적용되는 일자나 시간을 도로이용자에게 알리고자 할 경우에 설치한다. 즉, 정해진 일자나 시간에 한해서 규제 또는 지시를 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규제 및 지시표지에 일자, 시간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본표지의 내용과 위치 및 장소에 따라 적합한 보조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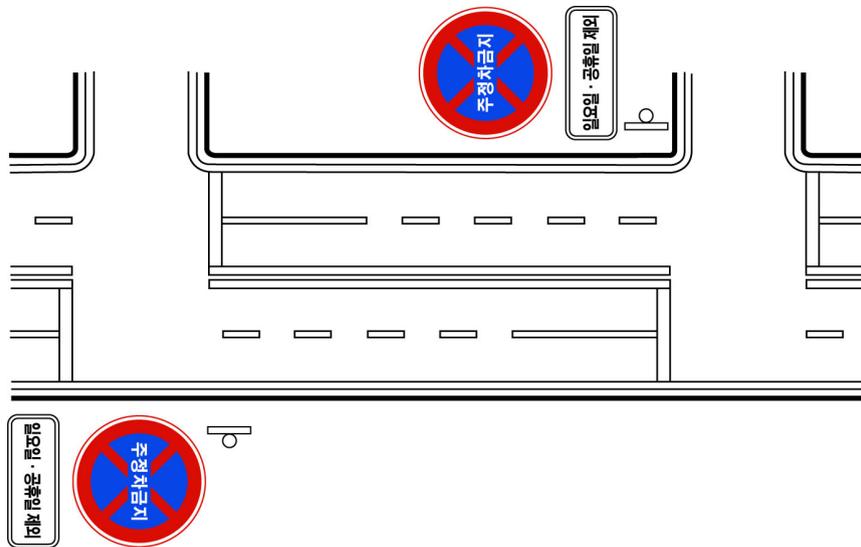


## 1. 일자(404)

### 기 준

- 지정된 요일 또는 일자에 한해서 본표지의 내용이 적용될 경우에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예** **설** 지정된 요일 또는 일자에 한하여 규제에 따라야 하거나 규제받지 않는 일자를 도로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일자 보조표지는 일반적으로 시간(404, 405) 보조표지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거리(401, 402), 구역(403) 또는 구간(417, 418, 419) 등의 보조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그림 6-5] 일자(404) 표지 설치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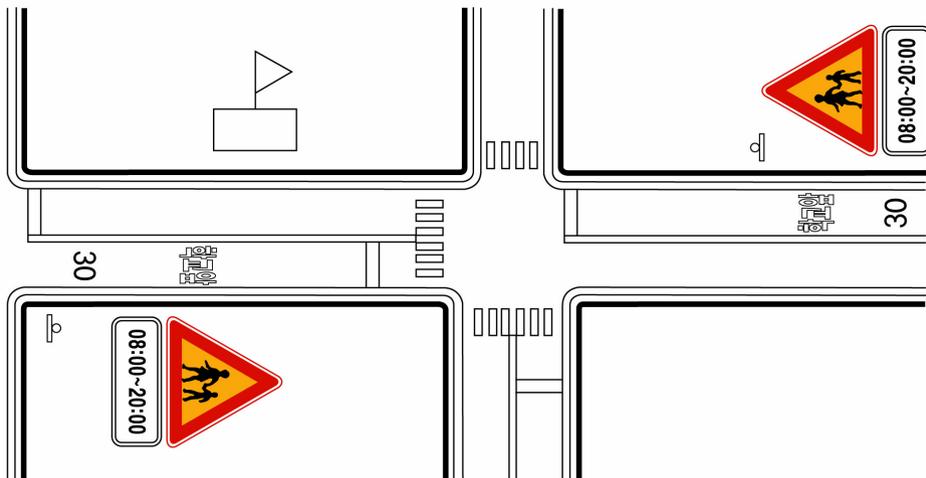
## 2. 시간(405, 406)

### 기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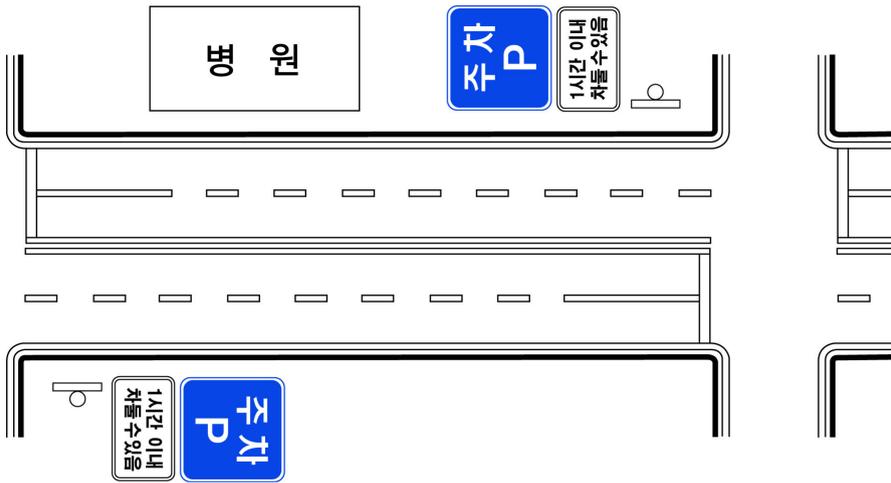
- 지정 및 특정 시간 또는 기간에 한해서 본표지의 내용이 적용될 경우에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 지정 및 특정 시간이 24시간(1일)인 경우에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다.

**해설** 지정 및 특정 시간 또는 기간에 한하여 규제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하는 곳에는 시간 보조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자(404) 보조표지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거리(401, 402), 구역(403) 또는 구간(417, 418, 419) 등 보조표지와 함께 설치할 수도 있다. 단, 24시간 계속하여 표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시간 보조표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그림 6-6] 시간(405) 표지 설치 예시도



[그림 6-7] 시간(405) 표지 설치 예시도

## 제 4 절 | 본표지 설명

### 기 준

- 본표지의 의미를 도로이용자에게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부연 또는 상세한 설명을 할 때 설치해야 한다.

**해설** 다음과 같이 본표지의 의미를 부연 또는 상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착하며, 다음과 같다.

- 본표지만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불명확할 때
- 본표지만 설치시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
- 본표지가 나타내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할 때

본표지를 설명하는 보조표지는 본표지와 함께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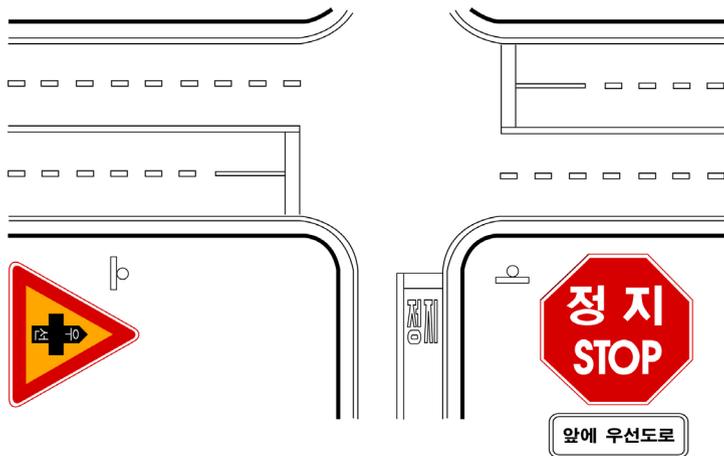
경우에 따라서는 설치하여 도로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로이용자가 본표지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강조 및 보충을 한다. 본표지를 설명하는 보조표지는 설치여부를 임의로 결정 하여서는 안되며, 공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 1. 전방우선도로(408)

### 기 준

- 우선도로와 교차하는 부도로의 규제표지에 병설한다.

**예 설** 신호기 없는 교차로의 부도로에서 전방 교차하는 도로가 우선도로임을 도로이용자에게 알려서 교차로를 통과할 때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하도록 할 때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전방우선도로 보조표지는 반드시 일시정지(227) 또는 양보(228) 규제표지와 함께 설치하여 도로이용자가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본표지의 의미를 강조한다.



[그림 6-8] 전방우선도로(408) 표지 설치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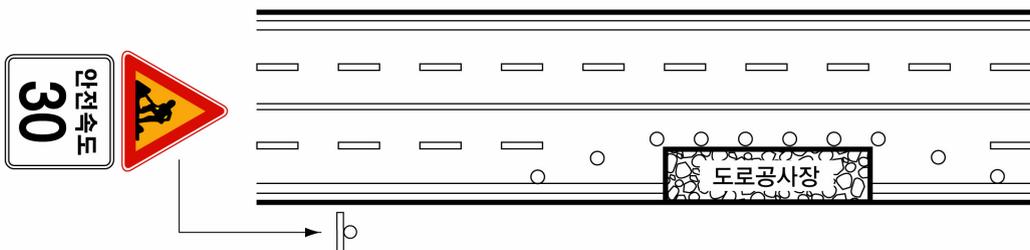


## 2. 안전속도(409) 및 통행주의(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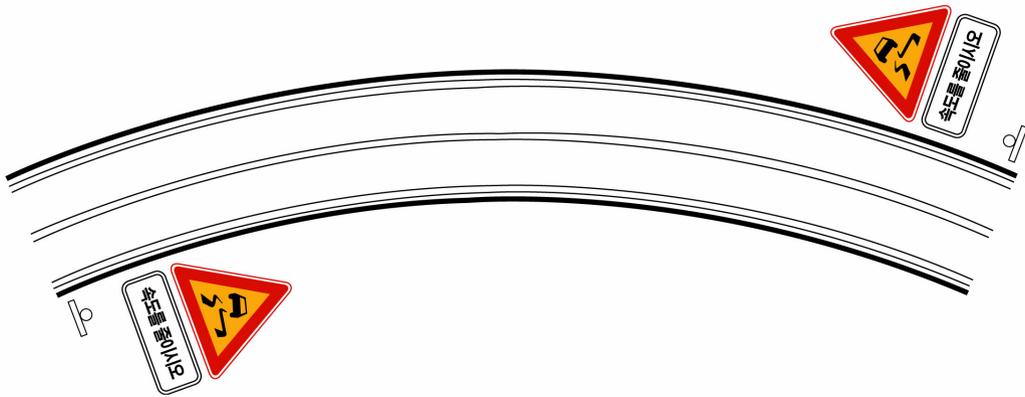
### 기 준

- 차량이 안전한 속도로 감속하여 통행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주의표지에 설치해야 한다.

**예** **설** 감속 또는 적절한 속도로 통행해야 할 위해요소가 있는 지점에서 주의 표지만으로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안전속도 보조표지는 주의표지의 내용을 공학적 판단을 고려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적절한 통행속도를 제시하는 보충 및 강조기능을 하는 반면에 통행주의 보조표지는 주의표지에 나타난 위해요소가 차량속도와 관계된다는 점을 도로이용자에게 설명하는 기능을 한다. 안전속도 보조표지는 강제성이 없고 주의표지와 함께 설치된다는 점에서 최고속도제한(224) 규제표지와 다르며, 통행주의 보조표지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서행(226) 규제표지와 구분된다.



[그림 6-9] 안전속도(409) 표지 설치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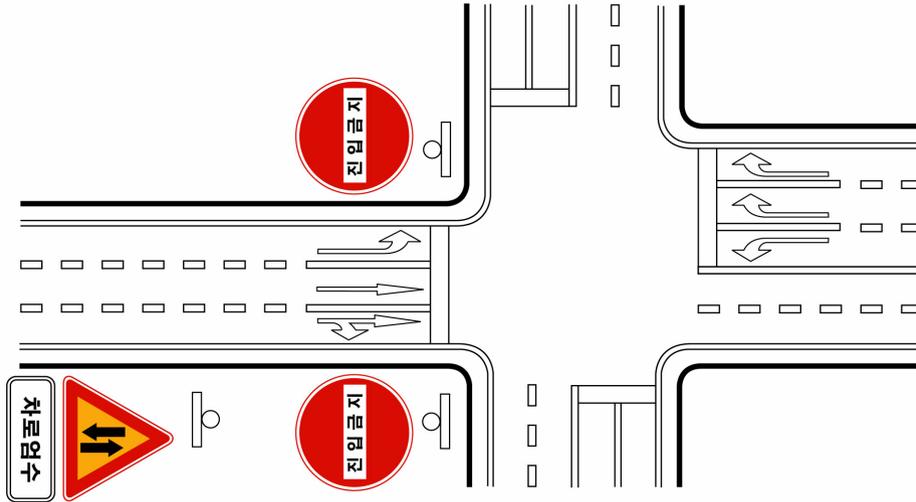
[그림 6-10] 통행주의(415) 표지 설치 예시도

### 3. 교통규제(412)

#### 기 준

- 주의표지와 함께 설치해야 한다.

**해설** 양방향통행이나 굽은도로 등과 같은 장소에서 주의표지와 함께 설치하여 주의표지가 표시하는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이용자가 취해야 할 행동을 제시할 때 설치한다. 즉, 도로이용자에게 주의환기와 주행차로를 이탈하거나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첨가기능을 한다. 따라서 교통규제 보조표지는 진로변경선(506) 노면표시와 함께 사용되어야 하며, 2방향통행(115), 굽은도로(113, 114), 미끄러운 도로(126) 등의 주의표지에 부착하여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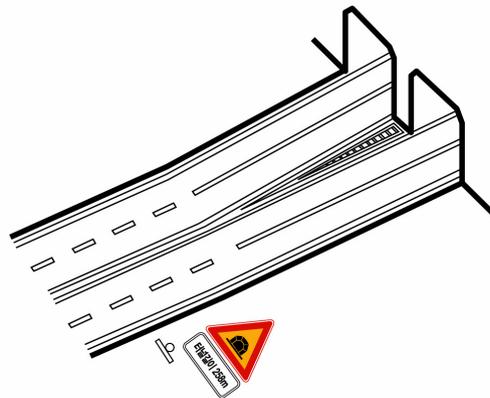
[그림 6-11] 교통규제(412) 표지 설치 예시도

#### 4. 표지설명(416)

##### 기 준

- 도로시설 또는 구조물 등에 관한 주의, 규제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하여 표지내용을 부연하거나 첨부할 곳에 설치해야 한다.

**해설** 도로시설 또는 구조물 등에 관한 주의, 규제 또는 지시 표지에 부착하여 표지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며, 본표지의 의미를 첨부하는 기능을 한다.



[그림 6-12] 표지설명(416) 표지 설치 예시도



예를 들면, 터널(138), 도로폭좁아짐(118) 등의 주의표지에 길이, 너비 등 보조표지를 부착하여 본표지의 내용을 부연하고 첨부한다.

## 5. 중량(423)

### 기 준

- 도로시설 또는 구조물의 주의, 규제, 또는 지시표지에서 중량의 제한, 보충, 설명 등이 필요한 곳에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교량, 고가도로, 임시도로에서 도로시설 및 구조물의 주의, 규제, 또는 지시표지에서 중량의 제한, 보충, 설명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곳에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본표지의 종류에 따라 중량 보조표지의 기능은 다르다. 즉, 본표지가 주의표지인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이유를, 규제와 지시표지의 경우는 제한 또는 금지를 나타낸다.

## 6. 노폭(424)

### 기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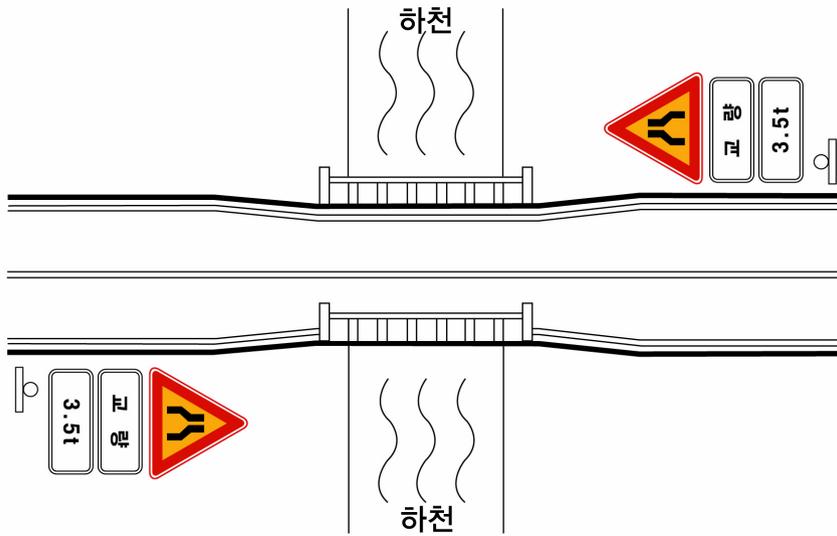
- 도로폭의 감소에 관한 주의, 규제, 지시표지에 부착하여 본표지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보충할 경우에 설치해야 한다.

**해설** 공사나 교량 또는 주변 도로시설 등으로 인해 도로의 폭이 갑자기 좁아지거나 교량, 합류도로, 진입연결로 등으로 인해 차로수나 차로폭이 감소할 경우 도로이용자에게 노폭 감소의 정도를 정확히 제공하여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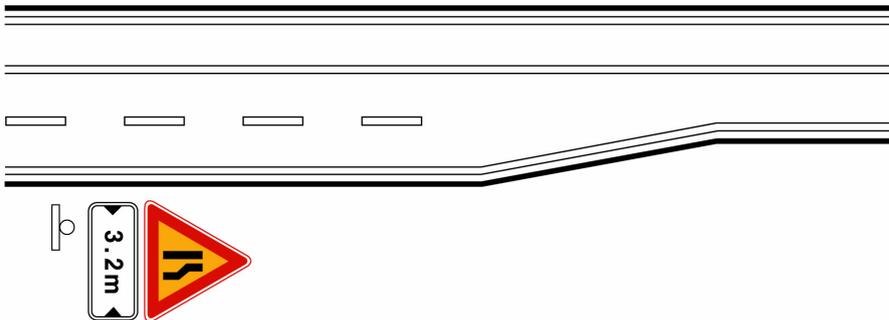


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할 때에 설치해야 한다.

노퍽 보조표지는 본표지에 부착하여 노퍽에 대한 정보를 첨부하는 기능을 한다.



[그림 6-13] 중량(423) 표지 설치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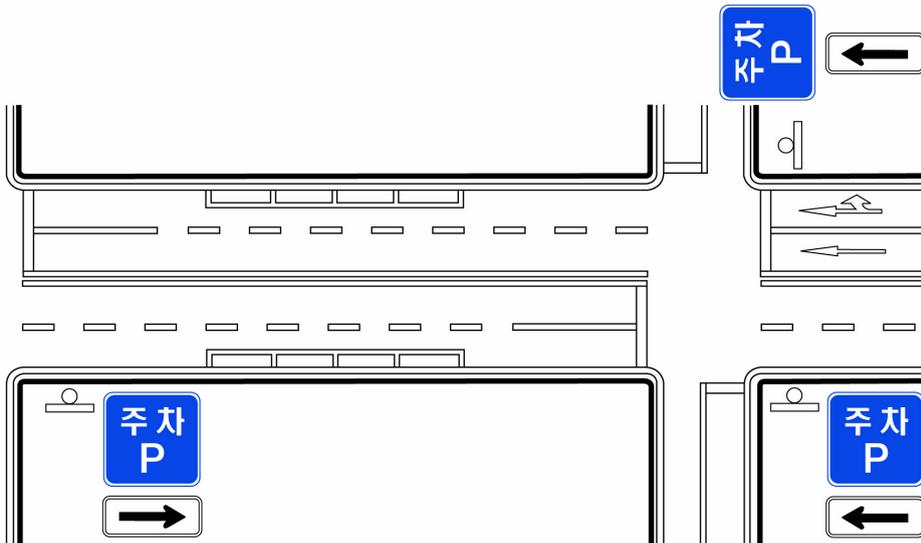
[그림 6-14] 노퍽(424) 표지 설치 예시도

## 7. 우방향, 좌방향 및 전방(420, 421, 422)

### 기 준

- 규제, 지시표지의 내용이 적용되는 노선,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방향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본표지에 부착하여 설치해야 한다.

**예** **설** 규제 또는 지시표지가 나타내는 방향을 표시하고자 할 때 함께 설치한다. 우측, 좌측 및 전방 등의 방향을 나타내는 보조표지로서 본표지가 적용되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할 때에 부착해야 한다. 본표지의 내용이 미치는 방향을 보충한다. 설치각도와 설치위치는 본표지에 동일하게 해야 한다.



[그림 6-15] 우방향, 좌방향, 전방(420, 421, 422) 표지 설치 예시도



## 제 5 절 | 해 제

### 기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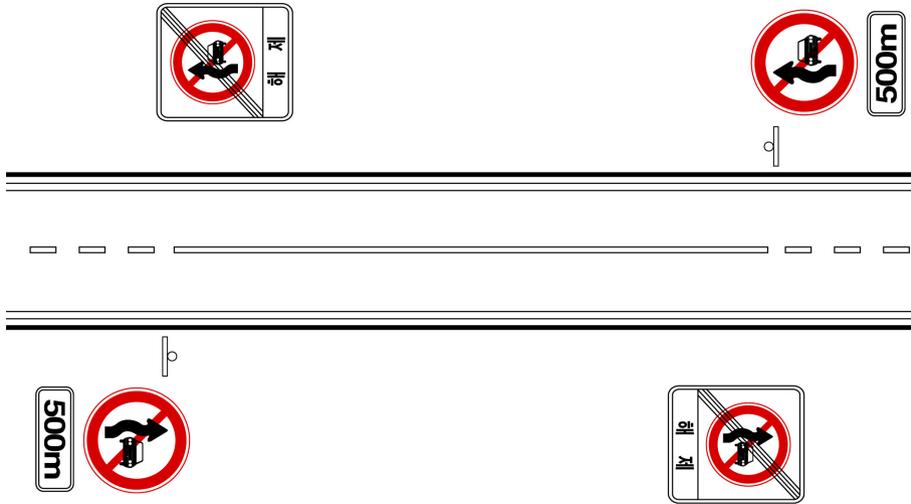
- 본표지의 교통통제가 해제되었음을 알리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 교통통제구간, 구역의 종점에 설치해야 한다.
- 본표지 설치각도가 진행방향의 45°~90°일 때 거리(402) 보조표지와 함께 설치해야 한다.
- 짧은 구간 또는 구역에서 교통규제 및 지시가 해제된 경우일지라도 본래의 규제, 지시로 환원하기 위해 해당 본표지를 설치한 경우 해제 보조표지는 생략해야 한다.
- 해제(427)표지는 특정 규제 또는 지시표지가 해제되었음을 나타내며, 해제되는 규제 또는 지시모양은 사선보다 얇게 한다.

###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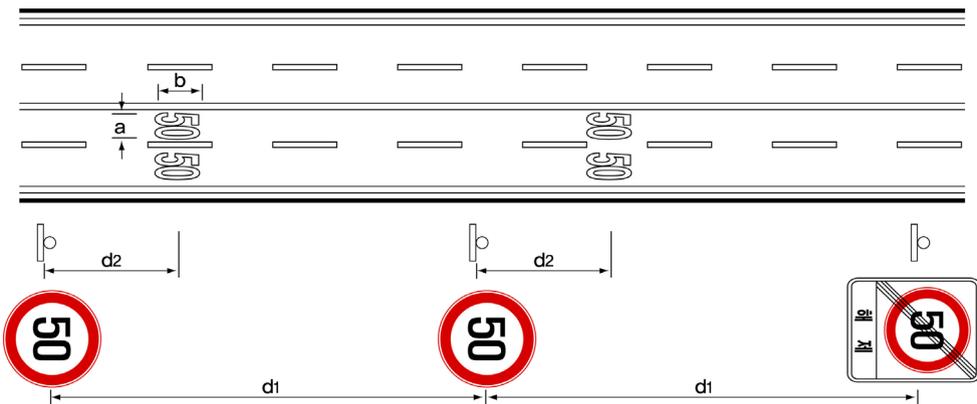
일부구간에 대해서 규제 또는 지시표지를 사용하여 교통통제 또는 제한 및 금지를 한 경우에 교통의 규제 및 지시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를 도로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본표지 상단에 해제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구간 또는 구역에서 교통의 규제, 지시가 시행되었더라도 본래의 규제, 지시로 환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원되는 규제 또는 지시표지만 설치하고 해제 보조표지는 생략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앞지르기 금지(217) 표지 다음에는 해제표지가 필요하나 화물차통행금지(203) 구간 및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에서는 화물차 및 자동차 이외의 차량은 없으므로 그 구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별도의 해제표지가 필요없다. 또한 시작점에서 통제구간을 명시하였거나 통제구간이 짧고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제 보조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고(저)속도제한(224, 225) 등의 표지는 통제구간이 100m 이내의 짧은 구간에서는 구간(402) 표지만 설치하여 구간끝을 나타내는 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림 6-16] 해제(427) 표지 설치 예시도



[그림 6-17] 해제(427) 표지 설치 예시도



## 제 6 절 |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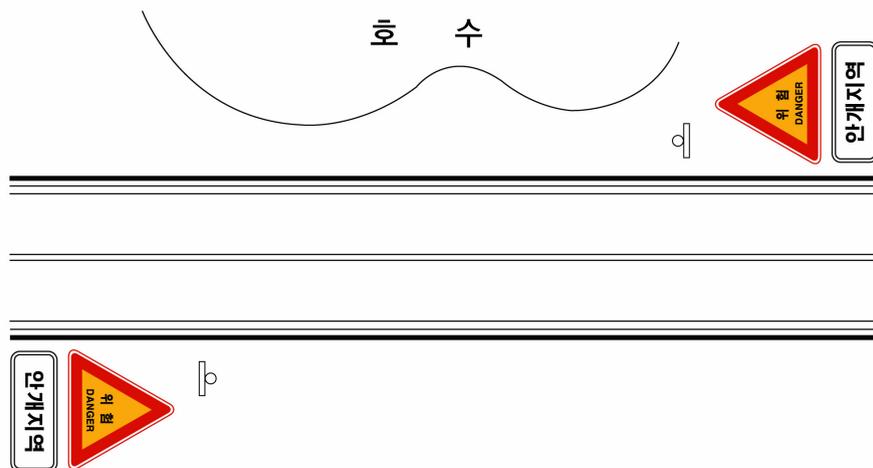
**해설**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의 기능 및 의미를 강조하고자 할 때에 본표지에 부착하는 보조표지를 말하며 기상상태, 노면상태 등을 기타표지로 분류한다.

### 1. 기상상태(410)

#### 기 준

- 기상상태가 도로이용자의 통행에 주의를 요하는 경우, 이를 도로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해설** 폭설, 폭우 또는 짙은 안개 등의 특별한 기상상태가 자주 발생하여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에서 도로이용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강조하기 위해 주의표지에 부착하여 설치한다.



[그림 6-18] 기상상태(410) 표지 설치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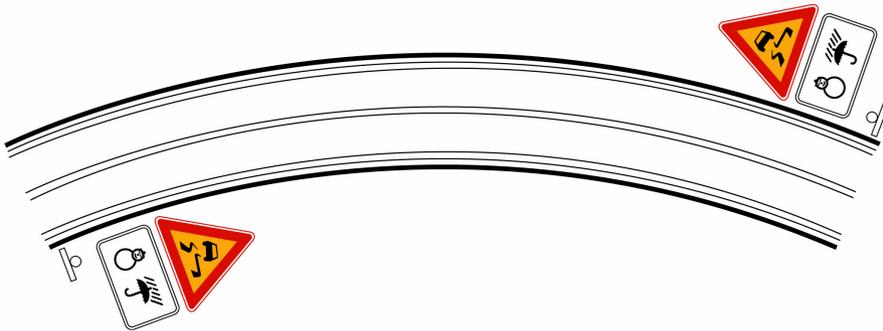


## 2. 노면상태(411)

### 기 준

- 노면상태가 도로이용자의 통행에 주의를 요하는 경우, 이를 도로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해설** 결빙, 적설, 침수, 모래 등으로 인해 노면상태가 미끄럽거나 제동거리가 길어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영향을 미칠 경우, 노면상태를 도로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주의표지와 함께 설치하는 보조표지이다.



[그림 6-19] 노면상태(411) 표지 설치 예시도

## 3. 견인지역(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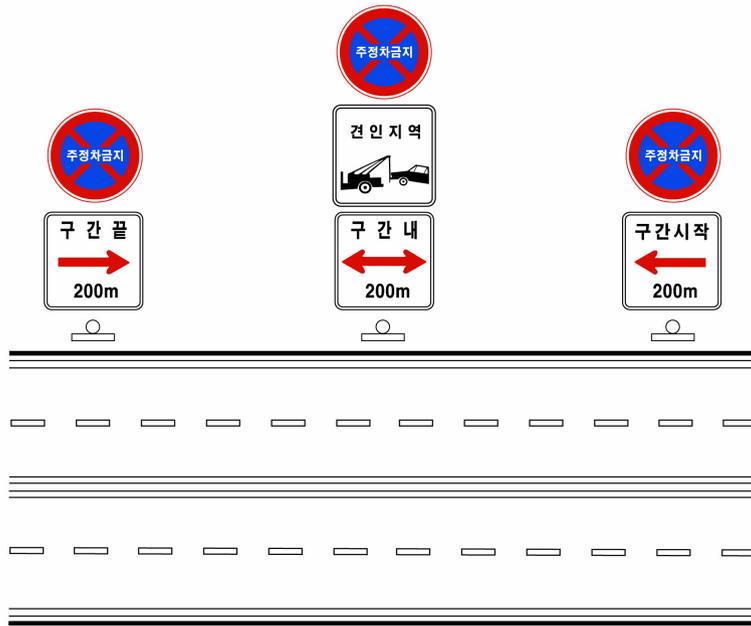
### 기 준

-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견인지역임을 강조하기 위해 주차금지 규제표지와 함께 설치해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33조 및 제64조에 의해 주차가 금지된 지역에서 주차위반을 한 차량에 대해서 견인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할 때에 설치한다. 견인지역은 주정차금지(218)나 주차금지(219) 규제표지와 함께 설치하여 규제의미를 강조한다.

\* 견인지역 문자 또는 도형만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림 6-20] 견인지역(428) 표지 설치 예시도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제7장

## 교통안전표지 설계 및 시공

제1절 교통안전표지 설계

제2절 표지판 설계

제3절 표지판 지주의 형식 및 재료



제 7 장

# 교통안전표지 설계 및 시공



## 제 1 절 | 교통안전표지 설계

### 기 준

- 교통안전표지는 도로이용자에게 일관되고 통일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및 매뉴얼에 정해진 형식과 규격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 정해진 기준이 없는 표지요소의 규격은 본 매뉴얼 및 공학적 판단에 따라 설계 및 제작해야 한다.

### 권 장

- 교통안전표지는 도로이용자가 허용된 시간 내에 보고, 읽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교통안전표지의 설계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인성: 주간과 야간에 항상 볼 수 있을 것
  - 판독성: 도로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명료한 문자와 기호, 적합한 크기의 글자와 기호

### 애설

교통안전표지는 모든 도로이용자에게 통일된 양식과 일관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문자 및 기호의 크기, 모양,



색 등을 임의로 제작한 표지는 도로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설치해서는 안된다. 또한 교통안전표지의 요소는 주야간 모두 동일하게 인식되고 식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어진 시간 안에 읽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판독성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표지는 간단 명료한 내용과 문자 및 기호로 구성되어야 하며, 문자와 기호는 원거리에서도 충분히 시인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지녀야 한다.

## 1. 모양

### 기 준

- 교통안전표지의 모양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야 한다.
- 교통안전표지의 문자, 기호 및 도형, 테두리 등을 확대 및 축소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해야 한다.

**해설** 교통안전표지의 문자와 기호 및 도형은 모든 도로이용자에게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정해진 규격과 양식에 의해 표시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 그 규격과 양식이 정해져 있다. 교통안전표지는 반드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작해야 하며, 확대 또는 축소할 경우에도 정해진 비율에 따라야 한다.



## 2. 색

### 기 준

- 교통안전표지의 색은 시인성, 식별성, 주의환기의 효과를 고려하여 적색, 황색, 녹색, 청색, 백색, 흑색을 기본색으로 한다.
-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별 색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주의표지: 바탕은 황색, 테두리는 적색, 문자 및 기호는 흑색을 사용한다. 단, 신호기(125) 주의표지의 문자 및 기호는 적색, 황색, 청색, 흑색, 백색을 사용한다.
  - 규제표지: 바탕은 백색, 테두리는 적색, 문자 및 기호는 흑색을 사용한다.
  - 지시표지: 바탕은 청색, 테두리는 청색, 문자 및 기호는 백색을 사용한다.
  - 보조표지: 바탕은 백색, 테두리는 흑색, 문자 및 기호는 흑색을 사용한다.
  - 발광형 안전표지의 바탕색은 무광흑색, 주의표지 및 규제표지의 테두리는 적색, 지시표지의 테두리는 백색, 주의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황색, 규제 및 지시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백색으로 변경할 수 있다.
- 교통안전표지의 기본색은 한국산업규격(KS A 0062, KS M 6020) 색 기준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의 도료의 알키드 수지 에나멜 색 기준은 다음 <표 7-1>과 같다.

〈표 7-1〉 한국산업규격(KS A 0062, KS M 6020) 색 기준(허용치  $\Delta E=1$  이내)

색 이름	색 기 호
진 한 빨 강	7.5R 3/10
노 란 주 황	10YR 7/14
진 한 초 록	2.5G 3/6
검 은 남 색	7.5PB 2/2
하 양	N 9.25
검 정	N 1.5



〈표 7-2〉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별 색채

구 분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바탕	황색	백색	청색	백색
테두리	적색	적색	청색	흑색
문자 및 기호	흑색	흑색	백색	흑색
기호	흑색	흑색	백색	흑색

주: 단, 신호기(125) 주의표지의 문자 및 기호는 적색, 황색, 청색, 흑색, 백색을 사용한다.

**해설** 교통안전표지는 그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정해진 색을 사용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소통을 도모한다. 따라서 교통안전표지의 색은 표준색과 유사한 색이나 다른 색으로 변형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교통안전표지의 개발 등으로 표준색 이외의 색이 필요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 3. 크기

#### 기 준

-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별 크기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야 한다.
- 교통안전표지는 도로종류 및 주행속도에 따라 크기를 확대 또는 축소하여야 한다.
- 보조표지는 본표지와 동일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표지를 확대 또는 축소할 경우에는 문자, 기호 및 도형 등의 표지요소를 동일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야 한다.



**해설** 교통안전표지는 도로환경과 교통상황에 따라 기본형의 크기보다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확대 및 축소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야 한다. 동일 축의 도로나 동일한 교통환경인 경우, 교통안전표지는 표지종류에 따라 일관되고 동일한 크기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한 본표지가 확대 또는 축소된 경우에는 보조표지도 본표지와 동일한 크기로 확대 또는 축소를 하여야 한다. 단, 표지의 축소는 구획 및 주거지도로에서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로 한정한다.

## 권 장

- 교통안전표지의 크기를 확대 또는 축소할 경우에 그 비율은 도로 및 교통환경을 고려한 공학적 판단에 따르며, 다음 <표 7-3>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표 7-3〉 교통안전표지 크기의 확대 및 축소

도로종류		확대 및 축소비율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1.5배, 2배, 2.5배
일반도로	일반도로	1.3배, 1.6배, 2배
	구획 및 주거지도로	0.5배(규제표지, 지시표지)

**해설** 도로종류 및 주행속도에 따라 교통안전표지의 크기는 달리 적용한다. 즉, 도로종류에 따라 도로의 이용목적과 설치장소의 주변여건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주행속도에 따라 운전자의 인지, 판단, 행동반응 시간 등에 차이가 난다. 교통안전표지의 크기는 설치장소의 도로종류와 주변여건 등에 대한 공학적인 판단과 주행속도에 따른 운전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도로별 교통안전표지의 확대 및 축소비율은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차전용도로는 1.5배에서 2.5배, 일반



도로는 1.3배에서 2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도로의 구획 및 주거지 도로에 한해서 규제 및 지시표지를 0.5배 축소하여 설치할 수 있다.

#### 4. 문자 및 기호

##### 기 준

- 문자는 한글, 영문, 숫자를 사용한다.
- 문자 및 기호는 특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 표6과 본 매뉴얼에서 정한 규격과 형태에 따라야 한다.

**해설** 교통안전표지의 내용중 문자는 주의, 규제 및 지시표지의 일부분과 보조표지 대부분에 사용되는 주요 구성요소로서 표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자정보 표시의 기본단위이다. 교통안전표지에 사용되는 문자로서는 보기 좋고, 판독이 용이한 한글, 영문자, 숫자로서 표시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 권 장

- 문자 및 기호는 정해진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도록 설계 또는 제작한다.
- 문자 및 기호 크기는 시인성과 표지크기를 고려하여 확대 또는 축소한다.
- 새로운 기호의 설계는 판독과 이해가 쉽고 좋은 형상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한다.



## 5. 문자정보

### 기 준

- 문자정보는 정해진 규격에 따라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 문자정보는 모든 도로이용자에게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만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표지는 정해지지 않은 문안을 사용하여 문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전에 관할기관과 협의 후 설치할 수 있다.
- 본표지의 영문자는 대문자를 사용한다.

**해설** 문자정보 규격 및 설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과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문자정보는 판독하기 쉽고 단순하며 간단 명료하도록 제작해야 한다. 또한 모든 도로이용자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동일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문자정보를 설계 및 제작하여 사용해야 한다. 보조표지는 임의의 문자정보를 설계 또는 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자와 기호를 가급적 최대 10자 이내로 사용해야 하며, 특히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가 그 자체로 완전하고 명확해야 한다. 새로운 문자정보를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기관과 협의 후 설치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유사한 문자정보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 시인성, 문자규격 및 색 등에 대한 공학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제 2 절 | 표지판 설계

### 기 준

- 교통안전표지판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 정해진 규격과 모양에 의거해서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한다.

**해설** 교통안전표지판은 도로상에서 교통안전과 소통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 문자, 기호, 형상 등을 표시하는 정보표지판이다. 표지판의 모양과 형태, 표지내용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은 상이하다. 교통안전표지판의 설계 및 제작과 관련한 모양, 크기, 테두리 등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한 규격 및 형태에 따라야 한다.

### 1. 모양

#### 기 준

- 교통안전표지판의 모양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야 한다.
- 교통안전표지판 기본형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 주의표지: 정삼각형
  - 규제표지: 원형, 역삼각형, 정팔각형, 오각형
  - 지시표지: 원형, 정사각형, 오각형
  - 보조표지: 직사각형
- 교통안전표지판 모서리부분의 모양은 둥근 형태이어야 한다. 단, 일시정지(227) 규제표지는 제외한다.



**해설** 교통안전표지판의 모양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서 제작되어야 한다. 표지판 모양의 기본형태는 표지판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규정된 형태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교통안전표지판의 모서리 모양은 둥근 형태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 옆면 또한 동일한 형태여야 한다. 이는 표지판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이용자가 표지판으로 인한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2. 크기 및 두께

### 기 준

- 교통안전표지판의 설계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 기본형 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과 같다.
  - 기본형 표지판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지와 동일한 비율로 한다.
- 교통안전표지판의 기본형 크기는 다음과 같다.
  - 주의표지: 한 변의 길이를 900mm로 한다.
  - 규제표지
    - 원형인 경우, 지름을 600mm로 한다.
    - 역삼각형인 경우, 한 변의 길이를 800mm로 한다.
    - 정팔각형인 경우, 높이를 600mm로 한다.
    - 오각형인 경우, 밑변과 상변길이를 각각 600mm, 수직길이를 200mm로 한다.
  - 지시표지
    - 원형인 경우, 지름을 600mm로 한다.



- 정사각형인 경우, 한변의 길이를 600mm로 한다.
- 오각형인 경우, 밑변과 상변길이를 각각 600mm, 수직길이를 200mm로 한다.
- 보조표지: 밑변길이를 400~600mm, 높이를 200mm 이상으로 한다.
- 표지판의 두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두께는 2mm이상으로 한다. 단, 재질에 따라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 재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두께를 정한다.
  - 평타도를 최대로 유지할 수 있는 두께로 한다.

**해설**

표지판의 종류에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그 모양과 형태, 크기가 다르다. 기본형의 규격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도로의 종류 및 여건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설치할 수 있다.

표지판의 두께는 재질에 따라 <표 7-4>와 같이 다르게 적용하며, 표지판에 사용하는 지주의 종류 및 표지판의 크기, 두께에 따라서 지주와의 부착 및 표지판의 보강을 위하여 가공을 하여야 한다. 표지판으로 알루미늄 합금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미끄러지는 홈(Aluminium Slide Channel)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표지판의 보강을 겸하는 동시에 부착방법을 L형강, H형강을 사용하여 끼우는 방법에 따라 상하, 좌우로 자연스럽게 이동시킬 수 있으며 부착하기가 대단히 용이하다.

표지판의 두께가 부적절하면 표지 수명의 단축을 초래하게 되므로 표지 설계시 표지판의 두께가 적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기관의 재질은 부식에 강하고 인장강도가 좋은 알루미늄합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그 경우 권장하



는 두께는 2mm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표지판 뒷면의 보강대는 가능한 표지판 재질과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고 용접하는 것이 좋다.

〈표 7-4〉 표지판 두께의 기준

구분	알루미늄 합금판	합성수지판
두께(mm)	2.0	3.0

주 : 지역 및 기후 등을 고려하여 표준두께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 3. 재질

#### ※ 한국산업규격 확인 요망

#### 기 준

- 표지판의 재료는 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부근 상황에 잘 조화되어야 한다.
- 따라서 표지판의 재질로는 알루미늄 합금판 또는 합성수지판(FRP)으로 하며, KS 규격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 권 장

우리나라 기후와 환경에 적합한 표지판 재질로는 알루미늄과 합성수지가 권장되고 있으며, 그 성능은 한국산업규격(KS D6701)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성능의 검사항목에 의해 합격하고 인증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지판 재질은 알루미늄판이며 성능기준(KS D6701)에 적합한 규격제품은 A5005P-H18이다(<표 7-5> 참조). 그러나 최근 기준 알루미늄판(A5005P-H18) 규격제품보다 재질구조나 특성면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알루미늄판(A5052P-H24)의 규격제품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알루미늄판(A5005P)에 비해 인장강도, 연신율, 평탄도 등이 더 우수한 알루미늄판(A5052P- H24)의 규격품 사용을 권장한다.

표지판이 돌아가거나 연결부위가 약해지는 현상방지를 위하여 표지판을 연결 또는 부착하는 부품은 다음과 같은 재질의 규격품을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 (<표 7-6> 참조).

〈표 7-5〉 표지판 재질

재질종류	규격제품
알루미늄	알루미늄판(KS D6701의 A5005P-H18)
	알루미늄판(KS D6701의 A5052P-H24)
	알루미늄채널(KS D6759의 A6063S-T5)
합성수지	FRP(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판
	경질 염화비닐 (Vinyl)판
	ABS(다용도, 플라스틱) 수지판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판

〈표 7-6〉 표지판 연결부품

부 품 명	규격제품
밴드	KS D3698의 STS304
	철판가공 용융아연도금 밴드
볼트, 너트, 와셔	KS D3706의 STS304 NI-B 단, 형태는 KS B1002
클립(채널과 지주결합용)	KS D6701의 A6061FD-T6

**애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재질로서 표지판으로 사용이 가능한 재질에 대한 일반적 특성이다.

- 알루미늄(Aluminium) 합금판은 중량이 가벼우며 내식성이 우수하지만 강판에 비하여 강도와 알칼리(Alkali)에 약하다. 강판에 비하여 이면도장이 생략되고 중량이 가벼워 표지판 기판에 유리하고 장기



간 사용할 수 있다. 기관재나 보강재를 사용할 때에는 한국산업규격(KS)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합성수지판은 내식성과 내마모성이 강하고 중량도 매우 가벼운 특징이 있지만 강도유지나 가공 또는 유지보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 열에 약할 뿐만 아니라 대기중 화학물질에 의해 변형, 변질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안전표지의 표지판으로 합성수지판을 사용할 경우, 합성수지의 특성과 표지의 사용기간, 설치장소의 환경특성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적합하고 합당한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 그밖에 사용되는 표지판 재질은 폴리에틸렌 샌드위치판 (Polyethylene, Sandwich), 메타아크릴판 (Meta acryl, 내부조명용) 등이 있다.

#### 4. 테두리

##### 기 준

- 교통안전표지판의 테두리는 폭, 모양 및 색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폭은 10mm로 한다.
  - 모양은 표지판 모양에 따른다.
  - 색은 적색, 청색, 흑색으로 한다.
- 교통안전표지판 테두리의 모서리 모양은 둥근 형태이어야 한다. 단, 일시정지(227) 규제표지는 제외한다.



교통안전표지판은 전면에 테두리선을 사용하여 표지판 윤곽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기본형 표지판의 테두리 폭은 10mm이며, 테두리 모양은



표지판 모양과 같다. 표지판 테두리는 표지판과 표지의 범위를 구별하여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의 및 규제표지는 적색, 지시표지는 청색, 보조표지는 흑색을 각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지판을 확대 또는 축소할 경우에는 테두리 폭도 동일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야 한다.

### 제 3 절 | 표지판 지주의 형식 및 재료

#### 기 준

- 지주는 도로이용자가 교통안전표지를 인식하고 판독하는데 있어서 높이, 폭, 방향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과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주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표지의 종류, 설치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표지의 지주는 표지판의 크기 및 설치장소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사용한다.
- 지주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식에 따라 정주식, 내민식, 문형식, 부착식으로 구분한다.
- 지주의 재료로는 강관, 알루미늄 합금주, 원추형지주를 사용하되, 알루미늄, 강관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표지판 지주의 형식

**해설** 지주는 표지의 높이와 방향, 그리고 바람 등에 의해 상태가 변화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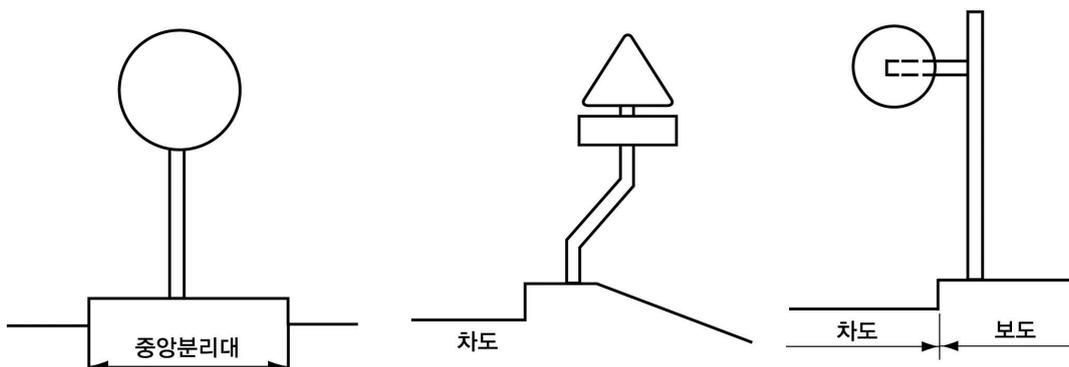
않도록 하는 고정기능과 표지판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고 분산시키는 지지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표지판을 지주에 설치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가. 정주식

지주의 상단 끝부분에 표지판을 고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단주형과 복주형으로 구분한다. 정주식은 흔히 도로의 길가장자리에서 노측식으로 설치한다. 그러나 최근 도로중앙, 중앙분리대, 교통섬 등과 같은 곳에도 설치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 정주식은 시인성이 좋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 (1) 단주형

일반적으로는 표지판의 횡폭 치수가 약 1,000mm 이하의 경우에 사용한다 ([그림 7-1] 참조). 다만, 단주형 지주는 구조적으로 표지판이 크거나 무거운 경우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면 복주형 지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러한 곳으로는 태풍이 잦은 곳이나 폭설이 내리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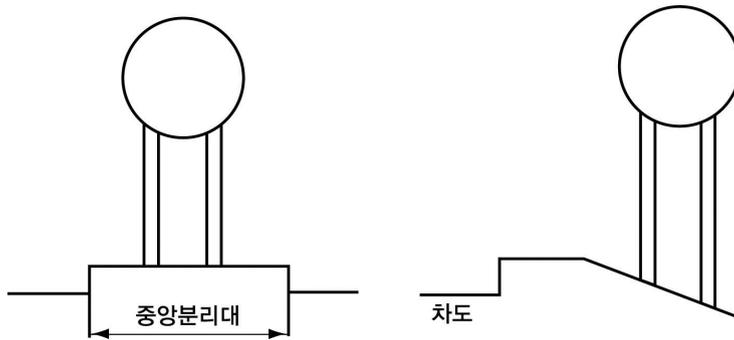


[그림 7-1] 단주형



## (2) 복주형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지주형태이지만 표지판이 크거나 무거운 경우에 사용한다([그림 7-2] 참조). 즉 고속도로와 같이 속도가 높은 도로나 태풍이 잦은 곳에서 표지판 확대에 의해 기판의 길이가 약 1,000mm를 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림 7-2] 복주형

### 나. 측주식(overhang)

지주의 팔(양재, arm)에 표지판을 달아 내어 부착하는 방법과 강관주, 원추형지주 등에 부착기구를 사용하여 표지판을 가로 지지봉에 고정시켜 차도로 내밀어 다는 등의 고정방법에 따라 2종류가 있다. 표지를 폭이 넓은 도로 등에 운전자의 시인에 용이하도록 도로상에 돌출시켜 설치할 때에 사용한다. 도로변이 복잡하거나 속도가 높은 광로에서 표지판을 도로이용자에게 잘 보이도록 설치할 필요가 있거나 모든 차로의 도로이용자에게 전달할 중요한 표지판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지주형태이다. 측주식 지주를 설치하는 방법은 차량진행하는 방향의 도로좌측 길가장자리에서 빔이 차도로 돌출되게 하여 빔에 표지판을 설치한다. 측주식은 규제 또는 지시표지와 중요한 주의표지를 설치할 때 적합하다.



### (1) 역L형

역L형 지주형태는 강관 등에 역L형에 1개의 빔을 부착하고 그것에 표지판을 고정 또는 매달아서 차도의 위쪽으로 돌출시키는 방법이다. 이 형식은 빔이 휘거나 부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돌출 길이는 길게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보통 2차로 이하 도로나 무게가 적은 표지판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그림 7-3]).

### (2) 테이퍼폴형

테이퍼폴 지주는 테이퍼 강관을 다음 [그림 7-4]와 같이 구부려 표지판을 고정 또는 매달아서 차도의 위쪽으로 돌출시키는 방식이다. 이 형식은 테이퍼 강관을 구부림 가공한 것이므로 역L형과 같이 2차선 이하의 도로에서의 크기가 작고 무게가 적은 표지판에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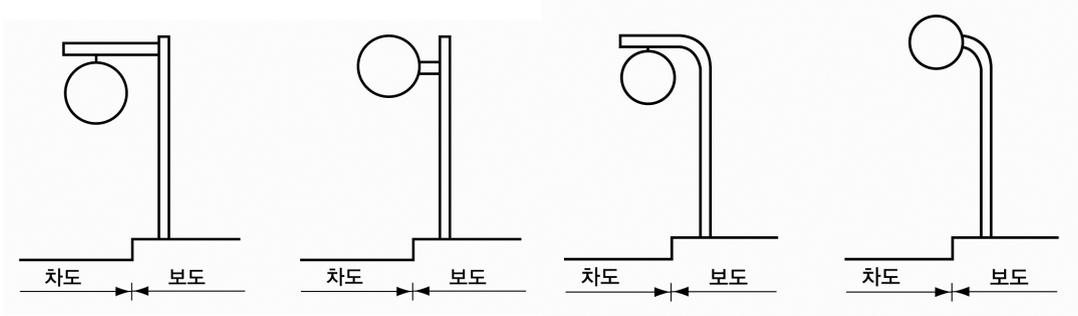
### (3) F형

F형 지주는 강관 등을 사용한 F형에 2개의 빔을 부착한 후, 표지판을 고정하여 차로부 위쪽으로 돌출시킨 방식이다. 이 형식은 돌출길이가 비교적 길어서 가로수 등의 도로변 장애물 또는 다차로 도로 등으로 인해 표지를 시인하기 곤란한 곳에 적당하다. 특히, 고속도로와 같이 속도가 높고 광로인 도로에서 중요한 표지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림 7-5] 참조).

### (4) T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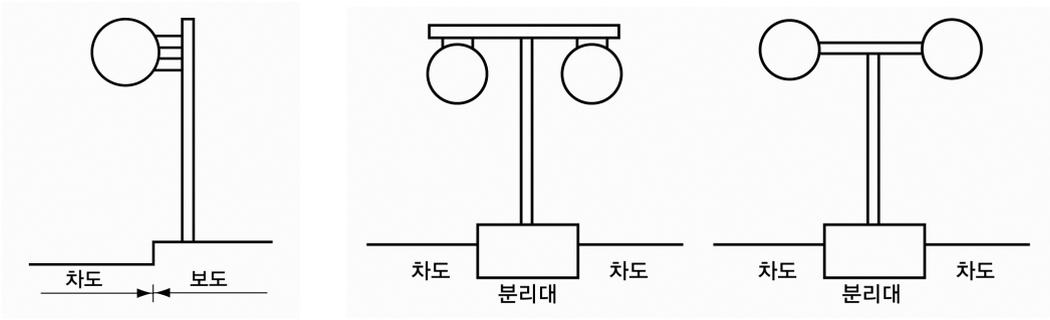
T형 지주는 분리대에 설치한 강관 등에 T자형 1개 또는 2개의 빔을 부착하고 표지판을 빔에 고정 또는 매달아서 차도의 위쪽으로 돌출시키는 방식이다. 이 형식은 2개 빔으로 한 경우, 돌출길이는 비교적 길게 할 수 있어 F형 지주와 함께 2차로 이상 도로의 중요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데 적합하다. 1개 빔을

사용한 경우는 휘거나 부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돌출된 길이를 작게 하고 역L형 지주와 함께 같이 2차로 이하 도로의 크기가 작고 무게가 적은 표지판 기등으로 적합하다. 특히 Y형 교차로 분류지점에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그림 7-6] 참조).



[그림 7-3] 역L형

[그림 7-4] 테이퍼폴형



[그림 7-5] F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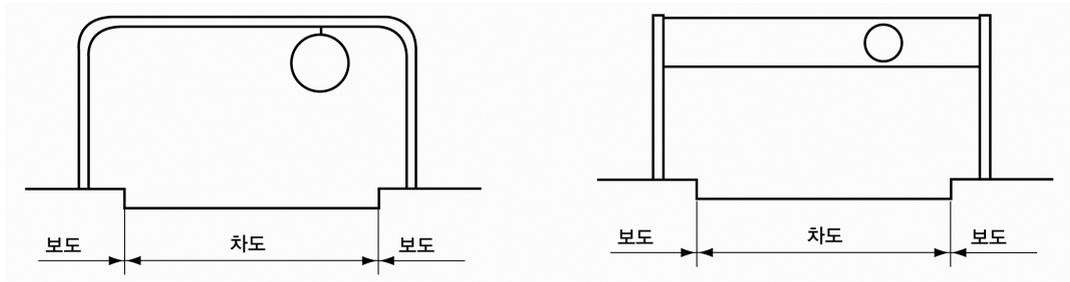
[그림 7-6] T형

### 다. 문형식(overhead)

표지판을 차도에 걸치는 문형식 지주에서 차도의 위쪽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한다. 문형식 지주는 강관 또는 형강을 사용하여 문형의 트러스 빔 또는 단주 빔에 표지판을 고정 또는 매달아서 차도에 걸치도록 하는 방식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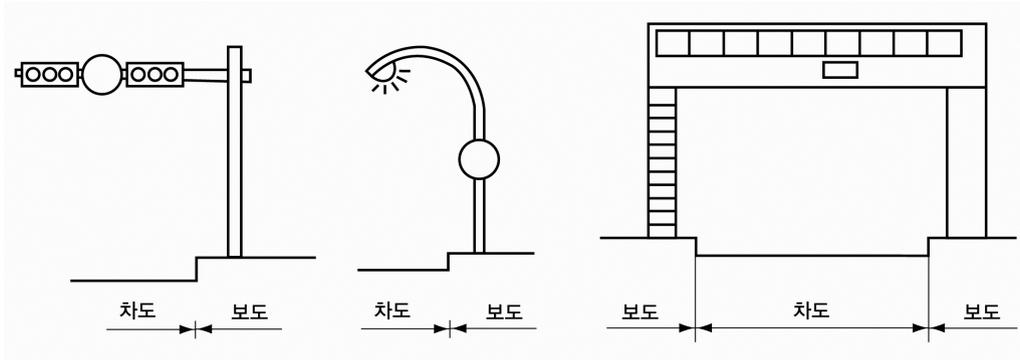
측주식과 같이 규격이 큰 표지판이나 차로별로 규제 또는 지시사항이 다른 경우에 사용하면 유용하다. 그 예로 「차량통행구분」 및 좌회전 또는 유턴 금지 등과 같이 규제 또는 지시표지판을 설치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형식 지주를 설치할 때에는 장래에 추가될 표지판을 고려하여 충분히 견고한 구조식(예 트러스식)을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그림 7-7] 참조). 일반적으로 대형표지판을 설치할 때에 사용한다.



[그림 7-7] 문형식

## 라. 부착식

표지판을 교통 신호등지주, 가로등지주, 육교 등의 타 공작물을 이용하여 설치할 경우에 사용한다. 기존의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이용하여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시설의 설치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둘째, 구조물과 표지판이 명확히 구분되고 시인성이 좋은 경우에 한해 설치하며 셋째, 지주를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 한다. 특히 부착식을 사용할 때에 주의할 점은 표지판 설치간격과 높이 등이 적정한 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그림 7-8] 참조).



[그림 7-8] 부착식

## 2. 표지판 지주의 재료

### 기 준

- 지주의 재료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 내식성, 내후성이 우수할 것 단, 방청처리를 할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 뒤틀림이나 휨에 강할 것
  - 내구성이 우수할 것
- 지주의 색은 백색 또는 회색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지주의 색은 백색 또는 회색으로 하며, 백색의 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히 도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원거리에서 표지를 시인하는데 지장이 없고 지주와 충돌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주변의 도로환경 및 경관, 그리고 유지관리 등 잘 어울리는 색으로 도색을 할 수 있다. 단, 갈색계통의 색과 같이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표지판을 설치하는 지주의 재료로서 적합한 재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지주형태, 지역적 특성, 표지판 규격 및 무게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도로 주변의 경관과 잘 어울리는 것을 선택할 것이 권장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지주의 재질별에 따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강관은 뒤틀림이나 휨에 강하고 가공할 때에도 융통성이 있으나 내식성이 약하다. 특히, 해안지대에서는 염분에 의해 쉽게 녹이 난다. 따라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방청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외관상 좋고 내구성이 강하여 장기간 설치가 필요한 곳에 적합하다.
- 알루미늄(Aluminium) 합금주는 표지판 및 보강재로서 종래 사용되어 온 알루미늄 합금재를 지주의 형상으로 한 것으로서 내식성이 우수하며 녹이 잘 나지 않아 해안지역이나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질이다.
- 원추형지주(Deviate pole)는 KS 표시품으로서 내민식 지주에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표지지주의 재료로서 기타 철근콘크리트, 합성수지피막, 알루미늄피막관, 목재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주의 재질로 사용하고 있는 종류는 주로 원형의 백관 또는 용융도금 강관이다. 알루미늄 합금지주는 내식성, 가공편리성, 시공편리성 등으로 인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백관에 비해 가격이 고가이므로, 10년이상 장기간 설치하거나 염분도가 높은 해안지역과 같은 특정한 지역에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 재질은 한국산업규격 성능기준에 의해 검사되고 인증된 규격품 사용이 권장된다. 다음 <표 7-7>는 지주재질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제품이다.



〈표 7-7〉 지주재질

재질종류		규격제품	특 징
강주	강관	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KS D3566) 2종	방청처리 요함
	강재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3503) 2종	방청처리 요함
	알루미늄 합금지주	-	내식성, 성형가공 용이, 경량이며 시공편리
기타 지주	철근콘크리트 스테인리스	-	-

그리고 지주에 사용하는 부속품과 연결관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재질 또는 모양과 형상을 지닌 것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표 7-8〉 연결부품의 재질

부 품 종 류	규격제품
밴 드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관(KS D3968)의 STS304
앵커볼트 및 연결부품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3503) 2종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 봉강(KS D3051)의 모양, 치수, 무게 열간 압연평강(KS D3051)의 모양, 치수, 무게 열간 압연강관 및 강대(KS D3051)의 모양, 치수, 무게
연결관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KS D6770)의
지주결합용 크립	A6061FD-T6

본 매뉴얼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가 있을 때에는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처**

경찰청 교통운영담당관실 교통운영계

전 화 : 02)3150-2753, 경비 2653, 2753

F A X : 02)3150-3853, 경비 3853

---

##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

---

2011년 12월 인쇄

2011년 12월 발행

발행처 : 경찰청

02)3150-2753

인쇄 : (주)범신사

02)720-9786~9

---

